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39-13

2016-2020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T 1

총론

I. 수립배경 및 경과	8
1. 수립 배경	8
2. 추진 경과	9
II.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10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10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	13
III. 지난 10년간의 정책 평가	18
1. 총 괄	18
2. 저출산 대응	21
3. 고령사회 대응	30
4. 대책 추진 기반	35
IV.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방향	37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37
2. 비전 및 목표	41
V.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45
1.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45
2. 장기 추진 방향	48
보론 : 통일과 인구문제	49



PART 2

분야별 정책과제

I. 저출산 대책 53	II. 고령사회 대책 105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56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08
(1) 청년고용 활성화 56	(1) 공적연금 강화 108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61	(2)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113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64	(3)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115
(1) 임신·출산 사회적책임시스템 구축 65	(4) 노후 준비 여건 확충 116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72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19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 75	(1)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119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79	(2)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127
(1) 맞춤형 보육 79	(3) 세대간 이해 증진 132
(2) 돌봄지원체계 강화 84	(4)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33
(3) 교육 개혁 추진 86	(5)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135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93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140
(1)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93	(1) 여성 고용 활성화 140
(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97	(2)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144
(3)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100	(3)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152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59
	(1)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159
	(2)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170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74
	III.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79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180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183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186



부 록

I. 재정 계획	192
1. 연차별 투자계획	192
2. 자원 조달 방안	193
II. 과제별 소관부처	194
1. 저출산 대책	194
2. 고령사회 대책	196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99
III.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명단	200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다리

브릿지 플랜 2020



The 3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ART 01

총론

- I. 수립배경 및 경과
- II.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 III. 지난 10년간의 정책 평가
- IV.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방향
- V.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I.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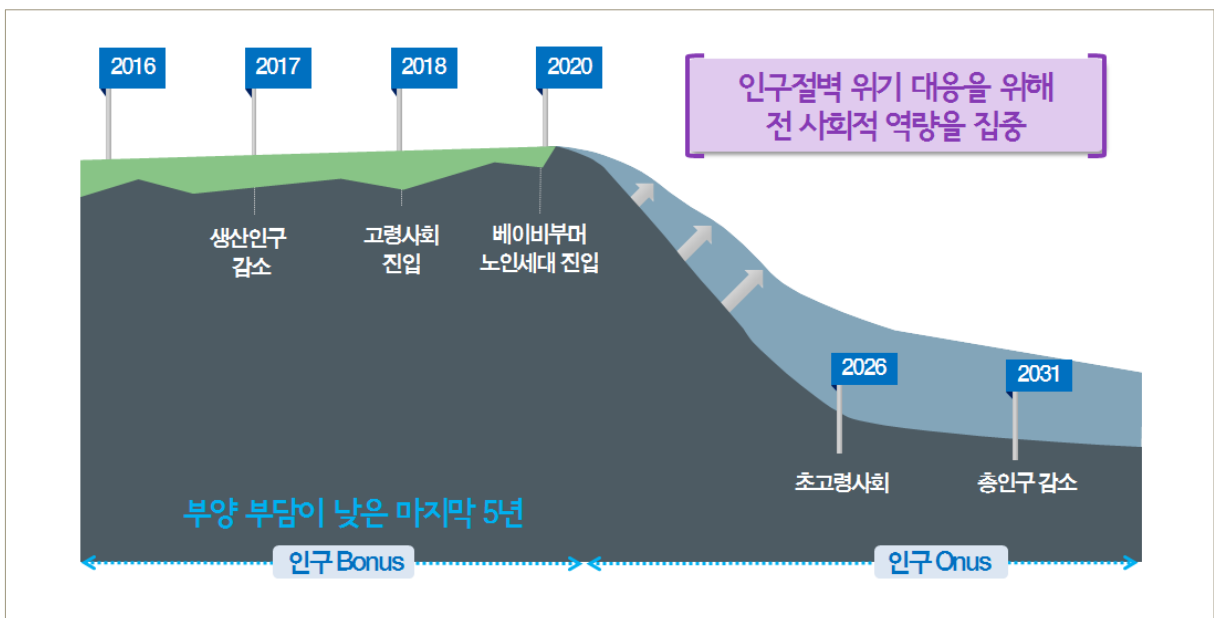
»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10년 이상 정체, 노인빈곤율도 OECD최상위 수준

-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질 개선 등 시급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 강화 필요
- 한편, 인구정책의 특성상 적어도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시야가 중요
 -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

»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 등 그간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뤘던 인구보너스기가 끝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오너스기로 이행

- 실효성 있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저출산 극복의 전기로 만들 필요



2 추진 경과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 반전, 고령사회 연착륙 등 추진방향과 민간·정부 공동 수립추진 체계 확정('15.2.6)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 과제 검토 및 실행계획 작성 등 추진**

* 결혼·출산, 인구경쟁력, 삶의 질, 지속발전, 총괄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 90여회 회의 개최

-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민간간사위원 주재 조정회의(3회), 사회관계장관 회의(7.17, 9.21), 국무조정실 조정회의(2회) 등을 통해 협의·조정**
- ▶ **'5천만이 함께 만드는 기본계획'을 위해 온라인 국민제안 운영(2.1.~, 362건), 장관 현장방문(6회), 시도지사 현장토크(18회) 등 현장 소통 강화**
-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 대응방향, 고령자 기준 및 복지·고용시스템 개선방향, 저출산 사회의 인구역동성 등 토론회 개최 (5.29, 7.23, 9.14)**

Ⅱ.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1)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 초저출산현상 장기화

● 30년 이상 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 지속

- 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2.06명 이하)으로 감소 후 회복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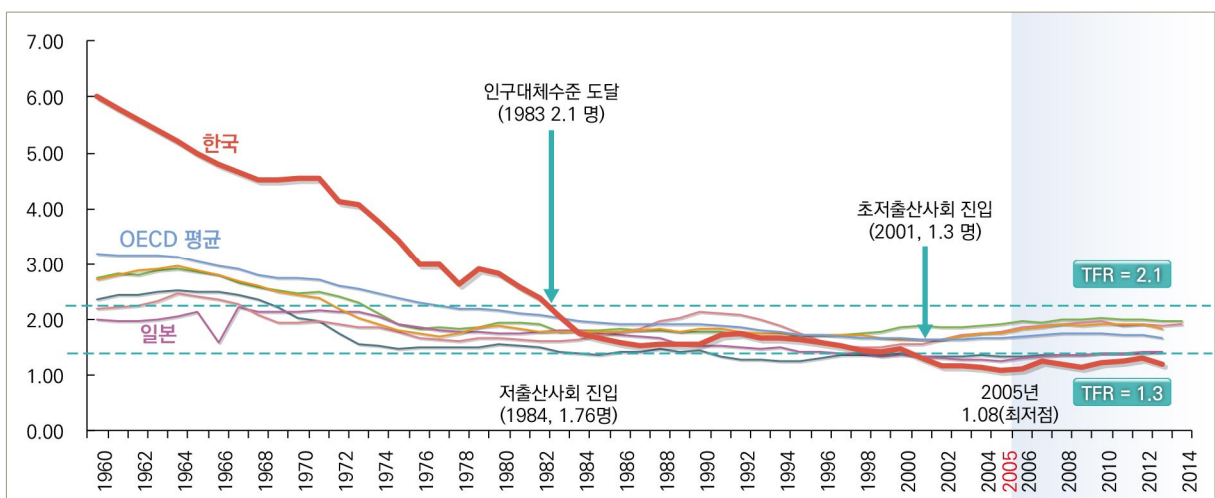
●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에서 등락하고 있어 ‘저출산의 덫’ 우려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참고: '14년 기준, 홍콩 1.23명, 싱가포르 1.25명, 포르투갈 1.23명)

* 우리나라와 달리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40여년에 걸쳐 3.65명('60)에서 1.63명('02)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7명 수준 유지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한국 포함)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 탈피

〈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

국가	인구대체수준 (약 2.1명)도달시기	TFR 1.3 도달시기	TFR 1.3미만 지속기간	최저수준	최근 TFR
한국	1983	2001	14년(2001~현재, 2014년 기준)	1.08(2005)	1.21(2014)
이탈리아	1977	1993	11년(1993~2003)	1.19(1995)	1.39(2013)
독일	1970	1992	4년(1992~1995)	1.24(1994)	1.41(2013)
일본	1960/1974	2003	3년(2003~2005)	1.26(2005)	1.43(2013)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장수사회 진입

- 평균수명은 과거 45년간 20세 증가, 향후 45년간 7세 추가 증가 전망
 - 1970년 61.9세(남 58.7세, 여 65.6세)에서 2014년 81.5세(남 78.0세, 여 84.8세)로 증가, 2060년에는 88.6세(남 86.6세, 여 90.3세)로 증가 전망
 - * '07년부터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여 최장수국가 수준 근접
- 90세 이상 고령인구는 '15년 16만명에서 '60년에 약 200만명으로 급증

(2) 고령화의 심화와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

2020년부터 인구고령화 가속화

- 노인인구는 '15년 662만명 → '30년 1,269만명(약 2배) → '50년 약 1,800만명(약 3배)까지 증가

〈 인구피라미드 변화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노인인구 비율은 '15년 13.1%에서 '30년 24.3%, '50년 37.4%로 증가
 -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 약 1,644만명, 총인구 중 32.5%)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가속화
-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5년 8.3%에서 '50년 20.6%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화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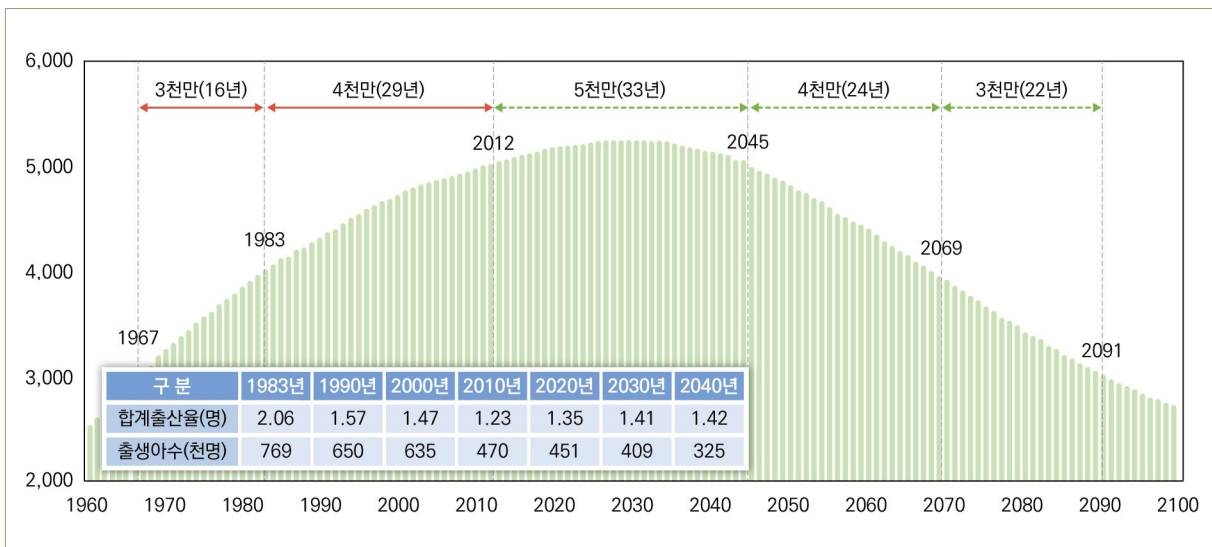
	2000	2015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대비 전체 노인인구 비율	7.2	13.1	15.7	24.3	32.3	37.4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	5.1	8.3	10.0	10.4	12.6	20.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2031년부터 본격적 인구 감소 시작

- 총인구는 '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정점)까지 증가 후 감소 시작('50년 4,812만명으로 200만명 이상 감소)
 - 유소년인구(0~14세)는 '15년 704만명 → '50년 478만명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704만명)으로 감소 시작 → '50년 2,535만명 으로 1천만명 이상 감소

〈총인구 규모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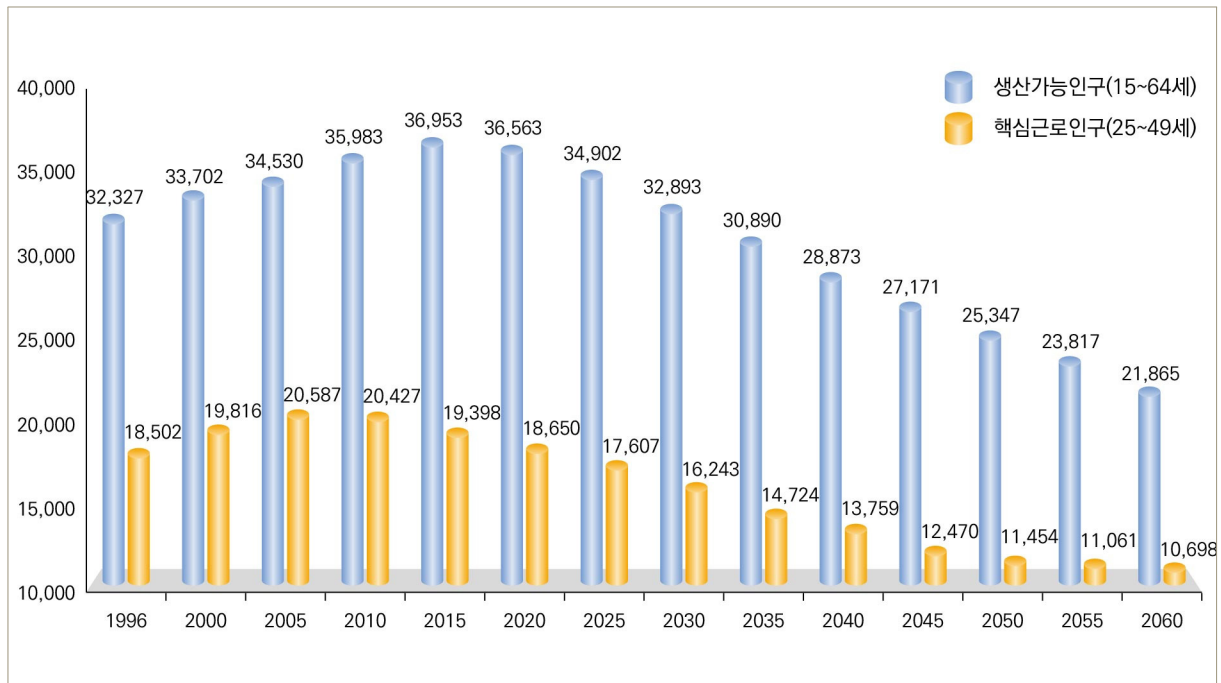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

»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환

- 현재는 일부 직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하나,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중장기적으로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전망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의 장래 추계 인구〉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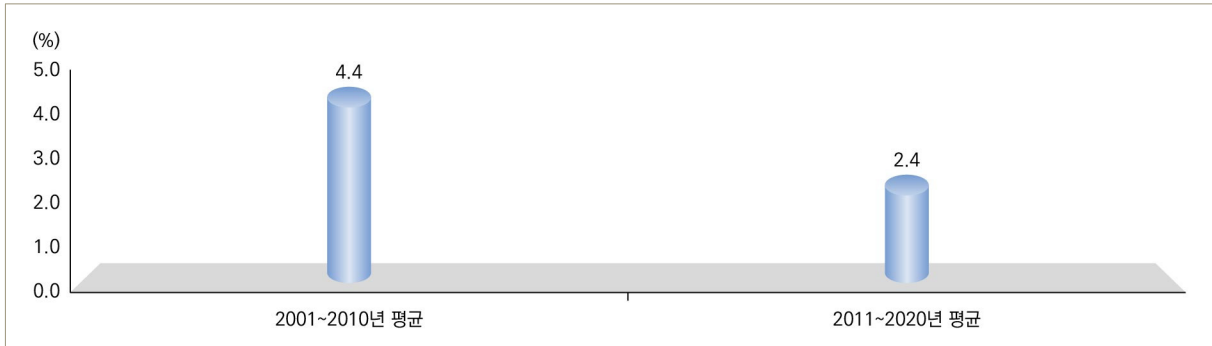
» '노동력 고령화' 급속 진행

- 신규진입 노동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연령이 '15년 40.3세에서 '30년 42.9세로 증가 전망
- 이미 주요 산업부문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 **全 산업 종사자 평균연령은 '09년 38.5세에서 '14년 40.4세로 증가**
 - * 동 기간 수리·개인서비스업 5.0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4.2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8세, 부동산·임대업 3.7세 각각 증가(고용노동부,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저하 우려

〈노동생산성 전망〉



주 2011~13년 연평균 주고용총 비중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비율이 202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자료 손종철 외, 2015.

▶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현 출산율 유지 가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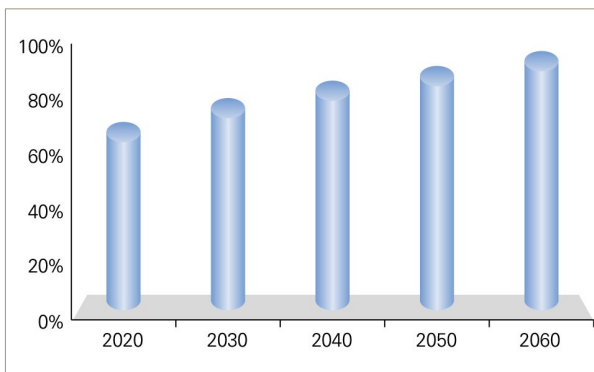
-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투자증가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

* 소비증가율 : ('01~'10) 3.77% → ('11~'30) 3.00% → ('31~'60)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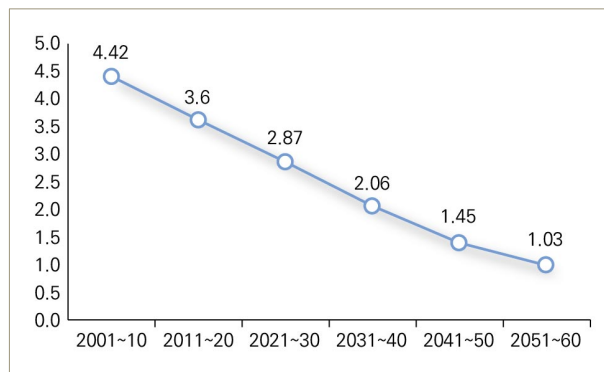
* 투자증가율 : ('01~'10) 3.14% → ('11~'30) 2.43% → ('31~'60) 1.06%

-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
 -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4.42% → 2051~2060년 1.03% 하락 전망

〈국내수요 대비 수출 비율 전망〉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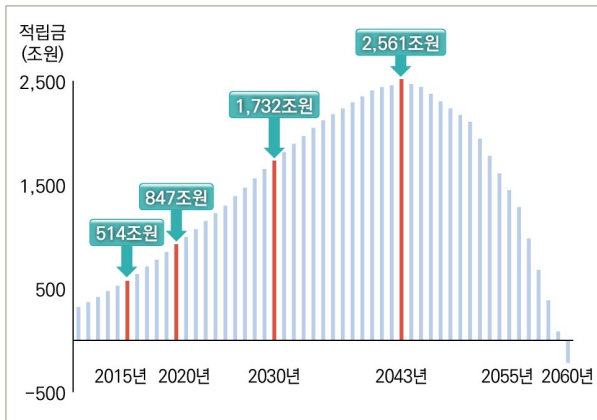


자료 경제시스템분석학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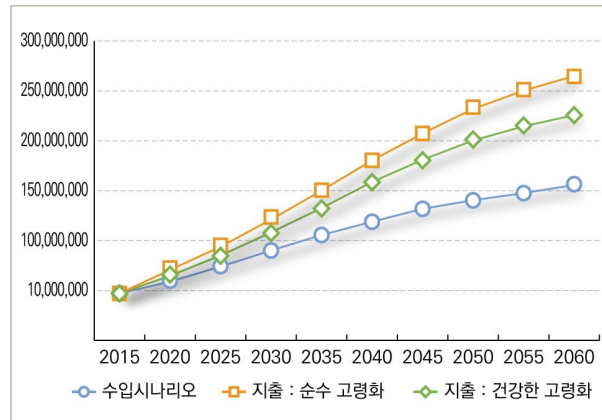
» **사회보장 부담 증가**

- 연금·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나 수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부담 급증
 - 국민연금은 '44년도부터 수지적자 발생, '60년 적립기금 소진
 - 건강보험은 현 보험료율과 지출행태 유지시 '25년에 고갈

〈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



〈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3년 기준 GDP 대비 9.8%에서 '40년에는 OECD 평균에 이르고 '60년에는 29.0%로 상승 전망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예측 〉

(단위 : GDP 대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3	2020	2030	2040	2050	2060
스웨덴	26.0	28.2	28.5	31.8	28.2	28.7	27.9	27.2	-	-	-	-	-	-
덴마크	24.4	22.9	25.0	28.7	26.0	27.3	29.9	30.1	-	-	-	-	-	-
프랑스	20.6	25.8	24.9	29.0	28.4	29.6	31.7	31.4	-	-	-	-	-	-
독일	21.8	22.2	21.4	25.9	26.2	27.0	26.8	25.5	-	-	-	-	-	-
영국	16.3	19.2	16.3	19.2	18.4	20.2	22.8	22.7	-	-	-	-	-	-
미국	12.8	12.8	13.1	15.0	14.2	15.5	19.3	19.0	-	-	-	-	-	-
일본	10.3	11.1	11.1	14.1	16.3	18.4	22.1	23.1	-	-	-	-	-	-
한국	-	-	2.8	3.2	4.8	6.5	9.0	9.0	9.8	12.9	17.9	22.6	26.6	29.0
OECD 평균	15.4	17.0	17.5	19.3	18.6	19.4	21.7	21.4	-	-	-	-	-	-

자료 OECD STAT(2015.10월 기준), 제1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보건복지부, 2014.1월)

» 재정수지 악화

- 저출산 및 잠재성장을 둔화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총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년 35.9%로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여건 악화로 세출 구조조정, 재원없는 신규의무지출 억제 등 추가적 노력이 없다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할 우려

* '60년 국가채무비율 64.2%(2060년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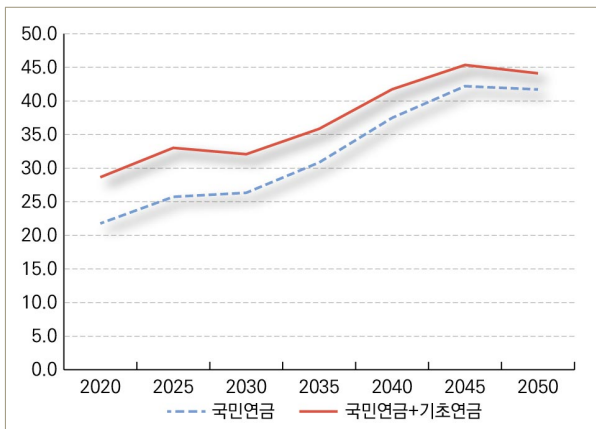
» 노후소득 불안정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금제도 미성숙 등에 기인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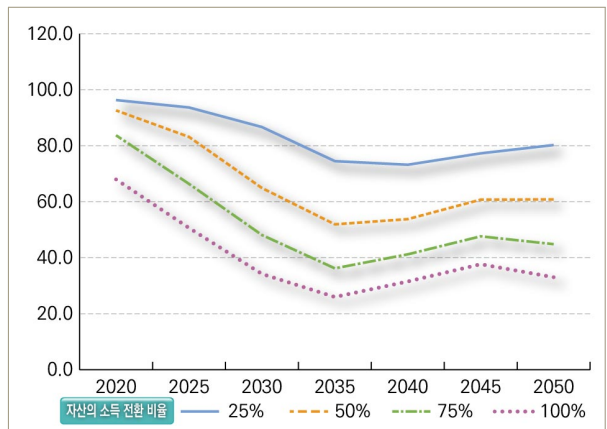
* 노인빈곤율(2014) : 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3%, 프랑스 3.8%, OECD 평균 12.6%

- 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후빈곤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우려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45% 이하로 전망
 -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노인가구의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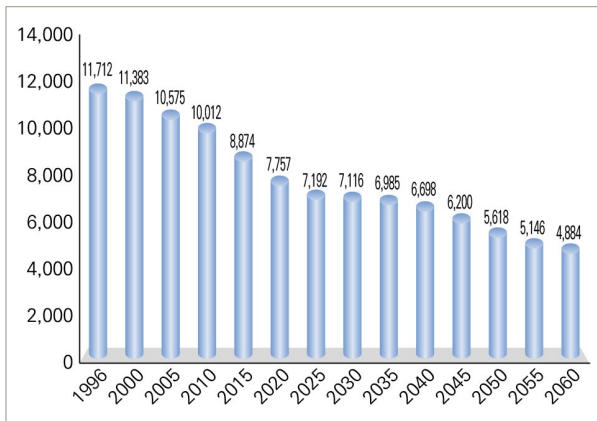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인적, 물적) 공급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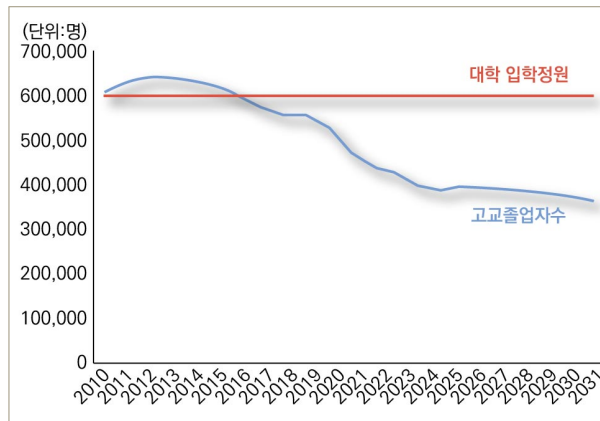
-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 30년 뒤에는 현재 학생 수의 절반까지 감소
- '18년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 수가 적어, 대학 정원 미달 증가로 대학간 격차 심화, 고등교육 질적 저하, 대학 인프라 과잉 등 우려

〈학령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대학입학예정인원과 대학정원〉



자료 정부합동, '08~'18중장기인력수급전망

» 병역자원 부족

- 저출산현상의 장기 지속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은 '20년대 초반부터 부족할 것으로 전망 (현행 21개월 복무기준)
 - 병역자원 부족 규모는 '3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3만명 예상
 - * 18개월 복무기간으로 전환시 조기에 병역자원 부족시기 도래, 병역자원 부족 규모는 연평균 5만명 이상으로 심화

» 농촌 공동화

- 농촌인구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될 예정으로 면지역은 '08년 518만명에서 '53년 282만명 수준으로 인구급감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 일본에서 1990~2000년 4,959개 농업집락 소멸(日농림수산연구원, 2004)
 - * 시마네현의 농촌마을 추계결과, 농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비율은 '00년 5.4%에서 '20년 9.6%로 증가, 농가가 9가구 이하 마을은 전체의 53.2% 전망(日농림수산연구원, 2005)

Ⅲ. 지난 10년간의 정책 평가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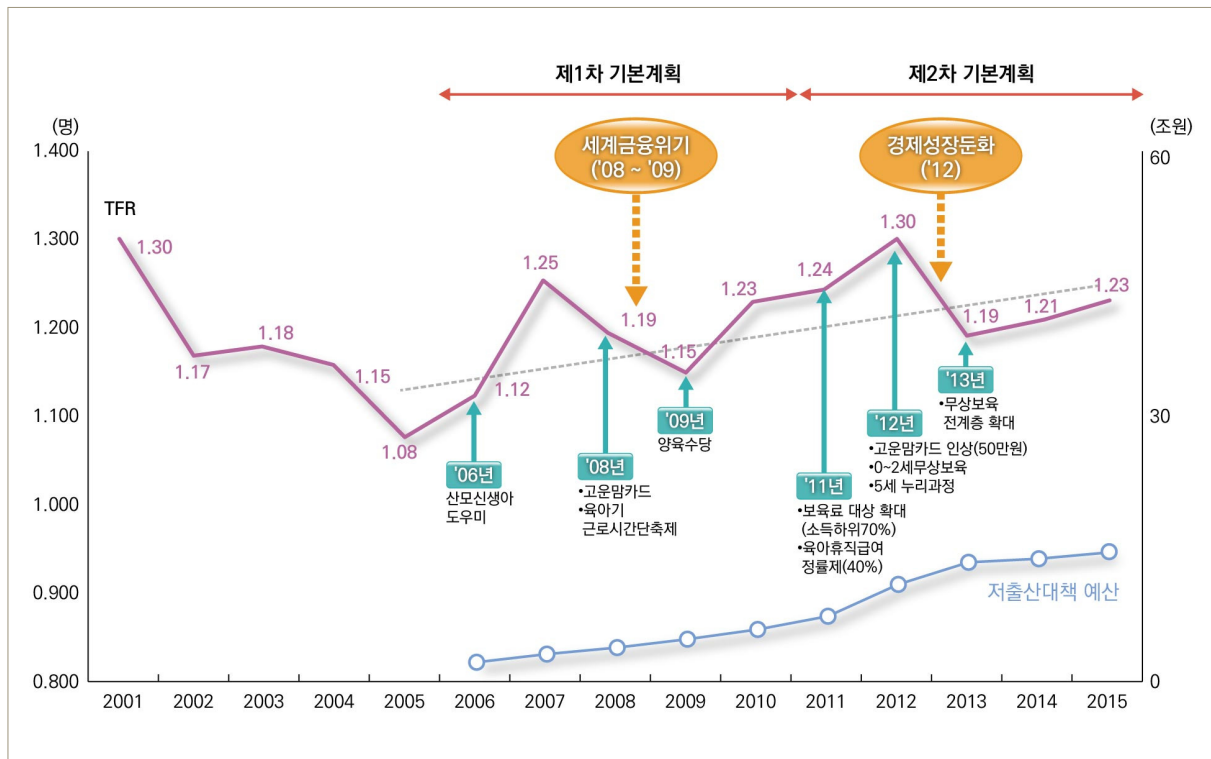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경과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 ('0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05)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추진
 -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목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추진
 - *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위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목표

» (저출산 대책) 지난 10년 간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
- 그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1.08 쇼크('05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대로 회복
 -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초저출산현상* 지속
 - * 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

〈 주요 저출산대책과 합계출산율 〉



자료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KOSIS (*2015년은 보사연 추정치)

» (고령사회 대책) 지난 10년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토대 마련

- 기초연금('14), 60세 정년 법제화('13)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장기요양보험 도입('08), 치매관리법 제정('12) 등 노인돌봄·요양 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06) 등 관련 산업 육성체계 마련

*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율 4%p 하락, 장기요양보험으로 연간 약 0.8조원 의료비 절감 효과 추정

- 그러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높은 노인자살율 등 문제 지속

* 65세 이상 빈곤율은 49.6%(OECD 최고수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8.4년 (일본은 6년)

- 고령사회('18)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생산인구감소 등 다운사이징 대책,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사회·경제체질 개선 노력 미흡

참고

1~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재정 투자 현황

1 1·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차 기본계획 ('06~'10) : 4대 분야 237개 과제 추진

분 야	중점 과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총 96개)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총 66개)	공적연금 개혁 추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요양인프라 확충 , 노인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총 71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2차 기본계획 ('11~'15) : 3대 분야, 231개 과제 추진 중

분 야	중점 과제	
저출산 분야 (총 95개)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결혼, 출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고령사회 분야 (총 78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임금피크제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 농지연금 도입, 노인질환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성장동력 분야 (총 58개)	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인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등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단 운영 등

2 1·2차 기본계획 자원투입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총계	제1차 기본계획('06~'10)					제2차 기본계획('11~'15)						
		계	'06	'07	'08	'09	'10	계	'11	'12	'13	'14	'15
총계	152.1	42.2	4.5	5.9	8.4	11	12.4	109.9	14.4	18.9	21.5	25.5	29.6
저출산	80.2	19.7	2.1	3.1	3.8	4.8	5.9	60.5	7.4	11	13.5	13.9	14.7
고령화	56.7	15.9	1.3	1.6	3.2	4.7	5.1	40.8	5.5	6.4	6.3	9.7	12.9
성장동력	15.3	6.7	1.1	1.3	1.4	1.5	1.4	8.6	1.5	1.5	1.7	1.9	2

주 지방비포함, '06~'13년은 실적행액, '15년은 예산액 기준

2 저출산 대응

» 보육·돌봄

- (성과)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조 하에,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 지속 확대, '13년부터 ‘영유아 손계층 무상보육’ 시행

* 보육료지원 아동수 ('06) 68만명 → ('14) 148만명
양육수당 수혜 아동 ('09) 68만명 → ('14) 101만명

- 무상보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미래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의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양육비용 경감 효과〉

① 보육비용 부담 인식			
2004년	2009년	2012년	
59.1 %	62.2%	33.5%	
② 경제적 부담 완화 인식			
전문가		일반국민	
매우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8.0%	78.0%	27.0%	59.9%

〈부모 만족도 제고〉

① 어린이집 이용비용 만족도			
2004년	2009년	2012년	
67.25점	66.80점	72.80점	
② 보육비용 지원정책 만족도			
2009년		2012년	
매우만족	만족	매우만족	만족
0.7%	12.2%	12.9%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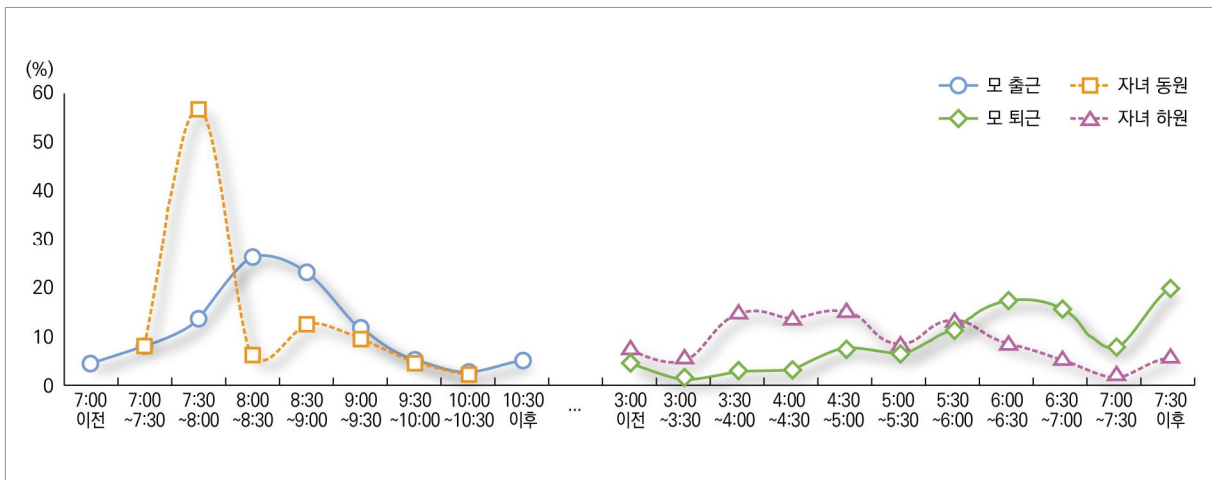
자료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증가 추이와 효과(육아연, '14)

- (한계)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 사각지대 존재

- (취업모 애로) 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로시간 불일치 등으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사적 양육부담 초래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과 사적양육서비스 중복 이용비율 35.1%, 이중 약 35%는 부모 출근 후~등원 전 또는 하원 후~부모 퇴근 전 이용(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4)

〈 취업여성 출퇴근 시간 및 어린이집 이용시간 차이 〉



자료)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연구(여정연, 2014)

〈 취업여성가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 〉

등·하원의 어려움	늦게 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믿고 맡길만한 기관 찾기 어려움	야근, 회식으로 하원이 불규칙	(마음에 드는) 기관입소 곤란
24.6%	23.6%	17.6%	14.2%	9%

- (맞춤형 서비스 미흡) 자녀양육 가정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 지나치게 시설 이용에 의존*
 -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모 취업률(33.2%)이 어린이집 이용률(35.4%) 보다 낮음(KDI, 2013)
- (질·신뢰 문제) 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부모 불안 여전, 국공립·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상존
 - * 육아지원 우선순위 설문조사(보사연, 2013) :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64%) > 양육비 지원(18%)
- (초등 돌봄 베풀) 0~5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으로 경력단절, 돌봄대체 사교육 등 유발

» 일·가정양립 지원

- (성과)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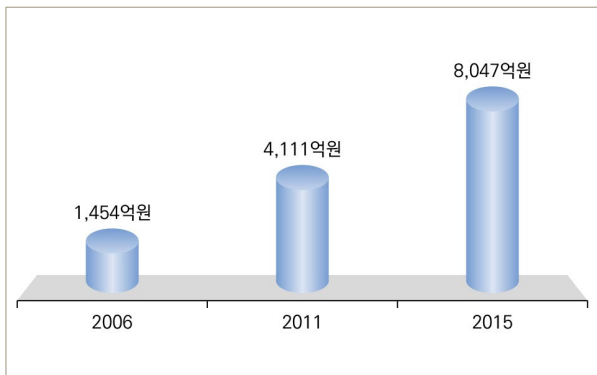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 ('08) 14개 → ('14) 956개,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령액 : ('06) 40만원 → ('14) 87만원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도입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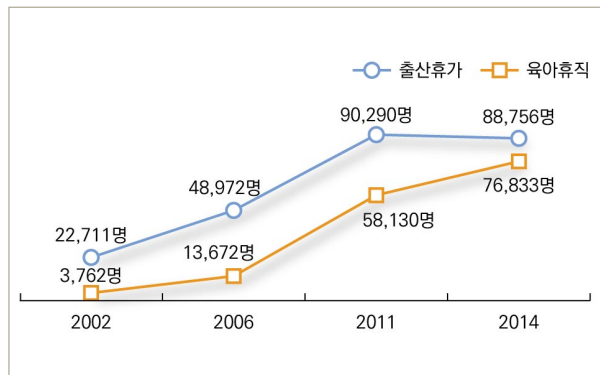
- ('06)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90일), 유산·사산휴가 도입
- ('08)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일)
-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14) 아버지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재정지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등은 단기간 내 양적으로 급증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예산 추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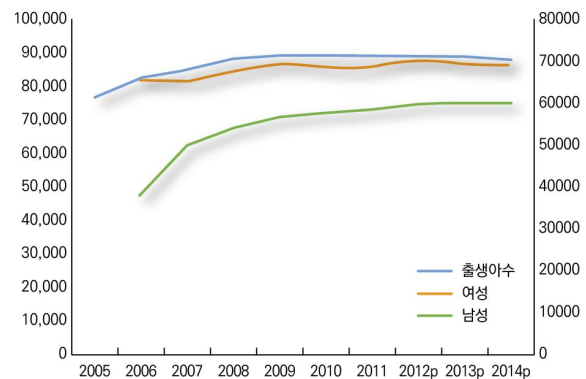


육아휴직의 출산을 제고 효과

- 육아휴직과 합계출산율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아수 대비 육아 휴직 비율 1% 증가 시 **합계출산율 0.0111명 증가** 효과(보사연, 2015)

*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남성육아 휴직 증가('06년 3.8만명→6만명)로 출생아수 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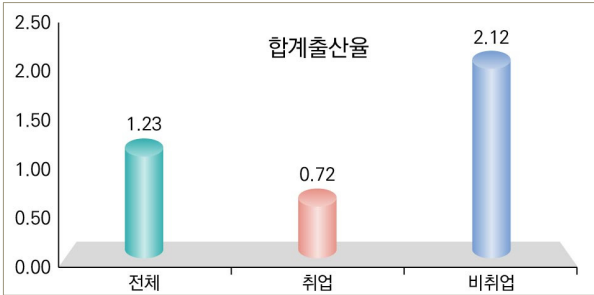
〈남성육아휴직 사용자와 출생아수 추이(캐나다 퀘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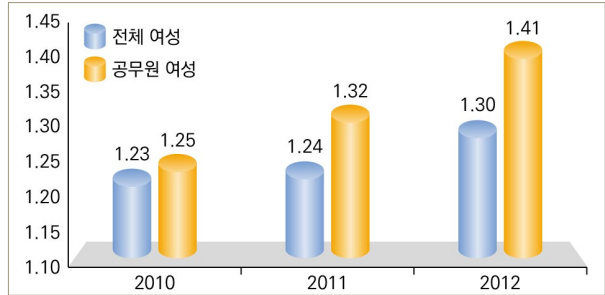
자료 Institut de la statistique du Quebec (2015)

- (한계)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 접근(문화적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제도적 한계) 문제로 일·가정양립 정착 미흡

〈 취업여부별 합계출산율(2010) 〉



〈 공무원여성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보사연, 2014)

- (장시간 근로)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근본원인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및 문화개선 필요

*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14) : OECD 1,706시간 vs 우리나라 2,057시간

-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형태도 일·가정양립을 위해 중요하나, 유연·탄력근로는 출산율 회복국가에 비해 걸음마 단계

* 유연·탄력근로 비율 : 출산율 회복국가 42.4% vs 우리나라 7.6% (일·가정양립실태조사, '13)

-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여성중심 접근이 여전하여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식, 출산 기피 영향

*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 : 남 0.7시간 vs 여 3.3시간 (여정연, 2014)

*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 스웨덴은 16개월 육아휴직 중 2개월 양 부모 할당, 노르웨이는 남성 12주 휴가 할당, 임금은 80~100% (남성의 70%가 5주 이상 육아 휴직 사용)

- (이용격차·미스매치) 대표적 일·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 대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9%이나, 전체 육아휴직자의 47.1%를 차지 ('15.7)

〈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현황('10~'14) 〉

구분		~10인	10~29	30~99	100~299	300인~	평균
출산휴가 대비 여성육아휴직자 비율		64.8%	61.2%	59.1%	69.5%	91.3%	74.4%
남성 육아휴직 비율		3.1%	3.0%	3.8%	4.3%	4.1%	3.8%
휴직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13년)	여	47.0%	54.8%	57.3%	64.5%	76.9%	65.5%
	남	56.3%	58.7%	55.6%	60.1%	73.2%	65.8%

자료 고용부 내부자료(고용보험 DB, 2015)

- 직장어린이집,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 등은 취업모의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고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

* '14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고용부) 결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2.2%에 불과

〈유자녀 취업여성 (25~39세)의 일·가정양립 제도 수요-공급 일치도〉

가장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로제	직장어린이집
69.5	46.9	16.9	17.6	4.7

자료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보사연, 2014)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성과)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고운맘 카드 도입('08) 등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 고운맘 카드 지원 확대 : ('08) 20만원 → ('10) 30만원 → ('11) 40만원 → ('12) 50만원, 다탈아 산모 70만원

- 인공·체외수정시술 지원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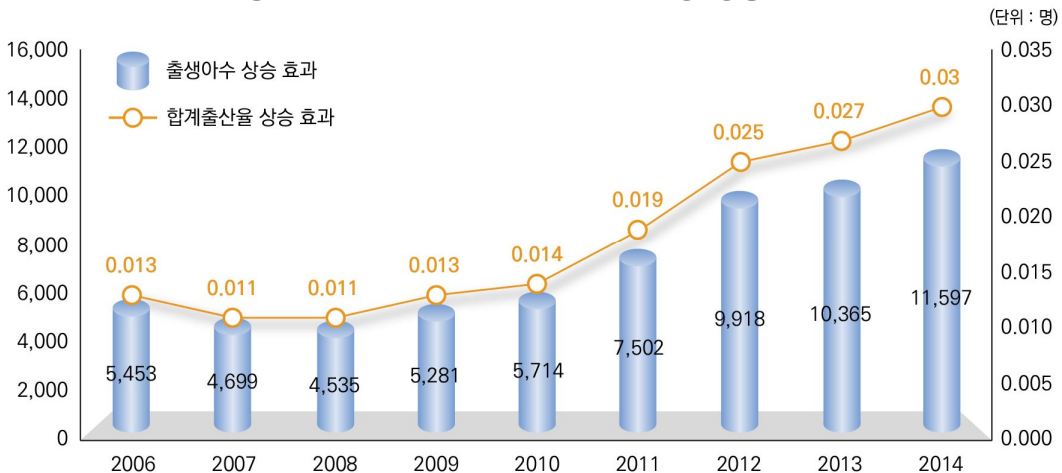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지원('06), 인공수정시술 지원('10)

- 고위험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분만 취약지 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여건 확충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15),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11년부터 31개 지역),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확대('13~), 신생아 난청조기진단('09) 등

난임 지원의 출산을 제고 효과

-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14년 기준 합계 출산율 0.03명 상승 효과



● (한계)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로 의료비 부담 여전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비급여 47.4%)

- 난임부부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접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심리·정서 지원 미흡

* 난임진료자 규모 : ('08) 173천명 → ('10) 198천명 → ('12) 202천명 → ('14) 215천명

* 체외수정 시술 기간만 30일, 난임시술 여성의 60%가 우울증 심각 상태 (보사연, 2014)

➤ 결혼 지원

● 그간 결혼 지원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분야 일부 대책에 한정

*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 완화 : ('10) 부부합산 연5천만원 → ('11) 5천5백만원 → ('14) 6천만원

- 만혼·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 인식·문화개선에 소극적, 일자리·주거·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 미흡

* '14년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결과 : 결혼지원 정책은 정책체감도가 가장 낮음 (미혼남녀의 7.8%만이 과거에 비해 결혼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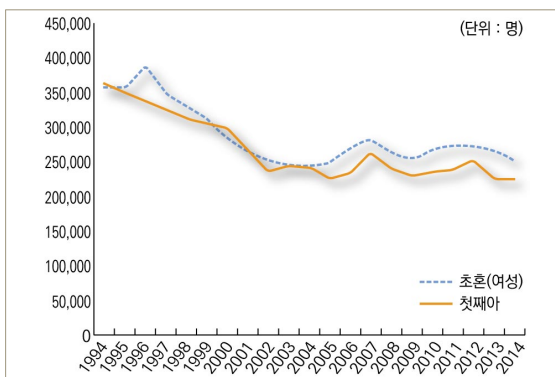
만혼·비혼과 출산율과의 관계

● 만혼·비혼화에 따른 결혼을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초래

* 초혼연령 변화 : ('03) 男 30.1세, 女 27.3세 → ('14) 男 32.4세, 女 29.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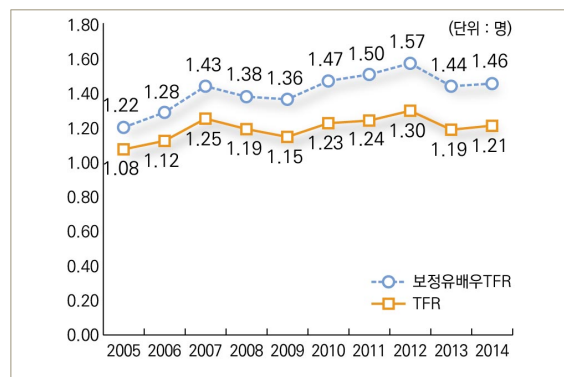
	기준연도 TFR	비교연도 TFR	기간 TFR 변화	요인별 분해	
				기혼여성 출산율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배우율 유지가정)	결혼률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유지 가정)
2005~2014	1.076명	1.205명	0.129명	+0.717명	-0.376명

〈 초혼건수와 첫째아 출생아수 〉



자료 통계청, KOSIS

〈 합계출산율과 기혼여성 출산율 〉



자료 초저출산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보사연, 2014)

〈 여성의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자녀수 〉

구분	25세 미만 결혼시	25~29세 결혼시	30~34세 결혼시	35~39세 결혼시
평균 자녀수	2.03명	1.88명	1.46명	0.84명

자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 포기되는 출생·양육의 문제도 심각하나, 그간 저출산 대책에서는 관련 대책은 미미한 수준

- * 인공임신중절은 연간 약 17만건 중 미혼자 약 7만건 추정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0)
- 가족 형태에 따른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한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사회문화 개선 노력 부족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 교육, 일자리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미흡
-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증가 추이 : ('11) 13,887 → ('15) 16,140
- * '13년 입양아동 686명 중 641명이 미혼모(부) 아동

참고1

해외 정책사례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정책 성공요인

구 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어권)
합계 출산율		1.98 ('14)	1.91 ('14)	1.86 ('13)
사회 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다양한 가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 중단	사회적·제도적 수용 * 고출산 흑인·히스패닉
정책적 요인	일·가정양립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정책 보편적 적용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지원 (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세제, 연금크레딧 등 간접적 지원 각종 수당 지원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2.8%	각종 수당 통한 적극적 지원 (육아의 사회화)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2.9%	직접적 지원 미흡하나, 세제 등 간접적 지원 저비용 민간보육 이용 활성화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0.4%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공보육 중심	민간보육중심

2 유럽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구 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합계 출산율		1.42 ('13)	1.27 ('13)
사회 문화적요인	남녀평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 구 50%이상이 카톨릭신자	가부장적 사회구조 * 인구 90%이상이 카톨릭신자
	다양한 가족 수용성	소극적 수용 * 법률혼이 보편적 가치	소극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정책적 요인	일·가정양립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원 미흡 * 대졸여성 40% 출산포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일·가정양립곤란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미흡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1.9%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0.5%
	육아인프라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보육 인프라 부족

참고2

우리나라 혼인·출산 통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임기여성(천명)										
15-49세	13,670	13,615	13,579	13,532	13,461	13,347	13,215	13,096	13,002	12,909
25-29세	1,905	1,933	1,958	1,974	1,939	1,848	1,747	1,642	1,559	1,517
30-34세	2,175	2,100	2,030	1,958	1,905	1,909	1,936	1,962	1,978	1,943
혼인건수(천건)										
총건수	314	331	344	328	310	326	329	327	323	306
남성 초혼	253	274	285	270	256	273	277	276	274	258
여성 초혼	245	269	281	264	251	269	273	270	268	251
여성 혼인율(%)										
25-29세	76.9	81.8	85.6	79.0	74.3	79.1	81.2	80.3	79.9	73.6
30-34세	26.3	29.7	33.6	35.4	37.0	42.0	46.4	50.0	51.7	50.3
남성혼인율(%)										
25-29세	54.5	56.7	56.8	51.8	48.0	49.6	50.5	48.2	47.1	42.7
30-34세	46.0	51.0	55.7	54.5	53.6	58.5	61.2	63.4	64.2	61.0
출생아수(천명)										
계	435	448	493	466	445	470	471	485	436	435
첫째아	223	231	262	242	230	235	240	249	225	225
둘째아	167	171	182	176	170	182	179	184	166	165
셋째아+	41	42	46	44	42	50	52	51	45	44
합계출산율(명)	1.076	1.123	1.25	1.192	1.149	1.226	1.244	1.297	1.18	1.21
출생아수(천명)										
계	435	448	493	466	445	470	471	485	436	435
첫째아	223	231	262	242	230	235	240	249	225	225
둘째아	167	171	182	176	170	182	179	184	166	165
셋째아+	41	42	46	44	42	50	52	51	45	44
결혼~출산 소요기간										
계(년)	3.45	3.44	3.41	3.43	3.4	3.52	3.51	3.45	3.42	3.4
첫째아	1.79	1.78	1.78	1.74	1.76	1.79	1.75	1.76	1.77	1.79
둘째아	4.54	4.57	4.61	4.61	4.53	4.56	4.6	4.55	4.5	4.48
셋째아 이상	7.92	7.94	7.93	7.94	7.85	7.9.0	7.87	7.71	7.65	7.56
실질GDP성장률	3.90	5.20	5.50	2.80	0.70	6.50	3.70	2.30	2.90	3.30

주 결혼-출산 소요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출산까지의 동거기간

자료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ECOS, 출산율 등은 통계청 KOSIS

3 고령사회 대응

노후소득 보장

- (성과)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08)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참고: 연도별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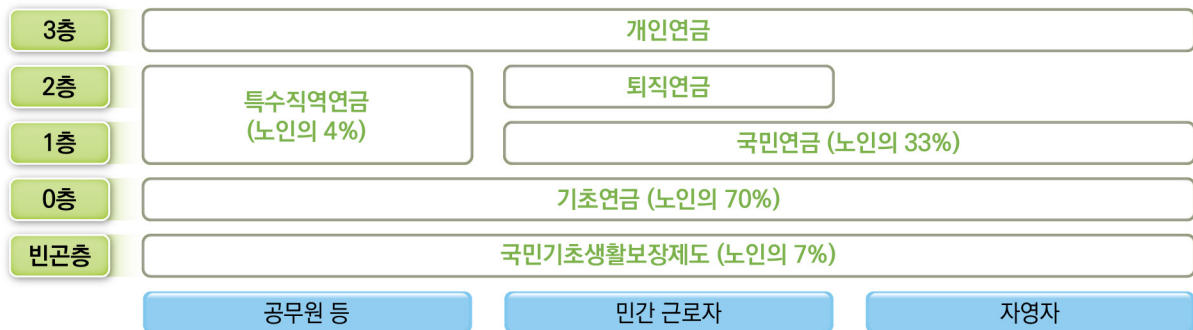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급자	677,849	848,348	986,564	1,129,942	1,265,781	1,417,187	1,613,886	1,810,913	1,981,184
평균 연금월액*	159,760	169,050	177,740	191,490	203,730	219,010	240,120	258,060	276,130

* 평균연금월액은 해당년도 12월 당월 지급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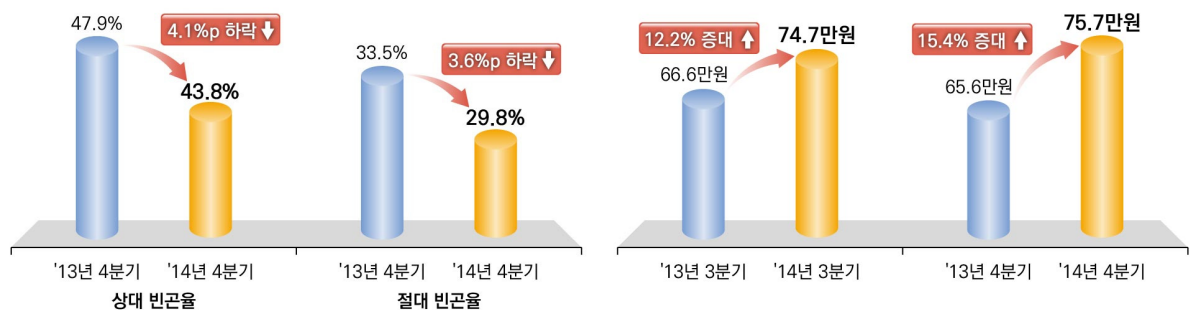
- 퇴직연금('05), 개인연금, 주택연금('07), 농지연금('11)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

*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 51.6%('14), 주택연금 가입자 수 27,127건('15)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65세이상)〉



- '14.7월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노인 빈곤율 4%p 감소 효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재분석(국민연금연구원)

● (한계) 지난 10년간 공적연금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 사각지대 여전

- 전업주부 등 (당연가입) 적용제외자(1,049만명)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서 제외될 우려

〈경제활동 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 실태 ('15.7월)〉

특수지역 연금 가입 등 159만명	가입대상자 3,187만명				임의(계속) 가입자 43만명
	적용제외자 1,049만명	가입자 2,138만명			
		당연가입자 2,095만명			
		지역가입자 844만명		사업장가입자 1,251만명	
		납부예외자 458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자료 국민연금 통계

- 주택 등 안전자산 편중으로 인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주택·농지연금 등 활성화 시급

〈연령대별 자산보유 비율〉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자산 보유액 (만원)	23,115	33,072	43,025	33,660
실물자산 구성비(%)	61.0	69.0	74.1	8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 (성과)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 장기요양보험 도입('08) 및 대상자 확대('12, '13),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 신설('14) 등 노인 의료비 절감 및 가족 부담 경감

* 장기요양수급자 : ('09) 28만명 → ('10) 31만명 → ('12) 34만명 → ('14) 42만명

** 장기요양보험 이용으로 노인 의료비는 '12년 기준 최대 0.8조원 절감 추정 ('1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재부)

- 노인 틀니('12), 임플란트('14) 급여화 및 확대* 등 노인 질병특성을 감안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 ('14) 만 75세 이상 → ('15) 만 70세 이상 → ('16) 만 65세 이상

- 국가 건강검진 확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25개 보건소) 등 만성질환 관리제 도입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5대 암검진('05), 생애전환기 검진('0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12)
- 말기암환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11), 건강보험 급여화('15) 등 후기의료체계 도입
 - * 전국 56개 기관 933개 병상 운영('15), 암사망자 7만5천명 중 9천명 이용(12.7%)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10), 치매관리법 제정('12) 등으로 치매 예방-발견-치료-돌봄 등 치매환자 보호체계 구축
- (한계)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건강수명과 격차 존재, 후기 고령자(85세 이상) 증가로 건강수명 격차 문제 심화 우려
 - * 우리나라 평균수명('12년 81.4세)과 건강수명(73세) 격차는 8.4년, 일본은 6년
- 노인성 질환은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나, 노인 의료·건강관리체계는 사후 치료에만 집중되어, 의료비 지출 적정화 필요
- 임종 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에 생애의료비의 1/3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 필요
 - *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사망 전 3개월간 의료비가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3,922억원) 중 50.4%에 달할 정도로 집중 지출, 사망 전 1개월에는 3,624억원으로 최고조
- 국가치매 종합계획 수립 등 치매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매 예방, 치료,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미흡

» 생산인구 감소 대비

- (성과)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고 숙련된 인력이 연령 제한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세 정년 법제화
 - * '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7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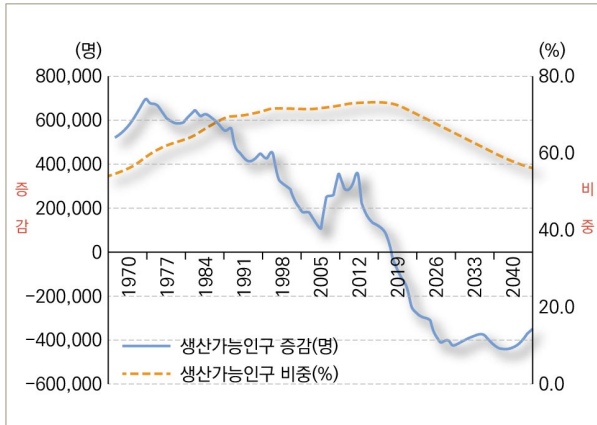
〈고령화 경제에서 정년 연장(57세→60세)의 거시경제 효과〉

	현재 경제	고령화 경제	정년연장 후 고령화 경제
총 생산	100	84.43	90.10
1인당 총생산	100	91.79	97.97
전체 고용	62.49	49.94	5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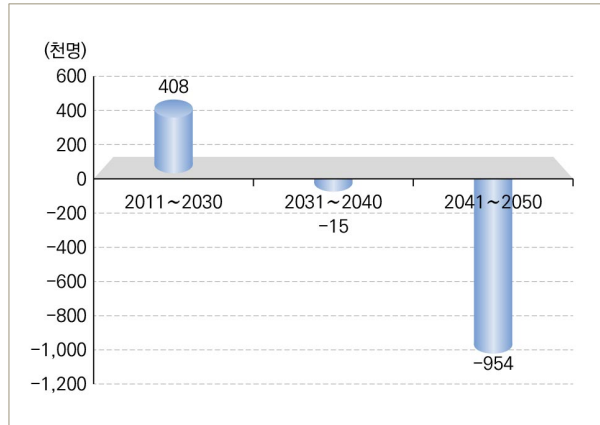
자료)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홍재화, 강태수. 2015.

● (한계) 단기 대응 위주 인력대책으로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비한 인구경쟁력 확보에 한계

〈생산가능 인구 추이 (1970년~2040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정년 60세가 정착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급시기와 정년 사이의 괴리는 여전하여 소득공백기 상존, 정년제도 추가 개선 검토 필요
 - * 61세인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60세 정년과는 1년 괴리, '18년에는 2년으로 확대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하나, 여성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
 - * 경력단절여성 214만명, 5년 미만 경단여성은 88만명 (3년 미만은 55만명)
- 체류 외국인이 180만명을 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로, 우수 유학생 유치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할 시점
 - * '14년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은 방문취업(26만 1천명), 비전문취업(24만 7천명), 결혼이민(13만명), 유학생(8만 1천명), 전문인력(4만 8천명) 순
- 평생 역량개발체계 확충*, 직업구조 변화·과학기술 진보 등 향후 10~20년 인구·사회변화를 내다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민 필요
 - * 평생학습 참여율은 '14년 기준 36.8% 수준 (통계청)

▶ 성장동력 육성 및 다운사이징 대비

- (성과)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06)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하고자 노력
 - * 고령친화산업전시체험관 설치('06),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07) 등

-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및 국가재정 개혁 추진
 - * 공무원 연금개혁 ('14), 재정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
- (한계) 고령친화산업 및 실버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도 걸음마 단계
 - *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300곳 대상 조사 결과 65%가 고령친화산업에 진출의사 없음 (대한상공회의소 실버산업인식조사, 2015)
 - ** 고령친화산업 R&D 투자규모 : 우리나라 250억원 vs 독일 5천억원
- 병역자원 부족, 학령인구 급감, 농촌 고령화 심화 및 공동화 등에 대비한 분야별 다운사이징 구조개혁 노력 구체화 시급
 - * '23~'33년 : 연 평균 2.3만명 현역자원 부족 발생('29년 3만명 부족)
 - ** '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 발생, '20년 이후 정원 미달 급증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국가재정의 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필요
 - * 국민연금 : '44년도부터 수지적자 발생, '60년 적립기금 소진, 건강보험 : 현 보험료율과 지출행태 유지시 '35년에 고갈

4 대책 추진 기반

» 전 사회적 협력체계의 문제

-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협업이 활발할 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나 중앙정부 위주로 정책 추진
 - 기업, 가족,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자원과 책임의 분담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전사회적 동참 분위기 형성에 한계

» 지역의 주도적 역할

-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에서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미흡
 - 지역단위의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기획, 지역사회내 논의,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나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는 중앙정부 정책에 한정

» 추진 인프라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의제관리, 조사·분석, 협의·조정 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 연구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집적·활용될 수 있는 지식관리인프라 구축 필요
-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파급효과가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여 매우 방대하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만으로는 한계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 도입·변경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중요

지난 10년 저출산 대책 평가를 통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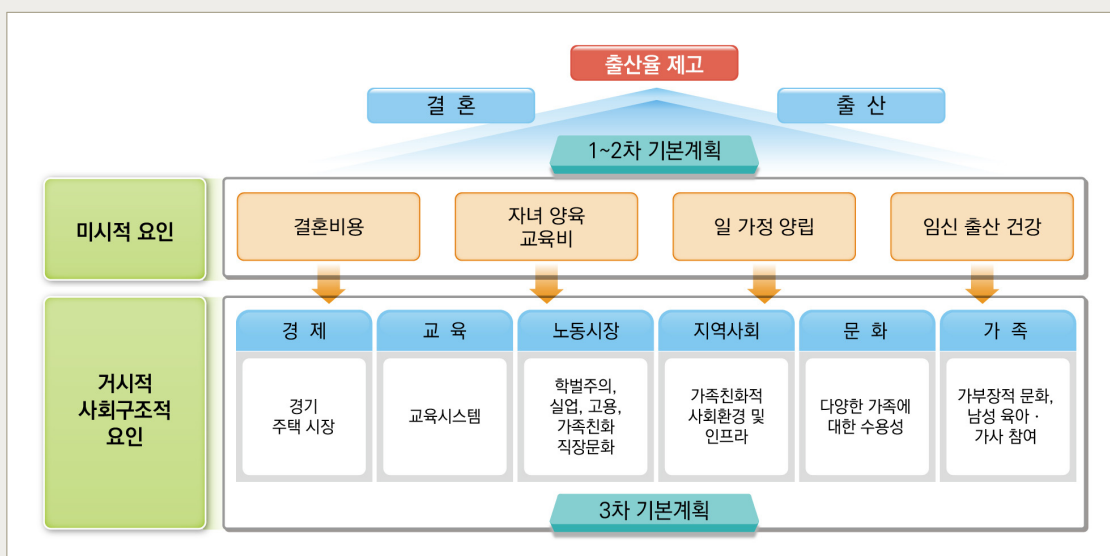
1 저출산

- 보육투자는 **양적 확충**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질적 성숙단계로 도약** 필요
- 일·가정양립은 **공공·대기업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육아**에 중점을 두어 **실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난임 지원 등 **효과성 높은 대책**은 **집중적 투자**를 통해 출산율 제고 효과 극대화
- **만혼·비혼 대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책이 미흡했던 분야는 3차 기본계획에서 **본격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그간 양육비용 지원 중심의 미시적 대책을 넘어서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구조, 문화**에 대한 **거시적 대책**까지 확장 필요

2 고령사회

- 소득, 건강 등 고령자 삶의 질 관련 대책은 제도적 틀 구축에서 **사각지대 해소**, **분야별 정책 연계** 등을 통한 **성숙단계**로 이행 시급
- 그간 고령사회대책이 고령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었다면, 3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경제적 대책**, **중장기 시계의 미래 대책**으로 확장 필요
- 특히, 고령사회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실버경제 육성** 등 산업·경제적 체질 개선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중요

〈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확장 방향〉



IV.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방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 ▶ 3차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
 -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의 협력,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 강화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

프랑스 ('93) 1.66명 → ('14) 1.98명, 스웨덴 ('99) 1.50명 → ('14) 1.91명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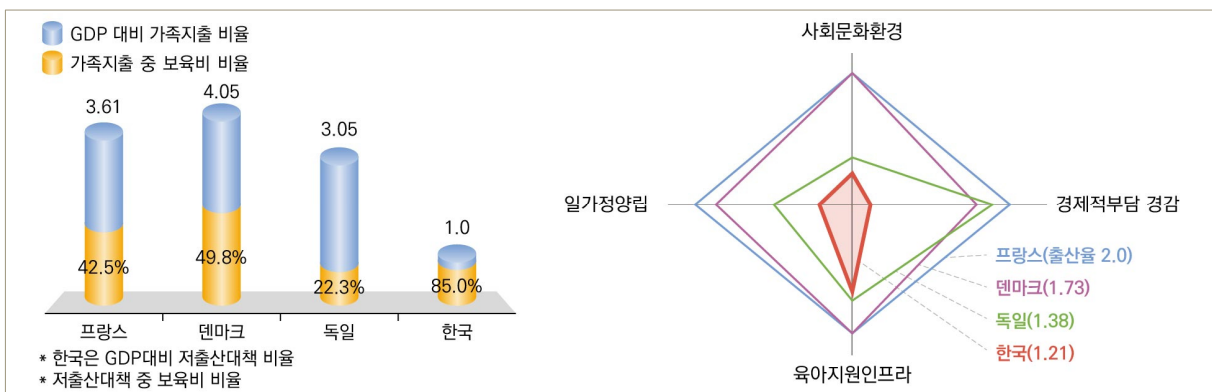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

» 청년 일자리·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 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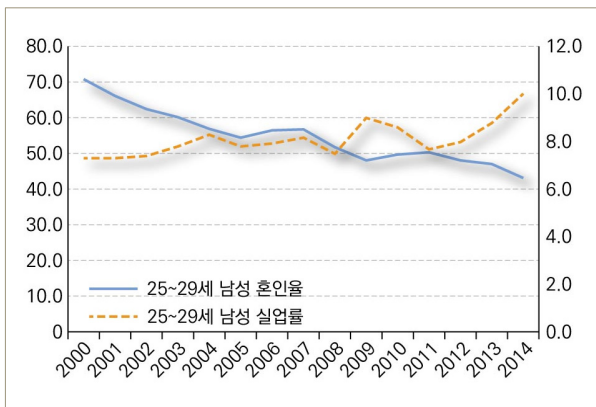


-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와 같이 보육 등 육아지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균형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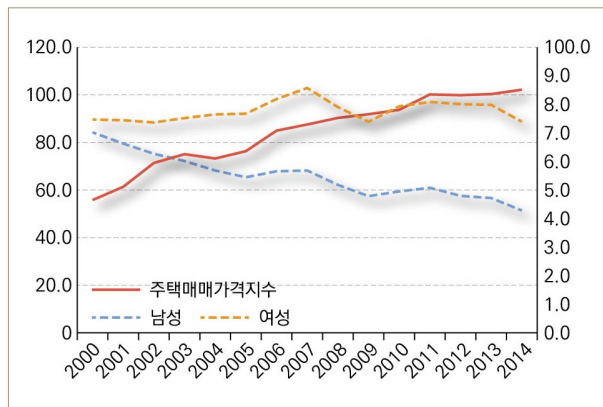


- 만혼 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

〈 25~29세 남성의 실업률과 혼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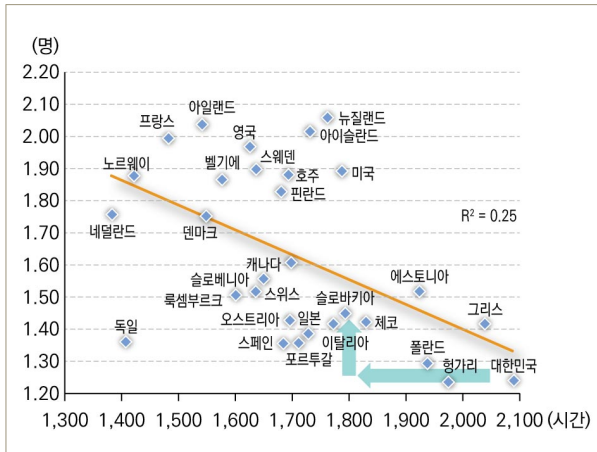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혼인율 〉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및 문화 개선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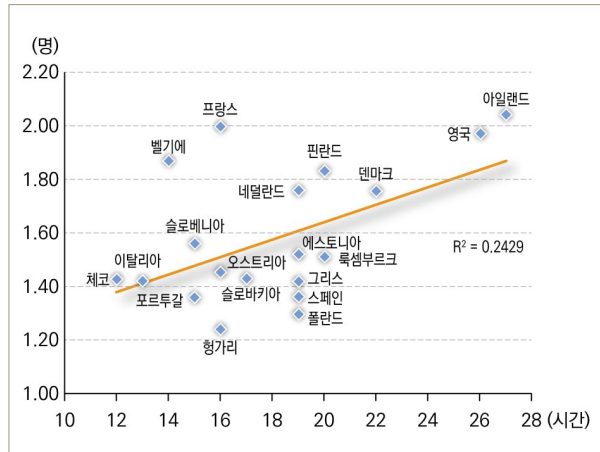
- 장시간 근로 행태, 여성 중심 일·가정양립, 배타적 가족관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 개혁, ‘있는 제도’의 실천에 초점

〈연간근로시간과 출산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14)

〈남성의 자녀돌봄시간과 출산율〉



자료 OECD 자료 분석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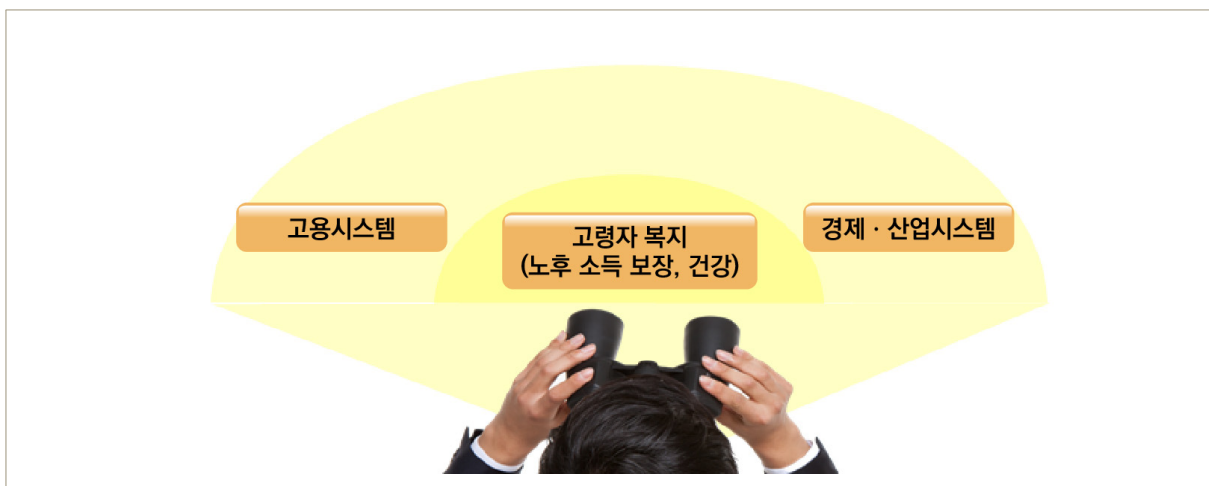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노후 소득보장, 건강생활지원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성숙기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생산인구 확충,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 강화

-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 보장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 대비, 신성장동력 육성 등 성공적 고령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추진



▶ 민간-지역-정부 협력 강화

- 정부 주도의 저출산 극복에서 벗어나, 민간-지역-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중장기 시야의 청사진 제시

- 장기적 정책시야를 바탕으로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완료할 수 없는 과제는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 로드맵 제시

2 비전 및 목표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20) 1.5명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14) 49.6→('20) 39%

추진 전략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 청년고용 활성화
-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노후 소득보장 강화

-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 조성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실행 기반

- ▶ 민간-지역-정부 협력으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문화개선 대대적 확산
- ▶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 인프라 확립

PART 1
총론

IV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브리징 플랜 2020’

「제3차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높여 초저출산 탈피, 노인빈곤율을 현재 49.6%에서 2020년 39%까지 감축

- (저출산)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도달을 위한 교두보 마련
- (고령사회) 인구 BONUS기에서 인구 ONUS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겨 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는 기본계획
- * 인구 BONUS기 : 젊고 생산적인 인구가 경제성장의 토대로 작용
- * 인구 ONUS기 :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14) 49.6 → ('20) 39%



참고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방향

한 자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0→1자녀) 만혼추세 완화, 난임부부 지원, 포용적 가족관 확산 등을 통해 한 자녀는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행복출산패키지 ▲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포용적 가족관 형성

+

두 자녀를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1→2자녀) 남성 육아참여,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일상화, 사교육 부담 경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통해 동생을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근로시간 단축) ▲ 일하는 부모의 돌봄지원 강화
- ▲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 사교육 부담 경감

+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가 우대 받는 사회

- (2→3자녀 이상) 제도적 지원, 사회적 배려 확대 등을 통해 다자녀 우대 사회 분위기 확산

- ▲ 셋째아 대학 학비 전액 지원 ▲ 세 자녀 이상 가구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 ▲ 자녀장려세제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첫째아 수 늘리기, 취약한 둘째아 출산 장애요인 해소,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높은 셋째아 출산 확산 전략 추진

〈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기여도 〉

	2005년		2014년		2005~2014
	출생아수 (천명)	합계출산율 (A)	출생아수 (천명)	합계출산율 (B)	합계출산율 변화율(B-A/A, %)
전체	435	1.08	435	1.21	12
첫째아	223	0.57	225	0.64	12.3
둘째아	167	0.41	165	0.45	9.7
셋째아 +	41	0.10	44	0.12	20

참고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현재('14)	목표('20)	출 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관련 과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10%	국토부 행정통계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정책효과	국민임대, 5년 10년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 연간 초혼부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77.6%	82%	보사연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평균 유산·임신중절비율 두배이상(1.1%p) 감소 목표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 유산, 임신중절 등 규모/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 고용률	40.7%	48%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평균치 (50.9%) 도달	15~29세 청년 취업자/청년 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 과제 일학습병행 등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5% ('15.7)	15%	고용부 고용보험D/B	최근 증가세, 정책효과 반영	남성육아휴직자/전체 육아휴직자*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6%	37% ('25년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D/B	정책 목표치	평균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평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057 시간 ('14)	1,800 시간대	OECD 통계	OECD평균 수준 도달	연간 전체 근로시간/전체 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18.2조	17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매년 2천억 이상 감소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노인 상대빈곤율	49.6%	39%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확산 효과 반영	중위소득 50%이하 노인수/전체 노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주택·농지연금 활성화 노후준비 여건 조성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8.4년('12)	7.5년	통계청 「생명표」 및 WHO건강수명	건강수명증가추세, 정책효과 등 반영	0세에서의 기대수명-건강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 고령자 질병예방·관리 강화 노인의료·돌봄체계 내실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인교통 사망률	28.4명	20명	경찰청 내부자료	노인교통사고사망자수 총량 감소 수준 설정	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65세 이상 인구수 × 1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고령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여성고용률	55.4%	6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 수준 도달	15~64세 여성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 고용률	65.6%	7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매년 1%p 증가 목표	고령자 취업자/고령자(55~64세)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제도 개선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전반
고령친화산업 비중	5.4%('13)	10%	연구기관 발표자료, 신규 통계 생산 필요	일본수준 목표	실버산업 관련 총 생산/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유망 산업·서비스 육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V.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1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 3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시 출산율 회복

- ('14) 1.21 → ('20) 1.50 → ('30) 1.70 → ('45) 2.1 도달 후 유지

* 비교대상으로서 통계청 중위가정 :

('10) 1.23 → ('15) 1.28 → ('20) 1.35 → ('30) 1.41 → ('45) 1.42 도달 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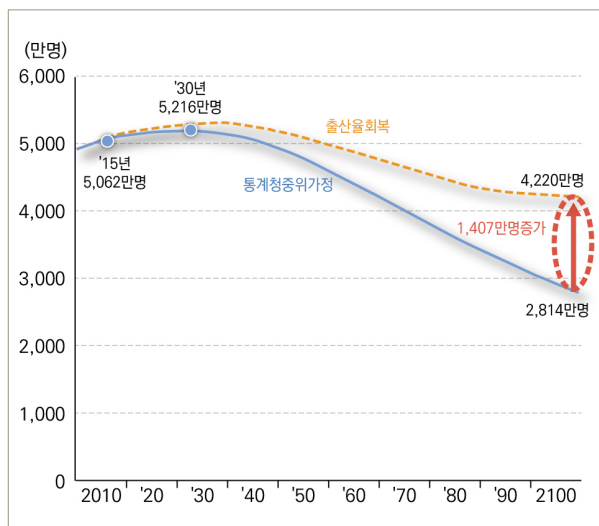
» 출산율 회복시 인구전망

- (총인구 증가) 통계청 중위가정('30년 5,216만 정점, '50년 4,812만, 2100년 2,814만)에 비해 감소시기 4년 연기('31년→'35년), '50년 301만, 2100년 1,407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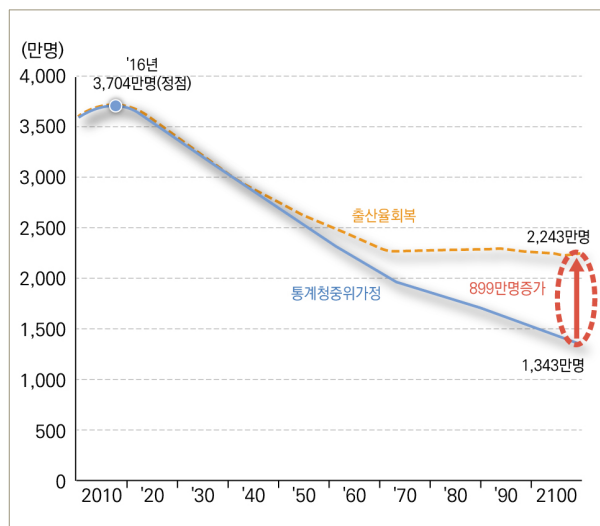
* 이하 통계청 중위가정은 2060~2100년간 추계는 보사연에서 연장 추계한 결과

- (생산가능인구 증가) 통계청 중위가정('50년 2,535만, 2100년 1,343만)에 비해 감소시기는 동일하나 '50년 95만, 2100년 899만 증가

〈 총 인구 전망 〉



〈 생산가능인구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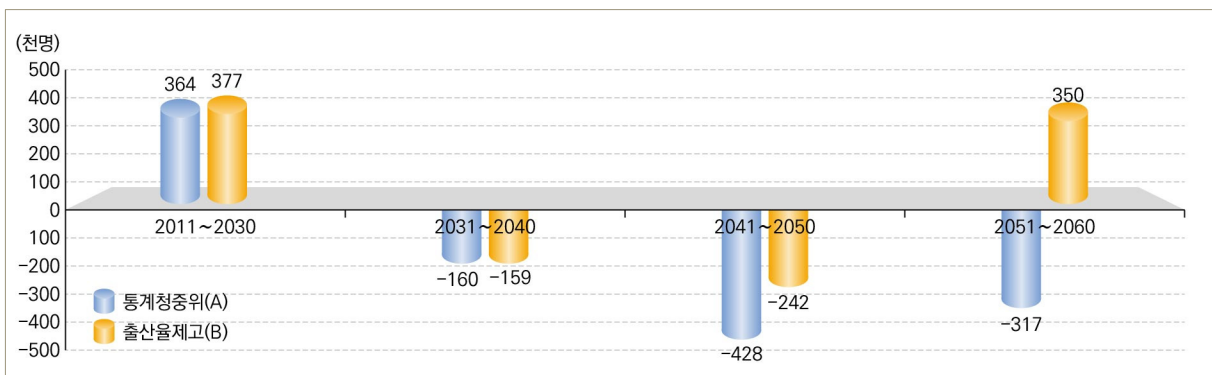
▶ 출산율 회복시 기대효과

- (잠재성장률 상승) 출산율 회복시 최근 출산율 유지시 보다 2051~2060년 기준 0.09%p 상승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출산율제고	4.42	3.60	2.87	2.07	1.47	1.08
통계청중위	4.42	3.60	2.87	2.06	1.45	1.03
최근수준유지	4.42	3.59	2.86	2.04	1.42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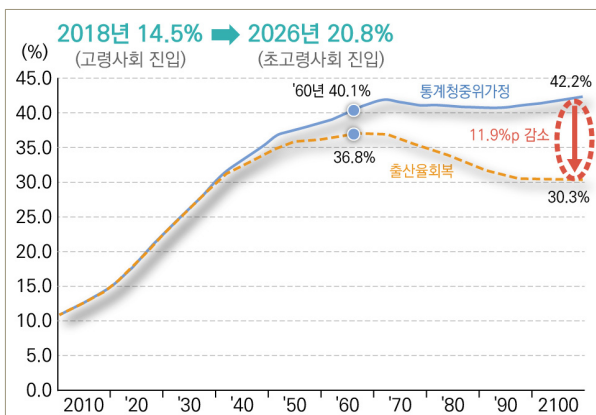
- (노동력 공급부족 해소) 현행 출산율 유지시 보다 '41~'50년 부족 규모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51~'60년에는 노동공급 부족 해소 전망

〈노동력 수급 차 (공급-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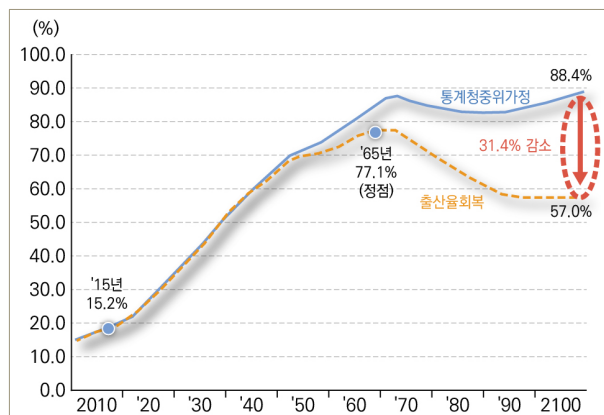


- (노년 부양비 감소) 통계청 중위가정('50년 71.0, 2100년 88.4)에 비해 '50년 1.5, '75년 16.1, 2100년 31.4 각각 감소

〈노인인구비율〉



〈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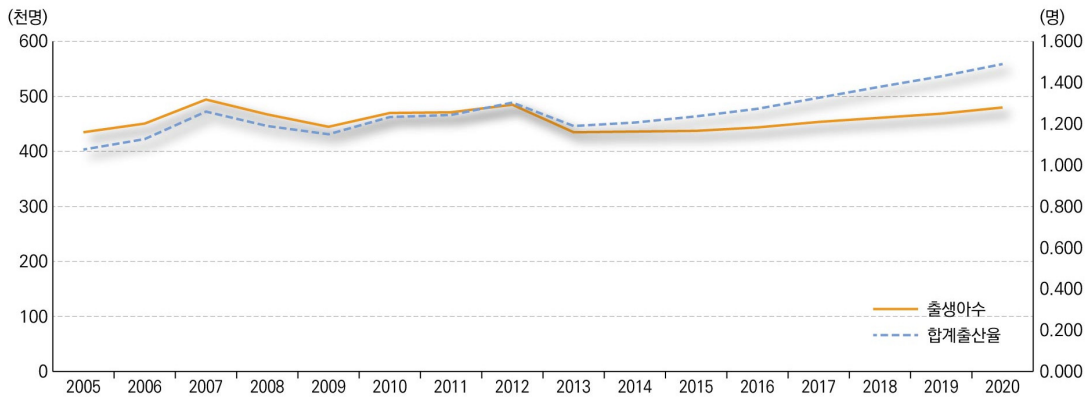


-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은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달성시 당년도 수지적자와 적립기금 소진 모두 통계청 가정에 비해 1년 지연

참고1

합계출산율 1.5명 달성근거

1 만혼대책, 일·가정양립, 난임지원 강화 등을 통해 '20년 1.5명 도달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출산율(명)	1.08	1.23	1.19	1.21	1.23	1.27	1.32	1.38	1.43	1.50
출생아수(천명)	435	471	436	435	439	445	453	461	470	480

2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연령별 결혼률 약 10% 제고

☞ 합계출산율 0.145 제고 효과

- * OECD 국가기준 청년고용률 상승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성은 약 30% 수준(OECD)
- * 주택공급확대로 여성혼인율 0.13%p 향상, 여성초혼연령 0.4세 감소 효과(국토연, '12)

3 임신·출산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등으로 기혼여성의 연령별출산율을 향후 5년간 약 10% 제고

☞ 합계출산율 0.152 제고 효과

- * 난임부부 지원 강화를 통해 '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062 제고 효과(정책 강화를 통한 순 추가효과는 '14년 기준 0.031 상승효과를 제외한 0.031 수준 추가 상승)
-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율 제고(출생아수 대비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이 1% 증가시 0.0111 증가 효과(보사연, 2015))
- * 맞춤형 보육으로의 전환, 초등돌봄 베풀 해소 등을 통한 취업여성의 합계출산율 제고 (전체 합계출산율의 약 60% 수준에 불과)에 기여

2 장기 추진 방향

분야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일·가정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15% • 중소기업·비정규직 제도 이용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20% •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제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25% • 중소기업·비정규직 격차 해소
청년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률 48% (OECD 평균수준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률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률 60%
보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육 전환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 37% • 초등돌봄 질 제고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정착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 45% • 민간아이돌봄 등록·관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 45% 이상 • 믿을 수 있는 민간아이돌봄 서비스 시장 형성
사교육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NCS 정착 • 총 사교육비 규모 17조원 (매년 2,000억원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NCS 보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중심 사회 전환
임신·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의료비 본인부담 해소, 난임지원 보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임산부, 난임지원 국가책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의료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 추진
포용적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포용적 가족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가족관 정착
노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자 489만명 • 주택연금 14.1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자 629만명 • 주택연금 33.7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자 780만명 • 주택연금 50만건 이상
고령자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확대 • 호스피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간병부담 경감 방안 마련 • 치매전문치료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피스 보편화
고령자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25% (미국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30% (독일 수준)
여성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률 62% (OECD 평균수준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률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률 67%
외국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회통합 노력 강화 • 해외우수인력 확보 • 이민정책 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정책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성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이민정책 확립
실버경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육성체계 확립 •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구축 • 유망산업 성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산업 분야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활성화 •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수출 산업 전환 • 고령친화산업 비중 20%대
다운사이징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 대학구조개혁 추진 • 농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 고등교육 인프라의 지역 평생학습 자원화 • 농촌 유입 인구 확대 대책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대체복무제도 개선

보론 통일과 인구문제

▶ 인구규모·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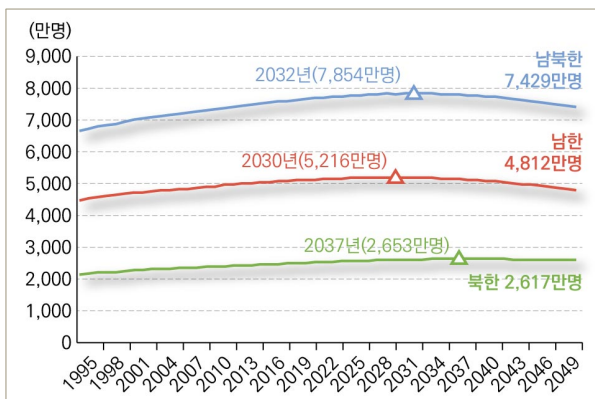
- 남북한 총 인구는 7천5백만 수준('15년 7,577만, '50년 7,503만), 생산가능인구는 4~5천만명('15년 5,438만, '50년 4,278만) 수준으로 증가
- 총 인구는 '32년 정점(7,893만), 생산가능인구는 '19년 정점(5,491만)에 도달하여 남한인구에 비해 감소시기 3년 지연

* 남한 총 인구 '30년, 생산가능인구 '16년 각각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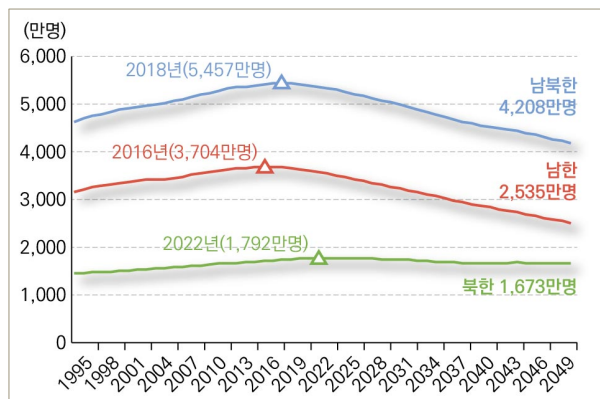
▶ 인구구조 고령화 완화

-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은 4년 지연(남한 '17년, 남북한 '21년)
-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진입은 4년 지연(남한 '26년, 남북한 '30년)
- '50년 남북한 노인인구는 30.5%로 남한(37.4%)에 비해 6.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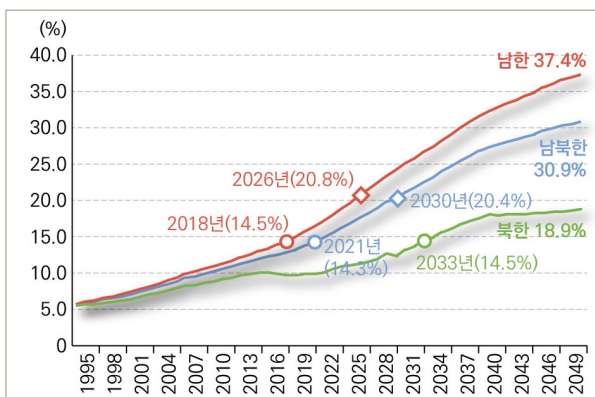
〈남북한 총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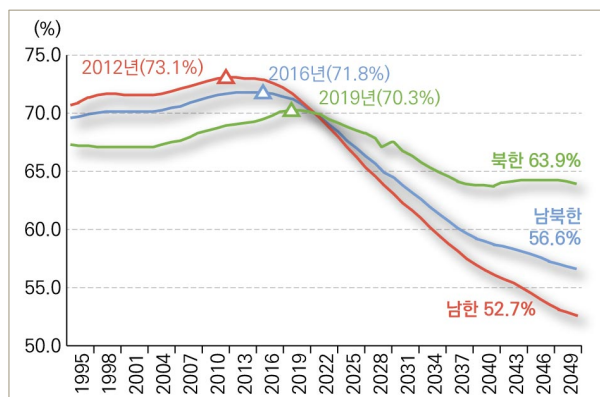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전망〉



〈남북한인구 고령화 전망〉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전망〉



더 행복함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다리

더 행복함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다리
브릿지 플랜 2020



The 3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ART 02

분야별 정책과제

- I. 저출산 대책
- II. 고령사회 대책
- III.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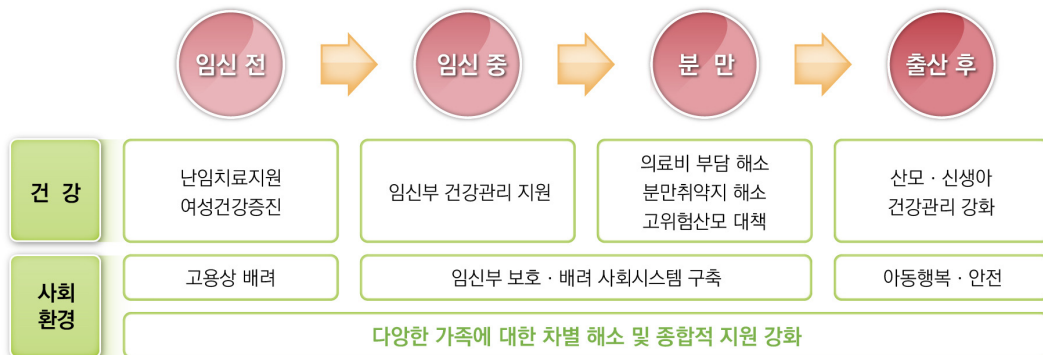
I. 저출산 대책

기본 방향

-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인식·문화 개선 병행
-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책임시스템을 확립하고, 포기되는 출생·양육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출생·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



- ▶ 출산·양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구현 등 교육개혁 추진
- ▶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
 - 영유아 뿐만 아니라 취학이후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내실화-민간시장관리의 두 축으로 체감도 제고

기본 방향

- ▶ 그간 도입된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와 근로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 '있는 제도'가 '실천' 되는 성숙단계로 도약
 - 공공·대기업은 실천을 선도, 중소기업은 실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기업·남성의 인식 및 행태 변화에 주력
 - 대표적 일·가정양립 제도인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이용기간, 급여수준, 사각지대, 재원기반 등 다각적 제도 개선 모색

〈일·가정양립 정책의 방향성〉



과제 체계도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거 안정 결혼친화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 국가 책임 포용적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부모 관점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격차 해소 행태·문화 개선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육 ▶ 돌봄 지원체계 강화 ▶ 교육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실천 분위기 확산 ▶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추진 방향

1 만혼추세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

-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공공·민간의 적극적 고용창출
-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문제 해소로 청년고용 안정 강화
- 능력중심 사회 구현으로 학벌·스펙이 중요한 채용문화·관행 철폐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 청년들이 조기 안정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체계 내실화

2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청년세대부터 예비부부까지 결혼에 이르는 주거사다리 강화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 지원제도의 기준을 현실화하여 맞벌이 등 체감도 제고

(1) 청년고용 활성화

현 황

»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고, 인력 미스매치와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면서 청년의 결혼·출산의 전제가 되는 **일자리 문제 악화**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 25.5 → ('05) 19.2 → ('10) 13.9 → ('12) 13.2

* 전공별 인력초과수요(천명, '13~'23년간, 고용정보원) :
(인문사회) △61 (예체능) △97 (사범) △26 (자연) △134 (공학) 277 (의학) 37

* 청년 고용률(%)('14) : (韓) 40.7, (獨) 57.8, (미국) 57.2, (OECD) 50.4

* 청년 실업률(15~29세, %) : ('13) 8.0 → ('14) 9.0 → ('15.2) 11.1

- 높은 대학진학률로 고학력 인력공급은 크게 늘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미스매치 발생
 - * 대학진학률(등록자 기준, %): ('90) 27.1 ('00) 62.0 ('09) 77.8 ('14) 70.9
 - * '12년 기준 양질의 일자리 수는 602만개에 불과하나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 공급은 1,050만명에 달하는 상황(한국은행)
 - * 고졸자도 대기업(30.1%), 중소기업(34.4%), 공공기관(9.0%) 취업을 희망
-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수준으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취업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
 - * 실업자 44.9만명 + 시간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5만명 + 잠재구직자 등 64.3만명 (통계청, '15.6월)
 - * 취업시험 준비인원 : ('07) 682천명 → ('10) 702천명 → ('14) 1,040천명
- » 특히, 낮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취업에 애로
 - 대·중소기업,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등 격차 심화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 시간당 임금수준('14년): (대기업 정규직) 100 > (중소기업 비정규직) 34.6
 - * 15~29세 비정규직 비율 : '02.8월 23.9% → '14.8월 34.6% (한국노동연구원, 2014)

추진계획

»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전반에 걸친 종합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 5대 노동개혁 입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15년 정기국회 처리 노력
 - 특히,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일자리의 질 제고와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 확대
 - 또한,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신규채용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고용 문화 확산

노동개혁에 따른 고용효과

-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15만명('14년, 노동연구원)
- '16~'19년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시 8~13만명('15년 연세대 이지만 교수)
-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동결시 9만명 정규직 신규 채용('15년 노동연구원)

●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및 청년 신규채용 확대

- 인력운용 효율화,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조정 등의 효율적 작동 노력
- 가급적 정규직·직접 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조성, 고용안정 +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

▶▶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청년 고용 유인 제공

- * (청년고용증대세제)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와의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 지원

● 청년인턴제를 청년이 선호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확대 운영('15년 1.5만→'16년 3만) 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입법

●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자금 조성* 등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변화에 따른 미래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채용 확대

- * 성장사다리펀드, 신성장동력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 ** 3D 프린팅, 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IoT 등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인력 양성, 고급·융합 SW 인력 공급 확대 등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 (맞춤형 진출 전략) 고급·전문 직종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직종별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다양화·차별화

- (선진국) IT, 특수 기술·기능 직종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가칭) 청해진(청년 해외진출) 대학 등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 (신흥국)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우수 한상기업 등의 중간관리자로 취업 후 현지 창업 등 성장 기회 제공
- (싱가포르·홍콩) 글로벌리크루트사 등과 협력해 초급 경력직 등 대상으로 전문직종 진출 확대
- (중동) 국내 병원·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하여 인력 진출 확대 추진(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 (정보제공 확충)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On-Off) 정보제공을 대폭 확충
 - * (온라인) 월드잡+ 확대 개편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 안내
 - (오프라인) 해외취업 설명회,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가이드 개발·보급 등
- (진출 애로요인 해소) 자격상호인정,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 청년 해외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대상 확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활성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 * 산업단지 통근용버스 허용을 종전 연 1회에서 '15년 하반기부터 수시 고시 시행
-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원,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 (희망사다리장학금) 전문대생·4년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 근무 또는 창업 유지를 의무화
 - * (성과보상기금)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5년 이상 재직 후 근로자에게 지급

»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등을 도입('16)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 증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를 부담, 최대 3억원까지 3년간 지원
- 창업선도대학 내 거점형 프로그램 확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 청년창업 펀드 조성 등 청년벤처 창업지원 강화('16~)

»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학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산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 *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6년 60개교 → '17년 공업계 특성화고교 전체 (전문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시범사업을 16개 대학에 실시 (4년제) IPP형 일학습병행제 확산('16년 20개)
- 대학의 인문역량을 강화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인문학과 타학문 간 융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강화
 - * (글로벌 지역학) 지역 중심으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융합 (융합전공)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분야와 융합한 전공분야 운영
- 산업체-대학 간 계약학과 설치요건 완화 및 지원확대
 - * (설치요건) 중소기업, 이공계 분야 → 중소·중견기업, 쏠분야 (지원수준) 학기당 교육생 1인 평균 37만원 → 74만원
-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대학의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조정지원으로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체질 개선 유도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 유도, 전공별 맞춤형 진로지도프로그램 확충과 함께 교원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청년이 조기에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분절된 대학 내 청년취업기능을 통합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충하여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원스탑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15년) 21개 → ('16년) 40개소 → 향후 단계적 확대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지역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발굴 및 매칭
- 기존의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층에 특화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이 정부지원사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처별·사업별 산재된 청년고용정책을 대표 사이트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게 정보제공 및 참여 신청의 편의성 제고(모바일 앱 등 활용)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현 황

▶ **만혼 추세 완화를 위해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인 신혼부부 주거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 평균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2%가 신혼주택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은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 (조명래, 2015)

▶ **매년 약 30만 가구가 결혼하나,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5년·10년 특별공급 등 약 1.2만호 수준('14년 기준)**

●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위치한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한 규모(예: 투룸형 36㎡)의 주택 공급은 부족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 적정월세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

▶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수요는 높으나* 대출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주거 지원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신혼부부 대출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자금 마련(87.4%) 목적('14년 주거실태조사)

추진계획

▶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 ('13~'14) 각 3천호 → ('15) 4천호 → ('16) 5천호

●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편의 제고(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 대다수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주거지를 마련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 주택 청약자격 부여('16년)

▶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 국립대 기숙사 건립시 기혼 대학(원)생 숙소 5% 이상 확보 등 대학(원)생 부부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교육부 소관)
 - * ('16) 4개 대학, 총 수용규모 2,904명 건립(기혼자 숙소: 145명), ('17) 2개 대학, 총 수용규모 1,680명 건립(기혼자 숙소: 84명)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근의 전세 시세를 감안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수도권 1억→1.2억, 비수도권 0.8억→0.9억)하고,
 - 제도 변경 이후 신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0.2%p 금리 우대를 실시하고 '17년 이후 두 자녀 가구에 대한 금리 우대(0.2%p) 신설 검토
 - * 현재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만 금리 우대(0.5%p) 실시 중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금리 우대(0.2%p)를 실시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이하 → 70%이하)하여 입주 기회 확대('16)
 - * 다만, 사회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취지를 고려하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1순위 자격 부여
 - 또한,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감안, '16년부터 평균 공급량(3천호)보다 확대된 4천호를 공급하여 향후 5년간 약 2만호* 수준 공급
 - * 다만, 전체 전세임대 물량이 현행 수준('16년 3.1만호)에서 유지됨을 전제
- (행복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3만호 공급
 -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하남 미사 등 5개 지구)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대상) 수도권·지방 대도시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 연말 착공 하남 미사(1천5백호, '17) 시범사업 추진, 성남 고등(1천호, '18), 과천 지식(1천5백호, '19), 서울 오류(8백호, '16), 부산 정관(1천호, '18) 등 총 5,800호 추진
- (특화내용) 50% 이상 투룸형으로 (예비)신혼부부 공급, 아동양육 친화시설* 대폭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 공간, 등하교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지내 쌈지농장 등

- 신혼부부가 거주 중 출산시 더 넓은 행복주택 재청약 기회 부여 및 자녀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

- (국민, 5년·10년 임대)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능한 국민, 5년·10년 임대 등 공공건설임대 공급 확대 (약 6.2만호, 우선·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30% 우선공급, 5년·10년 임대주택 15% 특별공급

- (기업형 민간임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이(연 5%이내) 장기 거주(최장 8년)하면서 세탁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제공 및 신혼부부 목돈 부담 경감

* '15년 1.4만호(리츠인가기준)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17년까지 최소 6만호(누계) 사업추진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만혼 추세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시 인센티브 부여

* 전세임대는 현재도 나이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국민임대와 5년·10년 임대까지 확대 검토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 방향

1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확립

-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 고위험 산모 지원, 분만취약지 해소 등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 확충
- 시간, 비용, 정서·심리지원까지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2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강화

- 한부모 가족의 양육 지원 현실화와 학업·육아 병행 여건 조성
- 비혼·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문화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입양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3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구현

- 모든 아동들이 즐겁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 보장
- 학대, 안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1)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현황

»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조산아·저체중아 출산 등 증가로 의료비 부담 과다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비급여 47.4%)

** 비급여 항목별 비율 : 초음파 35.1%,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지원은 의료비 지원에 집중되어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대책은 미흡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중 시술에 소요된 총 시술기간 21~25일(23.1%), 26~30일(16.7%), 31~35일(13.1%) 순(보건복지부, 2013)

** 난임시술 여성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심각상태 : 체외수정(67.6%), 인공수정 (63.0%)(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11~'15년까지 총 31개 지역 지원)에 있으나 매년 새로운 취약지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분만 여건 강화 필요

* 분만 취약지 : ('11)52 → ('12)48 → ('13)48 → ('14)46개 지역

●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8.5)보다 높은 수치(15.7)를 보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위인 상황

» 임신부 배려 캠페인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10만명당 9.5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아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예방책 마련 필요

* 국외 자궁경부암 발생률(10만 명당): 미국 6.6, 영국 7.1, 호주 5.5

»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당 15~20만원 공제) 도입,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CTC) 지급('15) 등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 우리나라는 독신자와 기혼자 간의 세부담 격차가 OECD 국가 중 낮은 편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필요

〈 OECD 국가 평균소득자의 조세격차 비교 ('13. OECD taxing wages) 〉

(단위 : %)

	1인근로-2자녀(A)	독신(B)	B-A(%p)		1인근로-2자녀(A)	독신(B)	B-A(%p)
독일	33.8	49.3	15.5	덴마크	27.6	38.2	10.6
미국	20.3	31.3	11.0	OECD	26.4	35.9	9.5
일본	26.1	31.6	5.5	한국	19.0	21.4	2.4
벨기에	41.0	55.8	14.8				

추진계획

➤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 출산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액 의료비를 초래하는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16)
 - 임신·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비급여 비용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비급여 비용의 19.1%)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 자연분만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무통주사** 건강보험 적용 및 본인부담 면제

행복출산패키지 도입을 통한 임신·출산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예시

▶ 자연분만 산모 : ('15) 117만원 → ('17) 0원(건강보험진료 본인부담 5% +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해소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 * 본인부담금 수준 ('15) 20~30% → ('17) 5% → ('18)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
 - 제왕절개 분만시(약 16만명) 입원비 본인부담을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수준(10~0%)으로 경감('16)
 - * 자연분만시에는 건강보험 입원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식대는 50% 부담)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에 대해 현재 20~30%인 본인 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완화('17)

- 이외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활용하여 산모가 임·출산 진료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없도록 지원('18)
-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 사용 후 남는 잔액을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검사·진료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16)
- *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중

● 임신·출산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사항 지속 발굴을 지원하여 민간보험의 고위험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확대 유도

- * 민간보험사례('15)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보험'은 조기진통 및 분만출혈을 보장 (본인부담의료비의 80%)

»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세부기준 (지원대상기간, 질병코드, 필수진료내역 등)의 단계적 완화 추진 검토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 고위험 임신부 규모는 약 13만명으로 1인당 평균 21일 입원, 약 50만원의 본인부담 발생 ('13년 기준)
- 산부인과(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
- * ('15) 6개소 → ('17) 17개소(전국 광역권역별 설치)

● 분만 취약지 산모 의료지원 확대

-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고,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 카드) 지원금액을 현행 50 →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16)
- 취약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운맘 카드를 병원 진료 이외에 응급 이송을 위해 민간구급차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지속 확대*로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 취약지·야간분만 가산수가 개선('16) 등을 통해 분만취약지 발생 예방

- * ('15) 31개소 → ('20) 48개소

● 전공의 해외 수련 지원 등을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16)

▶ ▶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17)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지속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규모는 건강보험 적용기준 마련 후 검토

-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 관리 강화('16)

〈 외국의 난임시술 지원 현황 〉

국 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프랑스	여성 43세 이하	• 인공수정 6회 • 체외수정 4회	100% (건강보험)
독 일	기혼여성 25~40세 이하 남성 25~50세로 난임 수술 경험 없는 경우	• 인공수정 : 배란유도제 사용시 6회, 미사용시 8회 • 체외수정 3회	50% (건강보험)
영국	여성 39세 이하	• 체외수정 3회	100% (NHS)
우리나라	여성연령 44세 이하	• 체외수정 6회 • 인공수정 3회	최대 190만원 (국고) 최대 50만원 (국고)

자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서울대, 2012)

- 의료·심리 종합상담을 위한 중앙-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18)

* '20년까지 난임부부 상담 연 8천건 목표

- 난임시술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한 온오프라인 **의학적·심리적 상담 서비스 제공**
- 난임가정 자조모임 참가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가임기 인구 생식건강 관리 교육 등 실시

- 난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한 경우에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휴가 도입 추진**

* 근로자 난임실태조사 및 노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방안 마련('16.上)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16.下)
→ 도입·시행('17)

- 인공수정·체외시술 등 **난임치료**를 위해 **3일간 무급**으로 난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공무원의 경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한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남자채취일도 추가로 휴가 부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난임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적 보장**

»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완화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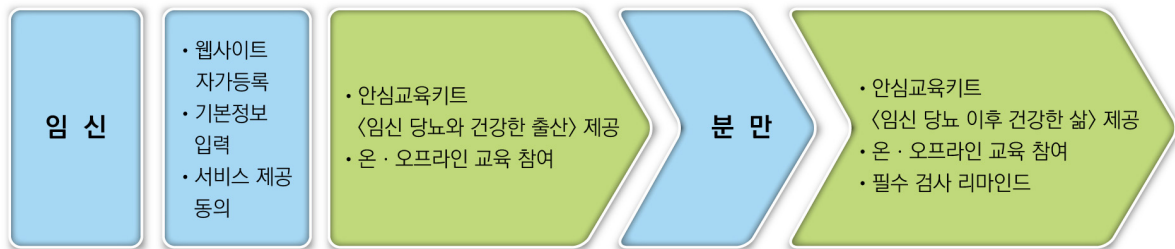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기간(한아기 12일, 쌍둥이 18일, 세쌍둥이 등 24일)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산후관리서비스 지원 검토
 - * 지원기간 확대: 한아기 기준 12일(2주, 월~토) → 15일(3주, 월~금)

※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14년, 응답자 1,300명)
→ 현행 지원기간 불충분(29.3%), 지원희망기간(평균 24.3일, 현행대비 2배)

- **지역별 양성교육 수료자 풀(pool) 구축**,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제공인력 확보 및 질 제고 추진('16)
 - * 인력현황: 교육이수자('08~'14) 13,144명, 12일 이상 제공인력 종사자('15.3.) 4,256명

● 안심교육키트 제공, 산후 필수검사 리마인드 서비스 등 **임산부 당뇨안심서비스 도입**('17)

〈임산부 당뇨안심서비스 흐름도〉



● 선천성 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18)

-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약 47만명)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인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및 ‘자동화 청성 뇌간 반응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사업 병행 추진
 - *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관행수가 : 검사 종류에 따라 3~8만원
- 비급여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4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을 감별하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1만5천명 추계
 -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 일명 ‘언청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만여명 추정)

●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 완화(’16)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면 조사하여 비급여가 없도록 건강보험 확대
 -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 경우 선택진료비 29.2%, 초음파검사 20.6%, 치료재료 15.0%, 주사료 9.5% 순으로 비급여 부담 발생(2012년 기준)
-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
 - *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재원기간, 소모품 등 보험산정기준 개선, 소아 처치의 수가체계를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특성에 맞게 분화 등 추진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 대중교통의 임신부 배려석 확산, 임신부 배려 인식개선 홍보 강화, 임신부 배려 임신부 배려 표시물 보급 등 추진(’16)
 - * 임신부 배려 국민인식도 (’14) 55.8% → (’20) 65% 증진 목표

» 여성건강 증진 강화

- 만12세 여아에 대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최초 생애전환기 여성건강증진의 토대를 마련(’16)

* 자궁경부암 백신은 자궁경부암 전암병변(CIN2)에 대해 90% 이상 예방 가능, OECD 국가 중 24개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연계하여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 하는 (가칭) 「초경여성 건강상담서비스」 도입('16)

여성청소년 건강서비스 패키지

-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실시) 현재 비급여인 자궁경부암 백신(본인부담 최대 60만원 수준)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제공
- (여성 건강 교육상담 지원) 교육·상담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전문의를 통한 여성건강 교육·상담(피임교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 임신·출산 관련 진료과로 인식되어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여성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건강서비스 사업”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의 안착을 추진하고 세제개선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내실화

저출산 관련 현행 세제 지원

- 소득세 분야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비과세
 -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 출산·입양 자녀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한도: 영유아~고교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자녀장려세제)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 기타 세제지원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 임신부 편의증진시설(7%), 직장어린이집(10%)
 - 유아용 기저귀·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제도개선 연구, 해외사례검토,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결혼·출산이 유리한 세구조로 개편 추진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현 황

▶ 한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

*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10년 9.2%→'12년 9.3%→'14년 9.4%

*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소득은 1/2, 자산은 1/5 수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12)

-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소득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으로는 안정적 아동양육 곤란

* 한부모 가구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83%(한부모가족실태조사, '12)

-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과 함께 교육, 일자리, 주거, 상담 등 종합적 지원 강화 필요

▶ 한부모, 미혼 독신, 재혼 및 입양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수용성은 높지 않은 상황

-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고용, 교육,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차별 사례 발생

▶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적 차이, 경제적 기반 취약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 다문화가족 수 : ('07)33만명 → ('10)56만명 → ('14)80만명

* 다문화 가정 학생수 : ('13) 55,780명 → ('14) 67,806명 → ('15) 82,536명

▶ 입양결정과정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 경제적 부담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국내입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입양결정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입양부모는 ▶ 입양에 대한 편견(35.3%), ▶ 경제적 부담(14.7%), ▶ 가족의 반대(14.7%) 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 국내 입양규모: ('11) 2,464명 → ('12) 1,880명 → ('13) 922명 → ('14) 1,172명

추진계획

»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16)
- 임대주택 등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확대('16)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패키지 도입
 -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단계적 현실화
 - * ('15) 월15만원 → ('17) 월20만원 → ('19) 월25만원
 - (학업)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지원
 - 주거-양육-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년별 수업을 제공하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교실형 위탁교육' 추진
 - * '16년 서울 소재 1개소 설치, 시범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검토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 소재/규모 : 서울시 서대문구/ 446평 내외(65명 주거 가능)
- 주요 기능 : 중등·고등 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설치로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년별 수업 제공
- * 과정 이수 시 출석일 수 인정, 원적 학교 복학 또는 졸업 가능

- 전국 단위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학생 미혼모의 위탁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전학 없이 원적학교 수료 추진('16)
 - * 현재 교육청별 관할 시·도 내 지정된 위탁교육기관 중심으로 학생위탁이 이루어져 타 시·도 위탁기관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절차 필요
- '책임교원제' 도입을 통한 임신 학생 상담 의무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처리 인정근거 마련
 - (자립)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대상 확대를 통해 자립 역량 강화
 - * (현행)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준비(학업 등) 시 월 10만원 지급 → 아동연령 제한 삭제 등 지원요건 완화 (향후 5년간 500여가구 지원)
 - (건강) 청소년 한부모와 산부인과 의사의 1대1 멘토제 실시('16)
 - * 낙태·영아 유기 방지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건강보험 수가 신설)

▶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 연구·검토
 - 각계 의견,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모색
 -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 방안 연구 추진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시행('16)으로 미혼모 등의 사생활 보호를 통한 사회적 낙인 방지, 요보호 아동 국가후견기능 강화
 -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중인 자의 자녀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예외가 아닌 기본증명서 방식이 되도록 개선
 - 혼외 출생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포용적 가족관 형성

- 가족의 미래 변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추진
 - 관계부처, 연구기관, 여성·종교·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인식 개선,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
 - * 민법(친족법, 혼인법 등),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주요 내용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포용적 가족관 형성 관련 논의 지속 추진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지방비 6개소 포함)에서 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취업연계, 통번역,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18), 정책수립 기초 통계자료 구축
- 한국어교육을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16~)
-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대학생 멘토링 등 다문화 학생의 학교급별,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 * 다문화 유치원 30개원 시범운영, 예비학교 100개교, 대학생 멘토링 4,000여명('15)

- 다문화 중점학교 및 교원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전체 학생 및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학령기 다문화 자녀 대상 가족·학교·사회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사회성 개발과 역량증진 프로그램 시범 운영**(’16)
-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한국어) 발달 평가 및 언어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 도모(’16~)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16~)
- 초등학교 입학전 생활지원, 입학 후 학교적응 및 기초학습지원을 위한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16~)

»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 입양아 양육지원연령 확대 및 단계적 금액 현실화를 통해 입양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15) 만 15세 미만 → (’16) 만 16세 미만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현 황

» ’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

* 삶의 만족도 영향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남

- 놀이·여가는 주거,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의 필수 요건임에도 현재 아동들은 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아동의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률(52.8%) OECD 최고 수준(’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최고 수준

* 각국의 학생(15~24세) 하루 평균 학습시간 비교(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09)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시간:분	7:50	5:21	5:04	3:49	5:02	5:55	6:06

▶ 유기,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 지속 발생

- 유기 및 미혼모, 학대 및 가출 등으로 발생하여 복지부 소관 인프라를 통해 보호되는 아동은 약 4만6천명(전체아동의 약 0.5%)에 육박

▶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정비와 함께 아동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형 안전교육 강화 필요

▶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심각

* 중1~고3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37.0%, 우울감 경험률 26.7%, 자살 생각을 13.1%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

추진계획

▶ 아동이 행복한 사회

- 「아동 놀 권리 헌장」 제정 및 범부처 놀이 계획 수립*('16)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

* (부처별 역할 예시) 복지부 :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놀이기회 제공, 문체부 : 다양한 놀이·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 학습부담 완화, 놀이 시간 확보, 여가부 : 가족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영국 "Children's Play Initiative"

- 10개년 놀이계획 발표('07) : 놀이에 대한 비전, 놀이확산 및 공간확보 등
- 정부 놀이정책 실행기구(Play England) 설립, 놀이정책 수립 지방정부 지원 기금 조성 등

● 문화체육시설·프로그램 등 놀 여건 확충

- 안전하고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놀이터를 아동친화적인 형태로 개선 추진('16~)

* 전국 놀이터(62,417개소, '14.1.)의 아동친화적 설계·운영 추진·지원

-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등 **아동전용 도서관 확충 및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16)**
-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유아체육 프로그램 확산('16)**을 통해 놀이 중심의 신체활동 증진 여건 확충
 - * 유치원 등 유아시설 228개소(시군구별 1개소)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 마당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기회 확대('16)
- **국립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놀 수 있는 여건을 개선
-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에 **아동기(9세 이상)**를 포함하여 아동의 여가·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놀이정책의 근거를 마련('16)
 - * 2년 주기 조사로서 여가활동 참여, 문화예술 경험 등 만15세 이상 전국 남녀 10,000명 대상 조사, '16년부터 조사대상을 9세 이상으로 확대

-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동 삶의 질을 개선
 - * 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전세계 30개국 1,300개 도시, 우리나라는 '14년 성북구 인증
 - *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수 : ('15) 1개 → ('20) 48개

» 아동이 안전한 사회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를 통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아동보호통합관리시스템*** 구축('16)으로 아동중심 아동복지정보 관리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강화
 -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시스템 등 연계망 구축
- 기존 아동복지 공공인프라와 민간기관·단체의 조직·인력의 연계 강화를 통한 **아동보호체계 개편('17)**으로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복지법」의 **5대 아동안전교육*시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험형 교육**을 포함하고, 가정내 사고 등 **생활안전분야** 추가로 **아동안전사고 예방강화('16)**
 - * 성폭력·아동학대예방 (연8시간), 실종·유괴방지 (연10시간), 약물 오·남용 예방 (연10시간), 재난대비 (연6시간), 교통안전 (연10시간) 등 연간 총44시간 이상
 - **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놀이, 가정, 학교, 승강기 및 자동계단, 놀이 안전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강화
 -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16)하고 빈발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17)
 - * 그간 5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는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례 유형별 정신의학적 치료 연계자료로 활용('18)
 - * 고위기 학생의 진단·검사·상담·치료기록 양식, 개인정보 보호, 보호자 동의서 등 절차 구체화
 -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군 발견시 조기개입체계 구축('18)

- 영유아 예방접종을 감염병 퇴치수준인 95%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접종률 관리 강화*
 - * 접종률 : ('15) 91.2% → ('20) 95.0%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추진 방향

- 1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확립
 - 질 높은 시설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등 안심여건 강화
 - 학생, 군인 등 보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 2 공공·민간의 자녀 돌봄 여건 확충
 -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 체계 강화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질 관리체계 구축
- 3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문제 개혁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
 -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구조·문화 개선
 - 적성과 능력 중심 교육-고용 연계 강화

(1) 맞춤형 보육

현 황

»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양적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에 한계

* (보육료) '09년 소득하위 50% → '11년 소득하위 70% → '13년 전 계층에 100% 지원

* (양육수당) '09년 만0~1세 차상위 → '13년 만0~6세 아동 쏘 계층 지원

-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 필요
 - * 취업모 23.8%가 낮은 하원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불만 경험(육아정책연구소, 2014)
- 보육료-양육수당 간 격차('15년 0세: 78만원 vs 20만원)는 시설을 안보내면 손해라는 느낌을 주어 가정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시설이용을 유도
 - * 만0~2세 시설이용률 : 우리나라 35.4%('14), EU 평균 29.0%, 일본 25.9%('10)
- ▶ 국공립 어린이집 등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어린이집과 교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원체계도 미흡
 - * '15년 기준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15%, 전체 이용아동의 28% 수준
 - * 낮은 보수수준 및 장시간 근무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 질 저하
- ▶ 대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도 저조하며, 임신·출산에 따른 휴학제도 미비로 제척되거나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
 - *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평균 52.8%) : 국가기관 83.6%, 지자체 64.3%, 기업 46.8%, 학교 34.6%
- 전방부대 여군 등 자녀 돌봄·양육의 사각지대 대책 마련 필요

추진계획

▶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제로 개편

- 질 높은 시설보육 서비스 다양화('16)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12H/일) 제공
 - * 가구특성 : 다자녀, 임신, 조손, 한부모, 가족돌봄, 저소득층 등
 - * 부모여건 : 질병·장애, 전일제 근무, 구직, 학교재학, 자원봉사 등
 - 서비스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길게 필요한 아이들도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육료 수준의 인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및 행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반(6~8시간) 서비스 신설**
 -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 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 맞춤반 이용시간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기준 조정
 -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구, 2~3교대 및 야간근무 가구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을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단계적 확대하고('16~),
 - 시간연장형 보육 제공여부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으로 설계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서비스 제공 독려
 -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자 부모 등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단시간 보육수요를 위한 **시간제 보육반 확대**
 - 시간제보육반 운영기준 개선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확산 유도
- * ('15) 243개반 → ('16) 380개반 → ('20) 687개반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16~)**

-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 부모가 임신·출산·육아정보 및 양육상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임신 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구축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Off-line 부모 종합서비스 지원(교육, 상담 등)
- * 부모지원 인프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충 추진

»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16~)
 - * 이용아동 비율 ('15) 28% → ('20) 37% → ('25) 45%
 - 국공립 어린이집을 '20년까지 지속 확충('16~'17년 150개소)하고, 확충방식을 다양화
 -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우선입소 등), 민간 설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민간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방안 추진
-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등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
(지자체 부지제공, 생보재단 어린이집 건립 후 기부채납, 복지부는 설치비·인건비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17년까지는 총 2,300개소)
 - 시설의 재무건전성, 대표자 운영책임성, 교직원 전문성 지표 등 선정기준 강화, 사후관리*로 공공성과 질적 수준 확보 추진
 - * 자율공부모임(전문강사 지원), 품질관리 컨설팅(재무회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정원구간별 운영비 지급방식을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실제 운영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방식으로 개편
- 직장어린이집을 '20년까지 매년 80개소 확충(의무+비의무), 의무사업장의 85%까지 의무이행 추진('14년 75% 이행 중)
 - 대기업-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설치비 지원 확대(최대 15억원)
 -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16~), 직접설치 대체수단 정비* 등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확산
 - * 보육수당 폐지('15), 위탁보육 요건 강화(영유아 30%이상 위탁시만 인정, '15)

〈 전체 어린이집 현황('15.6월)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시설수	개소	42,978	2,563	1,415	843	14,674	22,580	748
	(비율)	100.0%	6.0%	3.3%	2.0%	34.1%	52.5%	1.7%
아동수	현원(B)	1,359,398	163,582	96,105	46,038	703,173	303,213	43,340
	(비율)	100.0%	12.0%	7.1%	3.4%	51.7%	22.3%	3.2%

-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병설유치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을 통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16~)
 - * 국공립 유치원 이용 원아 : ('14) 148,269명 → ('20) 199,360명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평가에 부모만족도 반영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16)
 - * 매년 전체 어린이집의 1/3씩 평가(약15,000개소)
 -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프로그램 의무 이행, 재정 지원 연계 방안 모색 등 질 관리체계 강화 추진('17~)

- 시군구별로 우수 열린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보육현장 전반에 '열린 어린이집' 문화를 확산('16~)
- 보육교사 2·3급 국가자격시험 도입, 대면교육·현장실습 강화
 -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확대 배치('15.9~) 등을 통해 보육교사 보육전념 환경을 조성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16)을 통해 기관 이원화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

단계별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방안

- 1단계('14) 정보공시, 평가체계 등 서비스 질 향상 기반 구축·조정
- 2단계('15)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3단계('16) 교사·재원·관리부처 통합·정비

»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 대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휴학제도」를 도입('16) 하여 부모 대학(원)생의 학업·육아 병행 여건을 개선

육아휴학제도 주요 내용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학 학칙에 휴학 인정 범위(임신·출산·육아)와 실효성 있는 휴학기간(예: 2년 이상)을 명시

- 전방부대 군 관사내 아이돌봄 위탁세대 선정·지원을 통해 전방부대 비상시 여군 등의 보육·돌봄 공백문제 해소

* '15년 현재 2개 부대 2개 관사에서 시범 운영

전방부대 군 관사내 아이돌봄 위탁세대 운영 방안

- 근무·훈련·비상소집에 따른 심야(또는 밤샘)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군 관사내 영유아가 없는 세대(주임원사 등) 위주로 위탁세대 선정
 - *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군인가족 중 희망자
- 보육료는 개인부담으로 하되, 보육단가는 지자체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준(6,000원/시간당)적용

(2) 돌봄지원체계 강화

현 황

- ▶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및 서비스 여건 조성* 필요

* (독일) 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호르트(Hort, 지자체운영)의 돌봄서비스 제공
(일본) 학교나 지역사회 시설 활용, 지역주민 참여,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

- ▶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하교 시간과 부모 출퇴근 시간 불일치로 양육공백 발생, 양육부담 가중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과 사적양육서비스 중복 이용비율 35.1%, 이중 약 35%는 부모 출근 후~등원 전 또는 하원 후~부모 퇴근 전 이용(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14)

-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자격 및 운영기준 제도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 서비스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한계 노출

* “아이 믿고 맡길 이모님 찾으려면 최소 59명은 만나봐야” (동아일보 '14.3)

- 안전사고, 아동학대, 급여 담합, 외국인 돌보미 불법체류 및 잠적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

- 프랑스는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 및 정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 민간관리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홍콩도 베이비시터 인증제를 시행 중

* 국가가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면접 심사를 통해 5년 단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하고 연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법률로 사회보장혜택, 유급휴가 등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검증된 인력이 베이비시터 직종에 응모하도록 유인

- ▶ 미취업모의 경우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 후속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 지역사회내 양육지원 여건 개선 필요

*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임” (보육실태조사, 2012)

추진계획

»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확충
 - * 초등돌봄교실 규모 ('15) 24만명 → ('20) 26만명
 -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16)
 -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화, 안전 및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돌봄교실 교육기부 활성화 등을 통한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의 학교내 운영 허용 등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 협력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제고 및 연계체제 강화 사례

- 충남 OO초는 학생 맞춤형 방과후 시간표를 마련하여 개인별 동선을 확인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울산 OO초는 존폐위기에 처한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학교 시설을 임대하여 학교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
- 3학년 이상은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돌봄 수요 충족

»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 수준향상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돌봄 여건 확충('16~)
- 영유아·부모를 위한 개방형 놀이·소통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가정내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
 -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 : ('15) 22.3만명 → ('20) 25.8만명
 - * 육아정보 및 조언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웃,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55.5%)이 친정부모(15.0%)나 형제·자매(11.6%)보다 높음 (보육실태조사, '12)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자녀에 대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

●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 질 관리 체계 구축**

- 민간 베이비시터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 이수증 자체가 질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가칭) 「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시 등록·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 업체 질 관리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16)
 - 가사근로자지원법상 인증업체의 육아서비스 관련 교육을 여가부 교육과 연계하여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
-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 내실화 및 홍보 강화로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교육 참여와 도우미 수요 가정의 체감도를 제고
 - *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의 합법체류, 건강상태 등 정보를 구인 희망자가 열람 가능 (www.hikorea.go.kr)

(3) 교육 개혁 추진

현 황

▶ **총 사교육비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사교육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초래**

*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 : 우리나라 7.4% vs 일본 2.2% vs 프랑스 0.8%

* '14년 총 사교육비는 18.2조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사교육비는 24.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3만원 상승

● **고착화된 대학 서열, 학력간 임금격차, 학벌·스펙 중심 채용문화 등은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

* 대졸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의 임금 격차 : ('97) 10.9% → ('10) 28.9%(한국은행, '13)

* 학부모 사교육 증가원인 : 1위_취업 등에 출신대학 중요, 2위_주요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선발, 3위_대학 서열화 구조 심각 (사교육 의식조사, '13)

▶ **높은 공교육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08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EU 21개국 평균 7.8% < OECD 회원국 평균 8.7% < 한국 11%
- * 학교교육의 결과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학생의 비율은 42.9%로, OECD 평균 비율인 25%에 비해 1.5배 이상 높음(PISA, '09)

▶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양립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과 학교 참여

- * 취업모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것은 '학교에서의 엄마 노동력 사용 금지(46.3%)'이며,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의 소외(44.4%)'를 지목(삼성경제연구소, '10)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OECD 국가 중에서도 비싼 편으로 파악('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 * 국공립 : 미국(\$8,202), 일본(\$5,152), **한국(\$4,773)**, 캐나다(\$4,761)
- * 사립 : 미국(\$21,189), 영국(\$9,019), **한국(\$8,554)**, 호주(\$8,322)

추진계획

▶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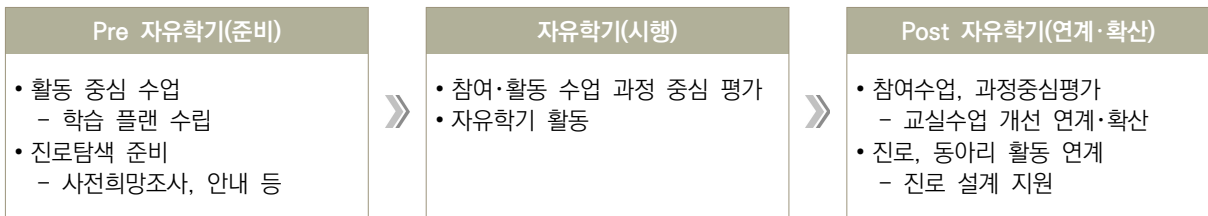
- 조기에 적성을 발견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 * **운영 학교:** ('13) 42교→ ('14) 811교→ ('15) 2,551교(79.6%)→ ('16) 3,204교(100%) 전면시행

자유학기제

- 중학교 과정 중 한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 1학년 1학기 및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 장이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기를 정함

- 자유학기의 수업·평가 혁신, 자유학기 활동 등을 일반 학기와 연계하여 학교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모델학기·선도학기를 활용
- 고등학교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유학기제 확산 모형(예시)〉



●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교과과정 개편

-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 기반으로 개편
 - * (고등학교) '16학년도부터 전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적용
 - * (전문대학) 78개교('14) → 누적 100개교('17)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통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 * 연차별 지정 계획 누적 : ('15) 9교 → ('16) 60교 → ('17)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운영(203교)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 추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의미)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
- (대상)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2학년부턴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학교와 기업, 지역산업계가 협업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운영(학교 : 이론 및 기초실습, 기업 : 심화실습)

마이스터고

- (의미)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 (운영)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 운영, 현장의 기술명장을 교장 또는 교사로 임용, 산업계 수요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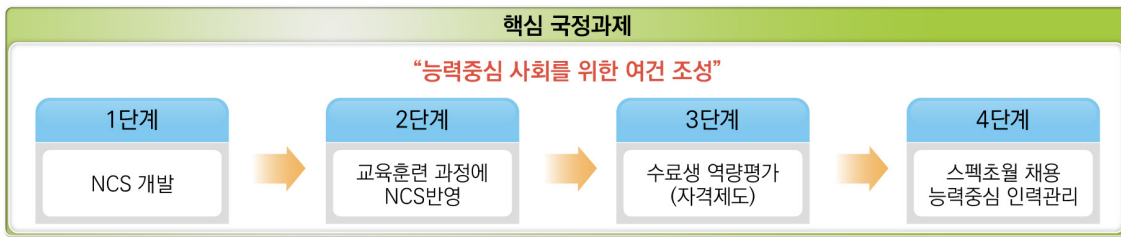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추진

- * 고교·전문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로 중·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형 인재 육성
- * 정부는 참여 학교(고교·전문대)를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여 시설장비·운영비 등을 지원

-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인재 채용이 가능하도록 NCS 기반 채용 확대
 - 낮은 사회진출을 초래하는 소모적 학벌·스펙쌓기 문제 해소를 위해 NCS 기반 채용을 확대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
 - * NCS 기반 채용 공공기관 확대 : ('15)130개 기관 → ('17) 전체 공공기관

능력중심사회와 N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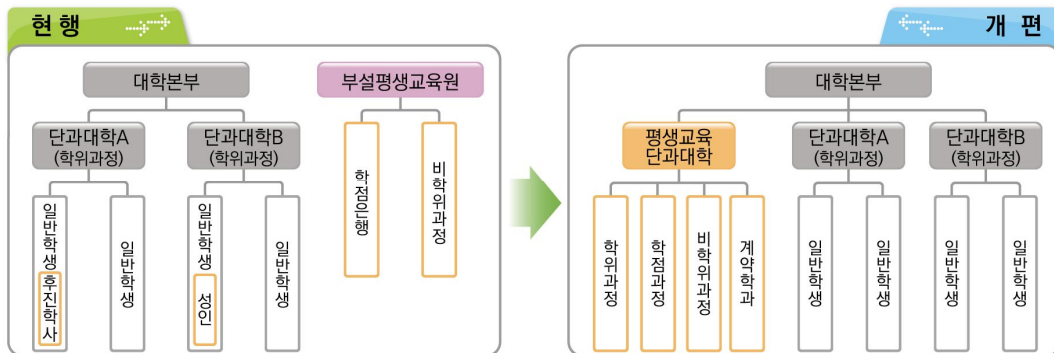
- 능력중심사회는 ①산업현장의 기술·숙련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NCS)하면 ②이 기준에 맞게 **현장형 인력을 양성(교육·훈련)**하고 **정확히 평가(자격)**
- 기업은 스펙과 학벌이 아니라 ③**능력에 따라 인재를 채용, 승진**시키고 ④**근로자 스스로 꾸준한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사회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재직자 대상의 평생학습 강화
 - 성인학습자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 추진('16)
 - *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총 8개 이하 선정·지원('16), 학위과정 학생 모집('17)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 대학의 우수한 인력 등 자원 활용이 용이해 지고,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학 부설로 존재하던 평생교육원을 대학의 정규학사조직으로 편입
- 학위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학점과정, 또는 각종 성인학습과정(평가인정·자격과정 등)을 운영
- 후진학자·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이들을 위한 학력보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참여를 통한 산업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e-learning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확대

* 'e-koreatech' 홈페이지 무료 e-learning 콘텐츠 : ('15) 200개 → ('20) 600개

e-koreatech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강좌와 플랫폼을 개발·오픈 ('15.4, 고용부-한국기술교육대)
 - 온라인 가상장비를 구현하여 현장감 있는 실습환경 제공, 학습자가 강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 구현

» 공교육의 역량강화

- 교과과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융합인재 육성기반 조성
 - 미래 핵심역량* 연계, 핵심개념 중심 학습량 적정화 및 학생중심 교실 수업 개선 등을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정('18년부터 연차적 적용)
 - * 자기관리·의사소통·창의융합사고·정보처리·심미적 감성·공동체적 역량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123개소), '두드림학교'(1,034교) 운영 확대로 복합적 요인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제 구축('16~)
 -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교과별 학습부진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습결손 보충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16)
 - * 교사가 학생의 학습부진 여부 진단, 보정자료 제공, 학습이력 관리까지 통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13) 지속 추진으로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만족도 제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5천만원 내외) 지원
 - * 일반고 재정 지원 : 633억원('14) → 480억원('15)
-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및 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보장
-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 진로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 역량 개발·평가 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통합, 평가체계 개편

» 사교육 부담 경감

●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16),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6)을 통해 학교공부 만으로도 입시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

* 대학별 전형 → (대학) 영향평가 및 다음연도 전형 반영계획 수립 → (교육부) 대학별 영향평가 결과 분석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심사·의결 및 후속조치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률위반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법 시행('14.9) 이후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과도한 영어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201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 특목고 입학전형에 있어 사교육 유발요인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16)

● 학원비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안정화 추진

-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대학별 전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준수** 등을 통해 대학 진학 부담 완화

*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전형체계 표준화(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 전형방법을 수시 4개, 정시 2개로 축소(정원 내)

** 전형계획 수립 시, 대학이 준수할 기본사항은 2년 6개월 전(종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종전 1년 3개월 전) 발표

- '대학 입학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16), 맞춤형 대입전형정보, 대입 심층상담서비스 등 제공

* 전형정보 통합검색, 대입정보의 대학 간 비교분석, 전년도 대입 합불 정보 분석에 따른 심층적 대입상담 등 기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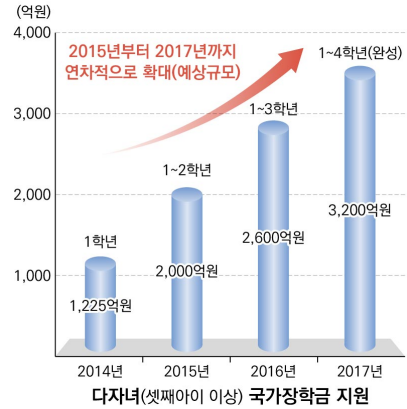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부담 경감('16~)

* ('14) 1학년 → ('15년) 1~2학년 → ('16) 1~3학년 → ('17) 1~4학년

다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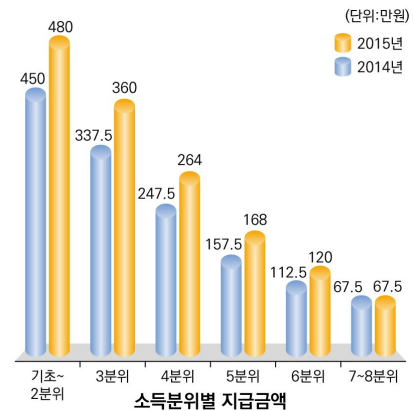
-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학년도 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대상) '14년 이후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단, '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단, 기초~2분위는 480만원 지원)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16~)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 정부장학금지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
 - * 정부(3.9조원) + 대학(3.1조원) = 7조원('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최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
 - 최대 지원액 : 480만원
 -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만원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향

- 1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혁
 - 눈치 보지 않고 일·가정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일·가정양립 실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 장시간 근로의 개선 추진
- 2 중소기업, 비정규직 남성 등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확충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 3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
 -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 육아기 단축근로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안 논의 추진

(1)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현황

- » 그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확충을 통해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
- 다만, 일부 근로현장에서는 아직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마음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 ▲(300인 이상) 63.1%
▲(100~299인) 55.2% ▲(10~99인) 44.0% ▲(5~9인) 42.6%
- 중소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일·가정양립 제도 사용이 어려운 여건
 - *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 (고용보험 가입자 천명당, '14) 300인 미만 4.6명 vs 300인 이상 11.2명
- 비정규직도 고용의 불안정성 등 고용형태의 특성상 사업주의 자발적인 허락이 없으면 육아휴직 사용이 곤란한 상황
 - * 근로유형별 육아휴직 제공 사업체 비율(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12) ▲(정규직) 여성 100%, 남성 12.2% ▲(비정규직) 여성 15.5%, 남성 1.8%

»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관행은 여전(OECD 중 3위)

- * 연 근로시간: ('05)2,341→('10)2,120→('11)2,116→('12)2,092→('13)2,071→('14)2,057
- * 연구학자 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의 ‘문화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 최근 일본도 기업의 장시간 근로·야근문화 개선에 집중

추진계획

»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육아휴직제 확산('16)
 - 출산휴가신청서에 육아휴직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 되도록 한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서식 개발·보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개시일에 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17)

»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근로자의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16~)
 - 자동경보시스템 구축*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출산·육아휴직기간 중 부당하고 사업장을 수시 적발 및 처벌
 - * 출산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출산예정일 전후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근로감독관에게 자동 통지되어 조사

- 임신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여부 및 퇴사여부 등이 모니터링되고 있음을 사업주에 사전 안내·계도함으로써 제도의 활용도 제고
 - *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임신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전반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공

- 사업장별 모성보호 근로감독체계를 출산근로자 개인별 근로감독체계로 개편('16~)
 - 종전에는 사업장 기준으로 전반적 위법사항을 점검하는 체계였지만 향후 임신·출산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사업장의 보호조치 등 점검·관리 실시
- 일·가정양립 취약업종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복귀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16~)
 - 육아휴직 사용률 및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5대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지역별 일·가정양립 협의체** 구성
 - * (예시) 출판업, 병원업, 유통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 ** 지방고용노동청, 자치단체, 업종별 노사단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평등상담실 등으로 구성·운영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지도 및 정시퇴근문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취업규칙 반영을 위한 노사정 합동 캠페인 전개
 - 사업장별 제1호 사용자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취약업종 내 사업장별 출산근로자 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저조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 공공부문 전사업장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7) 및 가족친화인증제 참여기업·기관 확대로 가족친화 기업문화 정착
 - * 가족친화인증 사업장 수 ('14) 956개 → ('20) 2,500개
- 「일·가정양립 캠페인」을 대폭 확산하여 기업과 사회의 일·가정양립 친화적 문화 확산('16~)
 - * 「일·가정양립 캠페인」('14.2월~) : 지나친 일 중심의 고용문화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
 - * 캠페인 목표(참여기업): ('15) 291개 → ('20) 2천개 → ('30)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
 - 일·가정양립 제도·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및 일·가정양립 실천 유도('16~)

해외 “Work-Life Balance(WLB, 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 사례

- 영국 : 블레어 정부('00~'07)는 여성고용 확대와 창의인재 관리를 위해 캠페인 실시, 여성고용률 상승(2%p) 및 창조산업 성장(연 7%)
- 일본 : '07년 저출산 및 장기불황 타파를 위해 수상 직속 캠페인 추진조직 설치 및 범국민 일·가정양립 헌장 발표, 사업주 행동계획 공표 촉진

●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16)

- 임신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출산휴가 신청 및 휴가 복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사항,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기준·절차·Q&A, 표준 취업규칙 등 제공

➤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사정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 개선** 추진('15)

*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14) 2,057시간 → ('20) 1,800시간대

**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특례업종 축소(26→10개)

- 장시간근로 개선·시간제일자리창출 등 관련 컨설팅을 통합('16)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진단 및 분야별 전문컨설팅 등 성과 제고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직무·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16~)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선도('16~)

* 직전 3년 평균실적 기준으로 부처 연간 초과근무 총량 설정, 일정 수준 (10~30%)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 관리

●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환경 조성 지원

-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칭) 일·가정양립 지원사업’ 신설('16)
- 재택근무가 용이한 직군·직종*을 발굴하여 직종별 재택근무모델 마련 및 직종별 우수사례를 포함하는 도입 매뉴얼 보급·확산('16~)
- * (예시) 콜센터,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17)

(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현황

» 취업모의 95.6%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미흡

* 기혼여성 취업여성의 사업체 분포('13, 통계청): 300인 미만 사업체(95.6%), 300인 이상 사업체(4.4%)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시급

〈유자녀 취업여성 (25~39세)의 일·가정양립 제도 수요-공급 일치도〉

(단위 : %, 명)

가장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69.5	46.9	16.9	17.6	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과 사업주의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휴가휴직 사용이 저해되는 경향

*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재(37.6%)', '대체인력 채용(31.3%)'을 육아휴직에 따른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음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4)

» 맞벌이 보편화에도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필요

*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 : 남 0.7시간 vs 여 3.3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14.10)하였으나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로 사용자(부 또는 모)의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액 100→150만원)까지 상향 지급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소득감소	직장내 경쟁력 저하	동료들의 업무부담	부정적 시선	직장 복귀	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추진계획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육아휴직이 정착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17)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만원 → 월 30만원)
-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 를 신설해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2배 인상('17)

* 사업장별로 남녀 각각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

〈사업주 지원금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
대기업	월 5만원(천명 이상), 월 10만원(천명 미만) (최대 60 / 120만원)	축소 또는 폐지
중소기업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여성〉 월 20만원 (현행유지)
		〈남성·비정규직〉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1호 인센티브〉 월 40만원 (최대 480만원)

● (대체인력 지원) 지원금 중심에서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센터의 허브기능 강화를 통해 새일센터-대체인력뱅크를 아우르는 전국단위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 구직-구인 정보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간 상호 연계 취업알선을 강화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확대('15년 1천명 → '20년 6천명)

* 취업실적: ('14) 대체인력뱅크 418명 → ('15.10) 981명(고용센터 + 대체인력뱅크)
↳ 이 중 105명이 연계 취업

- 고용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여 지역별로 대체인력 구인-구직 매칭 현황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간 연계 서비스 강화

* 구인 수요 공동 발굴,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 모니터링 및 협력과제·사업 발굴·지원

- 대체인력뱅크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입주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15년 2곳 배치 → 매년 2곳씩 확대 배치)

- 워크넷, e-새일시스템, 대체인력뱅크의 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구인-구직 Pool**을 구축·확충
 -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사업장 정보 공유**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 수요 발굴 및 기존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구직Pool 확충
 - **지역·직무·자격별로 대체인력 DB**를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적시 매칭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14년 89개 → ’20년 200개 설치)

- 대·중소기업 상생형, 자치단체 협업형, 대학, 산업단지 등 **다양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모델을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보육 수요 충족
- 대상기업 발굴·상담·홍보 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인프라(직장보육지원센터) 확대**(’15년 3개소 → ’17년 5개소)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 우선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짧은 근로계약기간이라도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 연계를 통한 사업장 계도·점검 및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16~)
-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재고용도 패키지 지원**
 - 사업주에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고용형태별로 차등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상**(20 → 30만원, ’17)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을 비정규직 육아휴직 사업장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하여 패키지 지원 실시(☞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 재고용 지원금으로 최대 1,080만원 수령 가능)
 - * 육아휴직기간 중 근무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시 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1년 이상 유기계약시 6개월 월 40만원)

»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 (인센티브)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1 → 3개월로 확대(’16)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통상임금의 40→100%, 월 상한액 100→150만원)
 - ’16년 제도 개선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보고 지원 확대 검토(’18~)

* 남성 육아휴직비율 목표: ('15) 5.5% → ('20) 15% → ('30) 25%

- (공공·대기업 선도) 공공부문·대기업에서 우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천 여건 조성('16)
 - 정부 업무 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반영
 -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협약식 체결 등을 통해 선도적 역할 유도

주요국가의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은 총 16개월로 이중 2개월은 양 부모가 의무 사용 (전기간 분할 사용시 양성평등보너스) 급여수준은 13개월은 임금의 80%, 3개월은 정액급여 지급
- (독일) 육아휴직 14개월로 반드시 2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 안한 다른 부모가 사용, 아버지가 2개월 사용하면 2개월 추가 부여
 - ☞ '06년 3%에서 '13년 32%로 육아휴직 신청 남성 비율이 증가
- (일본) 14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 2개월 이상 할당, 휴직급여는 임금의 50%

(3)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현 황

-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30시간)이 가능하나 **이용자 수는 극히 적은 상황**(육아휴직자 대비 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 437명 → ('13) 736명 → ('14) 1,116명

- ▶ **현행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낮은 임금대체율로 인한 이용 기피 발생**

* '13년 여성취업자 1,062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13만명에 불과(48.3%)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수준

-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인식도 바뀌는 상황에서 **현 제도 유지시 현장의 불만,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배율은 '13년 기준 0.44로 법정수준인 1.5~2에 크게 미달

추진계획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후 복귀시 직장적응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 * (주요 내용) 일·가정양립을 위한 코칭, 네트워킹 및 대인관계 형성, 기업내 조직문화 적응, 직장생활과 병행을 위한 보육·육아 정보 등 제공
- (재직자 직업훈련) 재직자 직업훈련과정에 직장복귀 지원 교육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휴직자의 직장적응을 위한 훈련시 **훈련비용 지원('16)**
 -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표준프로그램 안내·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제도적 여건 조성) 육아휴직기간 중 직장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단시간 근무 등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16)
 - *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 중 주 15시간 근무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휴직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급여가 감액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휴직 대신 경력유지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간(1→2년) 및 분할사용횟수(2→3회) 확대('16)**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 예시

육아휴직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12개월		단축근무 12개월	
〈 기존 〉		〈 연장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단축전 근무시간(전일근무)에 따른 **근속기간 인정(호봉·승진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16)
 - * 현행 육아휴직은 전일 근무 기준으로 근속기간 인정하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근속기간을 인정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어서 육아휴직에 비해 불리

- 근로시간 단축방식 및 임금·부가급여 지급방법 등 기업별 컨설팅, ‘대체인력뱅크’의 시간제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실천여건 확충(’1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16)하여 제도 접근성을 제고

»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 등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16~)
 - 근로자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 구축
 - * 자녀보육, 가족돌봄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홍보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종료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 및 패키지 지원 실시
 -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발굴 및 민간으로 확산 추진
 - * 출연연(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우수사례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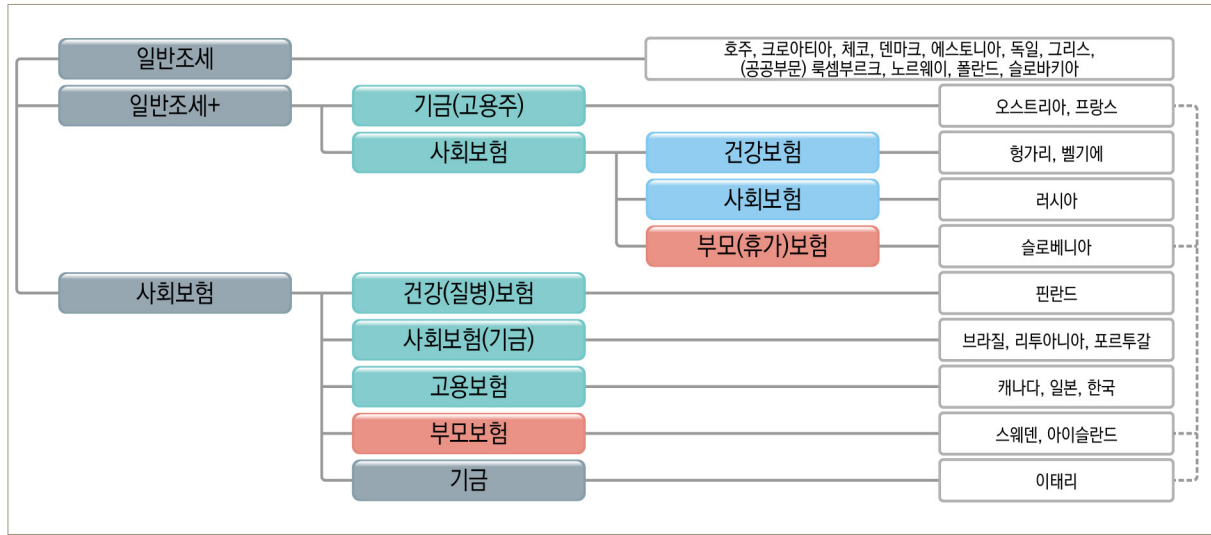
장기 과제(2030)

-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전일제 →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청구권을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로 부여하는 방안 검토
 - * (독일) 근로시간단축권은 있으나 시간제→전일제로의 복귀가 사업주의 배려의무로 규정 (네덜란드) 근로시간조정권이 규정되어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이 모두 인정 (영국) 근로시간 단축권은 인정되나 전일제로 복귀 권리는 없음
 - 정부 지원이 아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연스러운 직장문화로 정착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 및 이용 활성화
 - 육아사유로 한정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연장한 후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으로 발전·확대

»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낮은 임금대체율 등 출산휴가·육아 휴직제도 보완을 위해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및 공론화 추진(’16~)
 - * i) 적정 임금대체율-휴직기간 재설정, ii) 중소기업·비정규직 추가 지원, iii)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재원 검토 등 연구 병행

〈 OECD 각국의 부모휴가(육아휴직) 자원 구조 〉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기본 방향

-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사 소득보장체계 강화
 - 건강·여가·사회참여·안전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 생산인구 감소 대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방안 모색
 - 고령친화산업, 인구다운사이징 위기 대응 등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개개인이 공적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 확립
 -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확충하고 노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성·안정성 강화 등 내실화
 - 고령자의 안전자산 편중으로 인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농지연금 등을 활성화
 - 건강한 생활습관 (운동)에서 부터 만성질환·치매·정신건강 예방관리, 요양·돌봄, 호스피스를 아우르는 연속적 의료·돌봄 체계 구현
 -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령자가 여가·문화활동과 다양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
 - 고령자의 신체적·정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주거, 이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여성이 차별과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 고령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와 고용시스템 구현
 -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일치, 노인기준연령 재검토 등 고령자 고용·복지 재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기본 방향

- 외국인력 활용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되, 인구변동과 노동력 수급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시간적 틀을 설정, 사회통합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신성장동력으로 거론되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립
- 국방자원 부족, 교육인프라 과잉, 지속가능성 위기 지역 등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
- 대폭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단기적 운용 효율화 방안과 함께 구조개혁 논의 시작

과제 체계도

	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 • 자산 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돌봄부담경감 • 안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스템 개선 • 다문화 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시장 대응 •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건강 생활 보장 ▶고령자 문화·여가·사회 참여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고용 활성화 ▶고령자 고용기반 확대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인구다운사이징 대비체계 강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1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 방향

1 공적연금 강화

- 여성, 근로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 기초연금, 특수지역연금 등 공적연금 내실화

2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마케팅 홍보 강화를 통한 대상 대폭 확대
- 농지연금 이자율 개선 등을 통한 확산 추진

3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 정착 기반 구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 노후준비 여건 확충

- 장수리스크 대비 금융시스템 개선
-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확충

(1) 공적연금 강화

현 황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458만명), 1년 이상 **장기체납자**(112만명)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존재('15.7)

●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1,049만명)의 경우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제외 우려

* 적용제외자: 국민·지역연금을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 기초수급자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된 사람

- 노후소득 중 국민연금 의존도가 큰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일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노후빈곤 우려 증가

〈국민연금 가입현황〉

가입률 (계)	① 임금 수준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15.0%	60.7%	82.3%	92.1%	96.6%
68.9%	② 종사상 지위		③ 성 별		
	상용	임시·일용	남성	여성	
	96.9%	17.3%	74.1%	62.2%	

자료) 사회보험 가입실태(통계청), '14.12월

- »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구축되었으나, 실제 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필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대상 및 당연가입 여부	가입자수(가입률)	수급자 수(수급률)
개인연금	모든 국민, 임의가입	850만명 (20~60세 인구 30%)	-
퇴직연금	근로소득자 대상, 임의가입 (현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중 선택→ (‘16~)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	438만명 (15~64세 인구 12%)	1,611명 (55세 이상 퇴직자의 4.8%)
국민연금	18~60세 국민, 당연가입	2,113만명 (18~60세 인구 65%)	295만명 (60세 이상의 30%)
(기초연금)	별도 가입없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	-	435만명 (65세 이상의 67%)
공무원연금	공무원 대상, 당연가입	107만명	36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퇴직연금은 '14/'15년기준, 개인연금 '12년, 공무원연금은 '13년 기준

추진계획

» 1인 1국민연금 확립

●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

- 경력단절 여성 등 적용제외된 기간의 추후납부 허용('16)
- 성실 납부한 적용제외자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16)

〈 장애·유족연금 개선방안 〉

구분		현행	개정안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발생시기	가입 중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8~60세 발생 장애
	보험료 납부요건	보험료 고지(소득신고) 기간의 보험료 2/3 이상 납부	가입대상기간 중 1/3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료 10년 납부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보험료 납부요건은 장애연금과 동일)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자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자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발생 시, 노령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로 상한
(현재는 20% 추가 지급 중)
- 이혼 시 받게되는 분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3→5년) 연장, 이혼 시점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先청구 제도 도입(본청구는 6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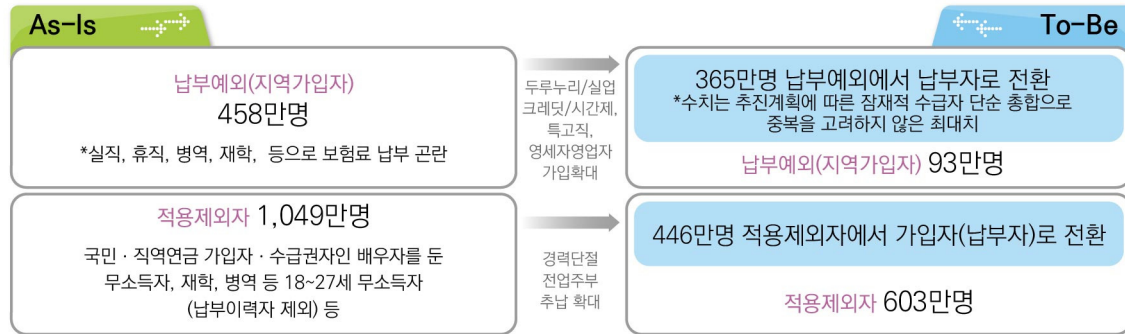
● 일하는 저소득층에 내 연금 만들어 주기

-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 국세청 소득, EITC 수급자 정보와 국민연금 간 자료연계 내실화 및 확대('16)
 - 복수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 허용
(현행: 사용자 동의 필수 ⇒ 개선: 본인희망시 사업장 당연가입)
- 저소득근로자, 실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내실화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 특수고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 특수고용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유인 제고(단기)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중장기)
- 영세자영업자 납부예외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자로 전환 적극 유도
 -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속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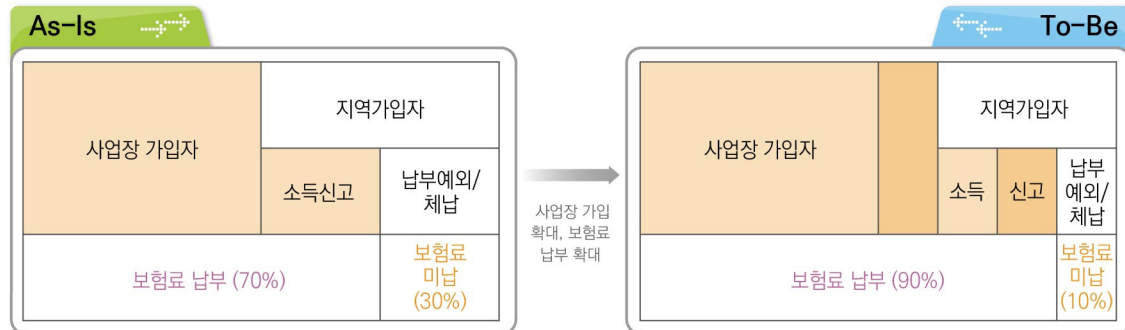
● 비정형 근로자(단시간, 일용, 특고직 등)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에 따른 변화

1 사각지대 변화



2 가입자 유형별 변화



* 표의 수치는 목표치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 이혼 등으로 인한 빈곤화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에만 인정되던 **연금분할 청구권**을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까지 확대('16)

* 공무원 연금, '16.1.1 시행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 (근거법) 국민연금법 제64조
- (내용)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이혼 시 부부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제도(1999.1월부터 시행)
 - 결혼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의 50%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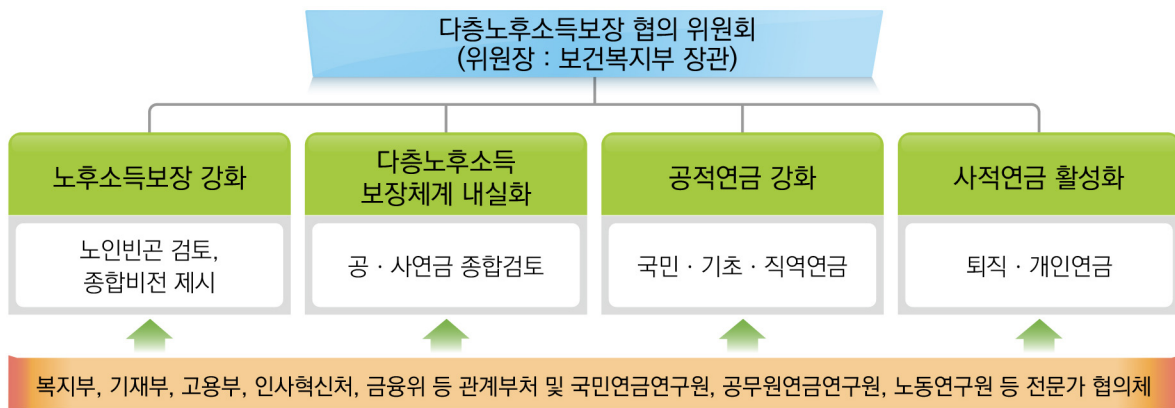
▶ 기초연금 내실화

-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신청 지원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수급자 확대('16~)
 -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기초연금 설명 및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확대('16~)
- 매 5년마다 수급권자 생활수준, 물가변동률, A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18), 그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 조정('19)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사연금 활성화를 논의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구성·운영('16)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구성(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사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심층 실태 조사」 실시('16~)
 - 각 부처, 각 연구기관에서 별개로 실시되는 노후소득보장 패널, 고령자 패널, 연금패널 등을 분석·통합하여 하나의 심층 실태조사 체계 구축
 - 연금 뿐 아니라, 의료·주거, 자산 유동화, 공공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전체적 비전 제시
-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활성화 로드맵 마련('16)

* 노인인구 중 공·사연금 수급자 : ('15) 30% → ('17) 35% → ('20) 40%

(2)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현 황

- 고령세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방안으로 고령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 필요

주택연금·농지연금

-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국가 보증)
-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주택연금 현황

-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7,127건(2007.7~2015.9)
- 연금이용자의 월평균 수입은 168만원(이중 주택연금의 비중이 64.5%)
- 주택연금이용자의 보유자산은 평균 3.5억원, 85.7%가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2014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 농지연금은 '11년에 도입,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나 보다 활성화할 필요

* 가입건수(누계) : ('12) 2,202건 → ('13) 2,927건 → ('14) 3,963건 → ('15) 5,143건

* '15.11월말 기준, 전년대비 신규가입 19% 증가 : ('14.11) 992건 → ('15.11) 1,180건

농지연금 제도개선 현황

- ('14년) 이자율 인하(4→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 ('15년)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先 대납 後 징수), 이자율 추가인하(3→2.5%), 담보농지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3ha) 폐지

추진계획

▶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 주택연금 가입자수 : ('15) 2.8만건 → ('20) 14.1만건 → ('25) 33.7만건

●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연금의 상품성 제고

-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시 가입가능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16)
-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폐지하되, 인정 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하여 가입대상 확대 및 주택연금계정의 건전성 유지
- 고령층 주거형태 다양화에 따라 관련 연구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 검토

* 현재 주택,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만 포함

● 주택연금 마케팅 홍보 강화

- 금융기관 은퇴자를 활용한 ‘(가칭)주택연금 플래너’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주택연금 판매 제고
- 금융기관 정기간행물, 사보 등으로 변동금리 대출자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전환 캠페인 실시
- 지자체 관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주택금융공사 ‘은퇴금융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제도 소개
- 주택 상속의식 개선 등을 위한 고령자 대상 교육 활성화 추진

주택연금 수급사례

- 국민연금 20년 가입 3억원 주택 소유자(65세) 주택연금 가입시
→ 국민연금 88만원 + 주택연금 82만원 = 170만원 평생 수급

▶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 농지연금 가입자 수 확대 목표 : ('14) 4천건 → ('20) 20천건 → ('25) 50천건

-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율 인하(2.5→2%), 월 지급금 증대를 위해 담보농지의 감정 평가율 상향 등 제도 개선 검토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 수요자 대상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을 통해 상속의식 개선 및 가입률 제고

(3)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현 황

» 국내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6월말 기준 16.5%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 상황

* 300인 이상 대기업 77.0%, 10인 미만 소기업 11.9%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 계
11.9%	39.1%	46.0%	58.0%	77.0%	16.5%

자료 금융감독원

»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율이 낮고, 서민·취약계층은 가입여력이 적어 노후 리스크에 노출

* 개인연금 가입률: 영국 18.1%, 미국 24.7%, 독일 35.2%, 한국 12.2% (OECD, '14)

* 연금저축 계약유지율(10차년 기준) : 57.5% (금융위원회, 2015.6월)

추진계획

»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반 구축

*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 ('15) 50.6% → ('20) 60.6%

- 실적배당형, 최저이율보증형, 체증·체감형 등 퇴직연금 운영 및 지급방식 다양화('16)

● IRP(개인형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17)

- 현행 특정사유 중도인출 규정을 사유에 관계없이 일부인출 가능 규정으로 개선하여 IRP 유지율 제고

- IRP 이전 금액(150만원 이상) 상향조정
 - * 번거로운 절차에 대한 가입자 불만 및 사업자 부담 가중
 - * 의무이전 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소액 생활자금 필요한 근로자 수요에 부응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IRP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
- 퇴직금도 IRP로 이전 의무화 추진
 - *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시 IRP로 의무이전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 IRP간 계좌이동 간소화
 - *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려는 기관 한번만 방문해 계좌이동 가능토록 개선(현재는 신규·기존 기관 모두 방문)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근거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 개정)
 - 근로자가 조기 퇴직 또는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적립·운용하여 향후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IRA*를 확대·개편한 퇴직급여
 - * IRA(개인퇴직계좌) : 퇴직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만드는 저축계좌
- (내용) 일시금을 수령한 퇴직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이직 시마다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한. 단,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IRP개설 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음

- 중증·만성질환자*, 장수 고령층(예: 85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연금 상품 개발 활성화('16)

*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 개발

(4) 노후 준비 여건 확충

현 황

- ▶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층의 노후대비 인식은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노후준비 방법 (50세 이상 가구주)〉

(단위 : %)

	준비하고 있음	준비 방법							준비하지 않음
		소계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¹⁾	
50~59세	80.2	100.0	65.8	9.5	4.2	15.7	4.2	0.5	19.8
60세 이상	51.6	100.0	53.2	6.3	4.8	21.3	12.2	2.2	48.4

주 1) '주식, 채권 등' 포함 자료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노후준비를 빨리 시작할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으나,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를 실천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

- * 30대 초반부터 노후준비를 한 경우, 평균적으로 노후필요자금의 60% 이상을 준비하나 40대 후반 이후 노후준비를 시작한 경우, 노후필요자금의 50%도 준비 곤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 *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김동겸 외, 2013)

» 장수리스크 대비 금융시스템 개선,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 노후준비가 가능한 여건 조성 필요

추진계획

»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 사적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다양화*, 독립투자자문업(IFA) 등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17)
 - * (예) 개인·퇴직연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가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의 재량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투자일임, 디폴트옵션 등 도입 검토
- 연금정보 DB 및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16) 등 연금정보제공 강화
- 공적연금의 수익률 제고, 자산운용 다변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장수리스크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 * (예) 금융기관 및 주요 공적연금 운용관계자,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운영하는 정기 협의 채널을 구성·협의

» 노후준비지원 확대

-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코칭 해주는 노후준비서비스 확대('16~)
 - *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시행('15.12)

노후준비서비스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서비스

* (건강) 보건소, 건보공단, (일자리) 노인인력개발원, 고용센터 등

-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상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기초 지자체 단위별로 설치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인근 지역센터 직원이 직장·지역 축제 등을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노후준비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16)
 -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노후준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노후준비위원회' 설치·운영
 - * 관계부처(기재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금융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노후준비지원정책의 중장기 목표설정,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추진 방향

1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 만성질환, 낙상·약화사고, 정신건강 등 질병예방·관리 강화
-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의료전달체계 내실화
- 치매, 장기요양,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부담 경감

2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고령자 문화·여가 기회 확대
-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공익활동 내실화
- 세대간 이해 증진 기회 확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3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여건 강화
- 노인 학대 예방, 시설 안전, 독거노인 돌봄 등 안심생활 지원 확대
-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1)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현 황

- »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프로그램과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
- »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 * '13년 고혈압 조절률은 42.5%, 당뇨병 조절률은 22.1%에 불과
- * 조절 실패로 인한 뇌졸중 등 중증화로 인한 입원환자가 OECD 평균의 2배
- * WHO, OECD, UN 등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조언

»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낙상, 약물 오남용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 노인의 25.1% 낙상 경험, 78.8%는 낙상 발생 우려(노인실태조사. 2014)
- 노인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복합질환으로 인한 의약품 다제복용과 노인의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약물 유해반응 발생 가능성 높음

- 한 달 동안 외래 의약품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의약품 성분수 6.72개, 매일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수 평균 4.02개
-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61.7%가 5개 이상의 의약품 성분 처방, 9.6%는 10개 이상(2011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심층분석)

» 노인자살률*(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55.5명)이 전체 자살률(27.3명)보다 2배 이상, OECD 평균의 3배('14년 기준)로 사회경제적 대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 시급

* OECD 평균 18.8명, 프랑스 27.1명, 일본 27.1명, 미국 14.3명, 핀란드 16.2명, 영국 5.9명

»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간 과다 경쟁,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 미흡,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

장기요양보험 관련 현황

-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14년 약 42.5만명(노인인구의 6.6% 규모)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기관 약 2만개, 입소시설 4천8백여개소 개설 중
- 장기요양인력은 현재 총 32.3만여명 종사, 그 중 요양보호사는 27.2만명(84.3%) 차지

» 치매는 발병 후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발병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관리가 중요**

* 운동부족, 영양결핍, 음주, 흡연, 뇌손상, 만성질환, 낮은 교육수준 등

- 그러나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호소하는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부담은 개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치매특별등급 이외의 치매환자**는 치매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혼재되어 동일한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죽음의 질 수준은 선진국 40개국 중 32위***로 낮은 편이나 **국내 말기환자의 돌봄 체계는 말기암환자 중심으로 발전 중**

* ('10년 이코노미스트 발표기준) 말기돌봄 의료자원 여건(20%), 말기돌봄 의료의 가용성(25%), 말기돌봄의 비용(15%), 말기돌봄 의료의 질(40%)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말기 암 환자 현황('14) : 10,559명

- 비암성 말기환자·가족을 포함해 전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보편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정책 시급**

추진계획

» **고령자 운동 활성화**

- '건강마일리지' *, '건강 백세운동교실' ** 활성화

* 운동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에 따른 상품(3만원)지급, 현재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중

** 경로당 등에 강사가 방문, 노인강습·건강교육·신체기능 측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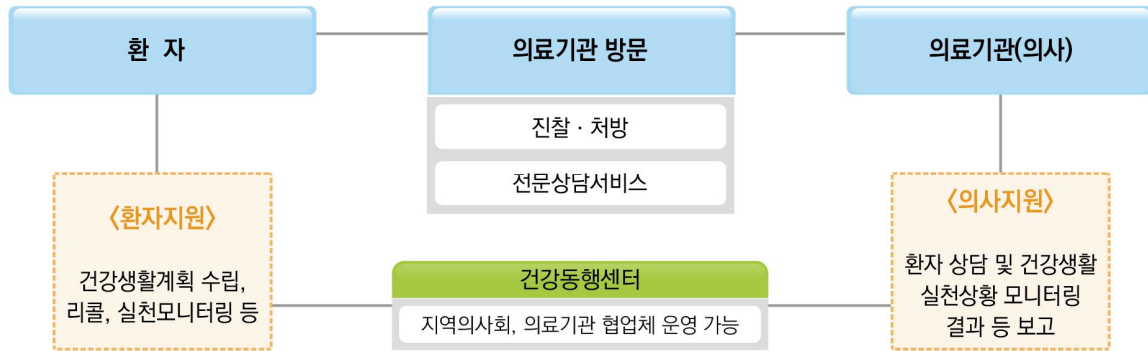
- 노인시설 운동용품 바우처, 고령자 체력인증센터 확대, 공공체육시설 고령친화적 시설개선 확대 등 고령자 운동 여건 확충('16~)

»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평가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 모형 개발**('17)

*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한 동네 의원의 체계적 교육·상담 프로그램 제공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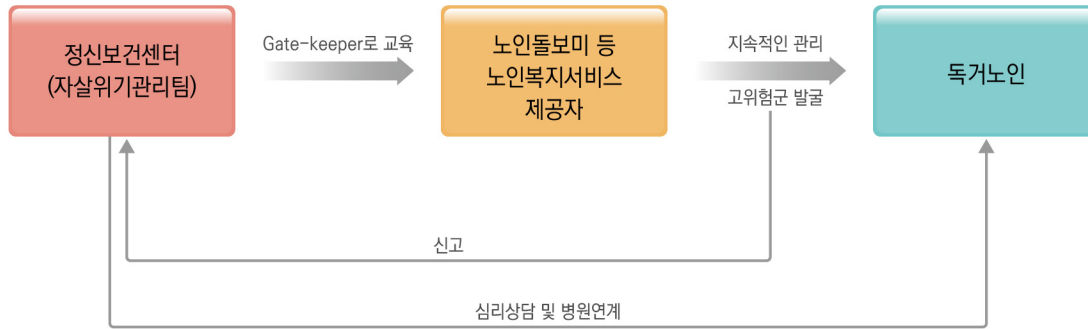
- **낙상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확산, 교육·홍보 강화('16)**
- **약물 오남용 예방체계 구축('16~)**
 - 의약품 적정 사용 평가(DUR)를 활용하여, 한국형 '노인대상 주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사용 안전성 제고
 - *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정보 : 병용금지, 연령금지, 임부금지
 - 고령층 특화 맞춤형 복약정보 제공을 통해 치료효과 제고 및 의약품 적정사용 도모
 - * 고령층 대상의 약력 관리, 복약 설명(방법, 효과), 의약품의 보관, 부작용, 남은 약의 관리 등 약사의 효율적인 복약지도에 필요한 「복약지도 실무지침」 마련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정책 확대('16)**

»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 **치매관리·독거노인돌봄사업 등과 연계, 암 등 중증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자 대상 노인의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17)**
 - 정신건강문제 발견 노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조기 개입
-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사업(노인생명지킴이 마을) 시범사업 확대('16~)**
 -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노인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 자살고위험군 노인의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 * '15년 농촌 4개(양구, 장성, 달성, 가평), 도시 3개(수원, 안산, 경기 광주)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중 정신건강 문제 발견 노인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연계 노인자살예방 체계(안)〉



- 지역사회 마을이장, 마을 부녀회장 등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마을단위의 자살위기 발견·의뢰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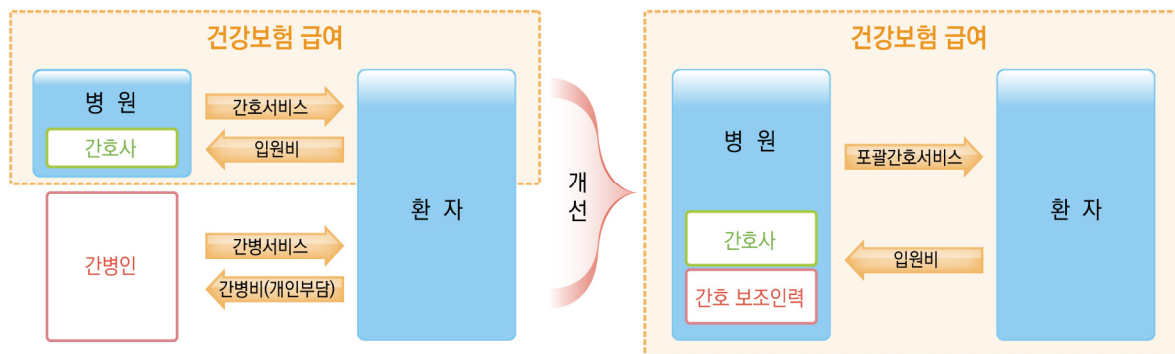
»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16)
 - * ('15) 70세 이상 → ('16) 65세 이상, 약 10만명 추가 혜택 예상
- 저소득 노인 대상 노인무릎수술비(인공관절) 지원 확대
 - * 저소득 노인 대상 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복지부-노인회 공동 지원
 - * ('15) 1,850명 → ('16) 2,600명

»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 간병으로 인한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 부담, 환자 안전·감염 우려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지속 확대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개념도〉



- 향후 5년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입원시 간병부담 대폭 경감

* 최근 1년내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

▶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 촉탁의 제도 내실화를 통한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16)

- 입소자의 만성질환 진료,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 보수를 적정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교육 및 직무매뉴얼 제작·보급

- 장기요양기관 질 관리 강화

- 운영자·요양보호사 대상 보수·직무교육 이수 의무화('16)

- 부적정 기관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연장(1년→3년) 근거 마련('16)

▶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치매 예방체계 강화

- 치매예방수칙에 대한 인식 제고, 치매예방운동 확산('16~)

* 치매관련 종사자 직역교육에 반영, 경로당·노인복지관·건보공단 등 홍보·확산

- 치매정보, 돌봄방법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도 가능한 치매 파트너스 확대

* ('15) 10만명 → ('20) 50만명

- 치매고위험군 판정시 비급여 치매검사 급여화('17), 치매고위험군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16)

- 치매유병률 조사('16),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17~), 치매예방 연구* 강화

* 역학조사, 치매실태조사, 지역사회 노인코호트 기반 치매연구 지원 등

- 지역사회내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체계 강화

- 사회복지시설 병설 유도 등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 ('14) 1,687개소 → ('18) 2,459개소 → ('20) 3,000개소 확대 목표

● **치매전문시설 확충**

-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치매노인의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장기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확대 방안 마련
- * '생활의 장'으로서의 시설을 소규모(10인 내외) 생활단위(unit)를 중심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생활단위와 케어단위를 일치시키는 시설형태
- 내년부터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 *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 인지기능저하 외 우울감·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과 배회·폭력성 등 행동증상, 망상·환각 등

»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 「완화의료법」 제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5개년 계획 수립('16)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추진
 - *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13) : 미국medicare 43%, 대만 30%, 우리나라 12.7%
-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를 지속 확대하여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
 - *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 : ('14) 893개 → ('20) 1,4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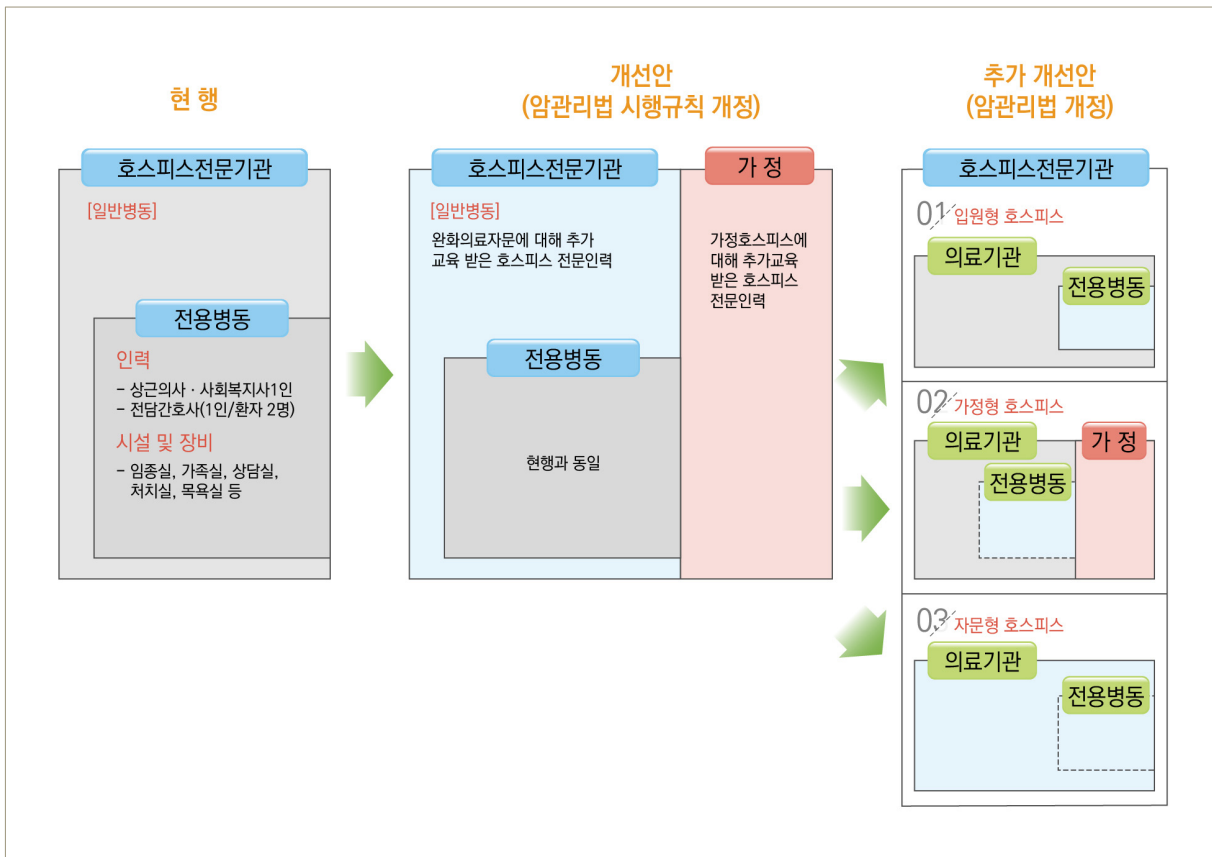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말기 암 환자는 평균 4개 이상 주요증상 보유)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환자와 희망하는 치료에 대한 사전 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제도화 등 제공형태 다양화

- 1단계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에 기반한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구축
- 2단계로 「암관리법」을 개정하여 현행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형태로 다양화('16~)

〈 호스피스 제공형태의 다양화 방향 〉



● 암 이외의 질환(말기 만성질환 등)으로 호스피스 확대('17)

- 비암성 환자는 말기암환자와는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접근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황

- '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총 진료비 280,000~370,000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

(2)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현황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

- * 지난 1년간 TV시청, 여행, 운동 등을 제외한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27.0%
- *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 : 65~74세 28.4%, 75~84세 26.3%, 85세 이상은 17.2%

-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적인 노인여가를 위해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필요

» 고령자의 문화생활이 영화, 도서 중심으로 제한적, 전시·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 확대 필요

〈 2014년 60세 이상 노인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영역 〉

구분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 일반	문화 체험	숙박	철도	항공/여객등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	스포츠	합계
승인건수 (건)	190,056	14,593	197,030	4,696	1,163	80,658	1,762	3,792	13,356	13,085	19,235	3,789	3,978	269	550,970
비율 (%)	34.6	2.7	35.8	0.9	0.2	14.7	0.4	0.7	2.5	2.4	3.5	0.7	0.8	0.1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양적 확충은 지속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

- * 노인복지관 ('10) 259개 → ('15) 321개, 경로당 ('10) 60,737개 → ('15) 64,000여개
- 노인복지관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낙인효과 존재
- 경로당은 지역내 접근성과 인지율이 높으나 친목도모나 휴식의 공간으로만 이용되는 경향

» 은퇴 후 역할 상실, 고독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참여, 세대간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

- 우리나라 고령자 자원봉사는 사회복지·환경보호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단순노력봉사 성격이 대부분이며 참여율도 저조

*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자원봉사 활동 영역 : 사회복지 56.8%, 환경보호 18.2%, 봉사의 성격 : 단순노력봉사 77.0%, 취미(교육)등으로 습득한 준전문 봉사활동이 14.9%, 직업경력·자격증에 근거한 전문봉사활동은 8.0%

*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13) : 英 41%, 獨 26%, 美 24.4%, 韓 6.2%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율〉

연령대	2003	2006	2009	2011	2013
전체	14.6	14.3	19.3	19.8	19.9
15~29세	52.4	59.5	79.8	77.7	80.1
20~29세	10.3	8.3	13.9	13.2	13.7
30~39세	11.6	10.2	13.6	11.2	11.2
40~49세	14.2	13.9	18.6	17.0	17.3
50~59세	12.2	12.4	15.5	14.6	14.5
60세 이상	6.7	6.5	7.0	7.2	7.8
65세 이상	5.6	5.3	5.3	5.5	6.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3, 2006, 2009, 2011, 2013 재구성)

▶ 노인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필요

- 은퇴 후 사회활동 지속시, 사회관계 회복, 우울 등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 의료비 절감, 가구소득 증가에 효과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미국(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일본(실버인재은행) 등도 고령자들에게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 중

▶ 그간 노인교육은 운동·여가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노년기 인생설계, 노인의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의 교육에는 한계

-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책임지는 삶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등 강화 필요

▶ 국민의 평생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다원화되고 있으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

* 평생학습참여율 : ('08) 26.4%→('12) 35.6%, OECD 평균 : 40.4%

*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은 25~34세 43.5%, 55세~64세 29.2%('14)

추진계획

»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16~)**
 -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다양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속적 다양화 추진
-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경험 기회 확대**
 - 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예술강사' 지원 등
 - * 어르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혜자 약 1.4만명('15) → 청·장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최소 100만명('20) 수혜 목표
 - 여가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 기업과 협력 강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 활성화**
 - 고령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년 5만원) 발급
 - 격오지 및 문화사각지대 거주자(고령자) 카드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가맹점 확대

»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지원 방안 마련('16)**
 - 베이비부머(예비노인세대)·노인세대 또는 전세대가 아울러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
 - 여가활동을 통한 세대통합 및 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원
 - 노인맞춤형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발굴 지속 추진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과 연계 추진
 - 노인들에게 문화, 여가 활동을 통해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여가경력(leisure career)이 부족한 노인세대들이 새롭게 다양한 여가 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노인 맞춤형 여가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고령자 여가실태 조사 실시('16)**

▶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 노인 개인(건강상태, 사회참여도) 및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특성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모델 개발·확산('16~)
 - * 노인복지관 운영가이드 및 서비스 기준안 개발·보급연구('15.3~12)
 - 기존 노인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의 욕구 및 특성 차이를 반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 개발·적용
 - 노후준비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시니어클럽 등과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 대상자,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16)

▶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 소규모 단체 발굴·지원*, 공무원·전문직 은퇴자 참여 활성화, 기업의 은퇴자 연계 사회공헌 지원 강화 등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확산('16~)
 - * 활동비(월20만원, 8개월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클럽 구성요건을 현재는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참여고령자 자원봉사실적의 상시관리, 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을 위한 고령자 자원봉사 통합관리체계 구축('17)
- 일반인과 교류하는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통해 고령화시대 '활동하는 新노인상' 정립('16~)

▶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 공익활동 등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 제공
 - 고령노인 중 저소득자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 선발시 고령·저소득 가점 부여, 참여자 연령기준(현행 만 65세) 상향 등 검토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을 보살피는 **로로케어**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전국형 활동을 지속 확대('16~)
 - 놀이시설 안전모니터링, 전통생활풍속 재현 등 노인의 경륜과 지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익활동 프로그램 지속 개발
 - * 일자리 확대 : ('15) 34만개 → ('20) 59만개

- **현행 수행기관별 모집에서 지자체별 통합 모집으로 전환하고, 수행기관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선발 공정성 및 서비스 질 제고('16)**
 - 기초연금수급여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등 **참여자 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점검 강화**(연 2회 → 월 1회)

현행 노인 공익활동 지원 현황

- (공익활동) 민간취업이 곤란한 고령노인('14년 평균연령 73세) 중 저소득자가 老-老 케어(전국형), 학교급식 도우미(지역형) 등 공익활동에 참여(월 30~32시간)할 경우 9~12개월간 활동실비(중식비 등)로 월 20만원을 지원('15년 26.2만명)
 - 독거노인, 조손가구, 부부노인,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일상생활 지원(老-老케어)은 전국형으로 일괄 추진('15년 8만명)
 - 학교 CCTV관제, 보육시설 도우미, 장애인 돌봄 등 30개 표준활동 프로그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15년 16.2만명)
- (재능나눔) 자격·특기 등 재능이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10만원 미만 포함)이 취약노인 발굴·상담 등 노인 권익증진활동에 참여(월 10시간 이상)할 경우 6개월간 활동실비(중식비 등)로 월 20만원을 지원('15년 3.7만명)

»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으로 고령자 교육기반 강화**
 - *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14) 13.7% → ('17) 16% → ('20) 26%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16~)**
 - 어르신 IT 봉사단 활용한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으로 세대간 화합 등을 위한 노력 지속**
 - 노인이용(경로당·노인교실)·생활(양로시설·요양시설 등)시설과 거동불편 노인 또는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정보화 교육 실시**
 - * 인터넷·모바일(핸드폰 등)활용 등 기초과정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분야 등 실용과정 교육 제공
 - 노인 이용시설(경로당·마을회관 등) 방문을 통한 건강·여가프로그램 **교육 지원**으로 노인 삶의 활력을 부여
 - *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지원, 생활터전 건강서비스 지원(건강정책과) 등
 - 노인의 살아온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Well-dying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확대**
 - * 취약노인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임종노트작성 등을 통한 웰다잉 분위기 확산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문해 교육 확충 등 중졸 이하 저학력 성인계층 평생교육 강화
- 다문화·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을 대상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확충 으로 인생 이모작 지원('16~)
 - * (예) 실버케어전문가, 어린이집 재취업, 영아보육사 양성과정 등
-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의 실버세대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16~)
 - * 인문학 전공 (자기계발 및 교양), 지역사회 전공 (자원봉사활동 과정), 실버창업 전공 (은퇴후 재취업 및 창업) 등 분야별로 운영

▶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전체 시·도 확산 및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연계 추진('16~)
- 시군구-지역내 기업·대학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 확대
-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 *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복지시설 등을 활용, 평생교육 지원

(3) 세대간 이해 증진

현 황

-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청년실업과 베이비붐 세대 문제 등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세대갈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최근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은 과거의 이념적·정서적 갈등이 아니라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낸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 세대통합과 공존을 요구하는 다(多)세대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인식이 낮은 상황
- ▶ 산업사회로의 이행 및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부모 자녀간의 유대는 약해지고, 예와 효를 중시하는 미덕도 후퇴
 -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양 및 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효 문화 정립 필요

추진계획

»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의 날' 운영(연 1회이상)
 - * (학교) 학생은 가족이 정한 날은 체험학습의 날로 인정
(경제·사회단체) 회원사 및 직원 참여 유도위한 홍보 강화
- 고령자와 유·아동(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간 접촉·소통기회 확대('16)
 - 실버 문화·예술공연, 학교 앞 교통지도 및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대간 소통 강화('16~)
 - 초·중·고 학생 가정과 무연고 독거노인과의 1:1 결연 등을 통해 효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1·3세대가 함께 문화재·역사유적 탐방 등에 참여하여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세대공감콘서트 확대

»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 인성회복을 통한 효행·예절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 강화 및 밥상머리 교육 활성화
 - *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15. 147개교) 확대
-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발굴 포상,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효행장려 풍토 조성('16~)

(4)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현 황

- » 안정적 소득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고령자는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중요
-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주택 내 안전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 및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필요

- ▶ 고령자의 경우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 주거지원 내용에 따른 상담처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은 주거지원을 위한 상담 받기 곤란

추진계획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실버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여 '17년까지 총 1,300호 공급
 - * 민간 사회공헌기금, LH 기부금 출연, 지자체 매칭 등을 활용하여 현재 추진중인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협동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설치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식사·목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령층 전세임대)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호의 전세임대 신규 공급('16~)
 - 저소득 고령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장기간(최장 20년) 임대
 - *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노후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후 내가 위탁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독거노인 등에게 1천호 공급('16년)
 - *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8~20년

▶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 65세 이상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개량비용 지원 범위 (350~950만원)에서 고령자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설치 지원

〈 안전손잡이 〉



〈 단차제거 〉



- 장기적으로는 일반인 관점에서도 사용이 편리하면서 거부감이 적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에 반영 검토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고령자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금대출

-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 콜센터(전화)를 동시에 운영,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체계

- (마이홈포털)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털 구축
-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 (기존 28개 → 36개)하여 고령자 접근성 제고
- (마이홈 콜센터)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과 관련된 전화 상담이 LH, 국토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LH 콜센터로 통합

(5)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현 황

»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체계적 대응 미흡

- 학대피해노인은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는 등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팽배

* 노인학대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개인의 일이므로 42.5%,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22.0%, 창피해서 21.7%,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10.6% 등

●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조기 발견 미흡**

* 학대 지속 기간 : (1년 미만) 22.4%, (1년~5년) 34.7%, (5년 이상) 31.6%

● 넓은 관할 범위, 적은 인력(개소당 7~9명) 등으로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29개소, 시도당 1.7개소 vs (아동보호전문기관) 56개소, 시도당 3개소

● 노인학대자에 대해서도 징역·벌금 등 일회성 처벌 중심의 관리로 학대예방 교육 등을 통한 재학대 예방 노력 부족

▶ 최근 노인복지시설내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안전사고(낙상, 화재 등)* 다수 발생 및 학대 발생 증가

* (사례) 계단 출입문 개방으로 물탱크에 빠져 사망('15.3.), 요양원 2층 노모 추락사('15.1.)

* 시설내 학대 비율 ('05년) 2.3% → ('13년) 7.1%

▶ 황혼 이혼의 증가, 부양의식의 약화 등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생활을 하여 안전 등 위험 증가

*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 ('98) 89.9%→('06) 63.4%→('10) 36.0% (통계청 사회조사)

* 친구와 연 1~2회 또는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도시 7.4%, 농촌 0.9% (노인실태조사, '11)

▶ 인구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 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증대

● 노인 면허인구 및 노인 운전자 비율 증가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참고 :전체 면허소지자중 65세 이상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	26,402,364	27,251,153	28,263,317	28,848,040	29,544,245
고령자	1,299,913	1,451,437	1,658,560	1,869,155	2,078,855
점유율(%)	4.9	5.3	5.9	6.5	7.04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68.9%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비중: '10년 5.6%, '14년 9.1%

〈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건수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고령운전자	12,623	13,596	15,190	17,590	20,275
점유율(%)	5.6	6.1	6.8	8.2	9.1

▶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부진(지정률 9.1%)

* '14년 기준, 우선지정대상 7,672개소 중 697개소 지정

추진계획

▶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 학대예방을 위한 기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현장 대응 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검토
- 학대피해노인의 양로시설 입소 등 보호기반 강화
 - 단기보호, 심신 치유,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족 회복지원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강화
 - 재학대 위험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운영 활성화
-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전국 63천여개 경로당)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지원체계 강화
- 연령별, 대상자별 노인학대예방 맞춤형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 아동, 청·장년층, 노인 등의 연령별 교육자료, 홍보영상 등 개발·보급
 - 전국 노인 관련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및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예방의 날」 지정, 노인학대 신고의무 강화,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노력 및 처벌강화 등 추진

» 노인안심생활 지원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생활·이용시설의 안전설비 및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연 8시간) 실시 추진('16)
 - *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야간근무지침 마련 및 인력배치, 소방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등 추진
- 시설에서의 일상적, 사전·예방적 인권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인권 지킴이 활동 및 단계적 확대* 시행
 - * ('15) 전체 시설의 10%이상 → ('20) 전체 시설
- 독거노인 돌봄 강화
 - 독거노인돌봄 서비스(안전확인,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 확대
 - 지역별로 일부 상이한 기본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16~)
 - 응급안전서비스의 장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 화재·가스감지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모니터링 센터 운영('16~)
 - 독거노인 등 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신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노인 돌봄문화 활성화**('16)
 - * 돌봄 1시간당 1포인트 적립하여, 추후 본인(65세 이후) 또는 가족 등이 자원봉사형태의 노인돌봄서비스(가사 및 정서지원 등) 이용 가능
 - ** '16년에는 돌봄봉사자 8,500명 등록 및 활동계획
 -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발굴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대('16~)
 - * ('15) 90개 → ('18) 120개(전국 확대)
 - 민간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지원(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공공기관 등 지속 확대
 - * ('15) 92개소 → ('20) 132개소

»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3시간, 무료) 이수율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검토
- 운전취약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인지기능검사도구 표준화('17)하고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면허갱신 강화 추진 검토

- **중장기적으로 인지·적성 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한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납 권고 도입 검토**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해외 사례

- (일본) 연령별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차등*, 75세 이상 노인운전자 면허갱신시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제도 도입** ('98)
 - * 70세 미만 5년, 70세 4년, 71세 이상은 3년
 - ** 반납시 대중교통지원 혜택 부여
- (미국) 70세 이상 운전자 시력검사 의무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필기와 주행시험 실시, 75세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년
- (뉴질랜드)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75세와 80세에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후부터 2년마다 운전면허 재시험 의무

»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 노인보호 개선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 하고 법규위반 단속·홍보 강화로 안전 보행환경 조성('16)
 - * ('14) 697개소 → ('20) 2,000개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보호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6)

노인보호구역

- (근거법)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2007년부터 시행)
- (내용)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운영
- (현황) 우선지정대상 7,672개소 중 697개소 지정('14, 경찰청)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추진 방향

1 여성 고용 활성화

-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및 유연근무 확산
- 고학력자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 근로현장의 양성평등제고

2 중·고령자 근로기반 강화

- 60세 정년 안착 등 동일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

3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 이공계 등 국내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미래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비한 총체적 외국인관리체계 구축

(1) 여성 고용 활성화

현 황

»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률이 급락하는 M-Curve 현상이 지속되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강화 필요

* 경력단절여성 214만명, 5년 미만 경력단절여성은 88만명 (통계청, 2014)

» 근로자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등 병행)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문화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추진

*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 없는 일자리

* 시간제 일자리 비율 : (덴마크) 20.2%, (독일) 22.6%, (이태리) 20.0%, (네델란드) 39.7%, (영국)23.4%, (한국)11.6% (출처: 외국은 OECD,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창출 일자리 확산뿐만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기반 마련 중요

* 네덜란드와 독일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실현

▶ 유연근무제도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나,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

* '13년도 조사 대상 기업 중 시차 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체는 약 10% 미만

〈유연근무제도 실시 현황 (일·가정양립실태조사결과, '13)〉

시간제 근로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이동 근무제	재량 근로시간제	주4일 근무제
12.5%	7.6%	8.8%	1.5%	1.4%	2.4%	1.9%	2.7%

▶ 스마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적합한 직무 개발도 미흡하여 국내 스마트워크 활성화 수준은 매우 저조

*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한 업무는 전체 사업체의 약 1.4%가 수행 중으로 미국(전체 사업체의 약 21%)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큰 상황(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간 미활용된 우수여성인력의 활용 강화 필요

* 산업현장에서 여성인력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아지면 고급인재부족현상을 완화 (美 의회 여성진보위원회, 2008)

▶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의 관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문제 상존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비중(%): 임금근로자 2014년 상반기〉

(단위: %)

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전체 사업장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비중	55.8	46.1	43.0	43.6	32.5	27.6	43.2
관리자 중 여성 비중	11.6	11.2	9.1	11.8	4.0	2.9	8.9
여성 중 관리자 비중	0.03	0.31	0.61	0.66	0.24	0.17	0.36
남성 중 관리자 비중	0.24	2.07	4.59	3.84	2.70	2.14	2.78

자료 통계청, 2014.

추진계획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인건비·컨설팅 및 적합업종·직무 발굴 등 지원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기업 지원 확대
 - * ('15) 5,700명 → ('16) 14,605명
- 중견·대기업 중점사업장 지정, 사업주 부담 없는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전일제→시간선택제) 활성화('16)
 - * (현행) 정률지원(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50%), 사업주 50% 부담 → (개선) 정액지원(주15~25시간 월20만원, 주25~30시간 월12만원), 사업주 부담 없음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급여 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16)
- 시간선택제 기업설명회 개최, 시간선택제 전용워크넷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등 기업의 인식개선 추진('16~)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 민간에서 수용 가능한 유연근로 모형 개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30만원/월) 신설('16) 등을 통해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성화
 - * 민간기업 유연근로(시차출퇴근제) 도입기업수 : ('14) 300개 기업 → ('20) 2,000개 기업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전반적 근로방식·문화 변화 선도('16~)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형태〉

유형	세부형태	개념
시간제 근무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각(07:00~10:00 선택) -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07:00~10:00 선택)
	근무시간선택형	▶ 1일 4~12시간 근무 ▶ 주5일 근무
	집약근무형	▶ 1일 4~12시간 근무 ▶ 주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스마트워크 확산에 관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및 도입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7)
-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16)
-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모바일·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15~'17)하고 관계부처 스마트워크 협의회를 통해 정부내 확산 추진
- 주민센터·도서관 등 지자체 유휴시설의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유도('17)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16~)

-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전공·경력 유관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
-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 확대 운영

● 고용복지+센터 내 새일센터 참여,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R&D창업지원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취·창업 서비스 확충('16)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을 개정하여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업 내실화·체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16)

* 경력단절예방 지원시책 추진근거 신설,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기관 설치 등

»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 과학기술인력 진로지원센터, 여학생 공학주간, K-Girls' Day등 연계, 초·중·고 여학생의 공학계 유인을 위한 특화 진로지원체계 구축('16~)

K-Girls' Day 현황

- 개요 : 연1회 하루 여학생들의 산업현장의 기술체험을 통해 산업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공계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 K-Girls' Day 도입, 2015년의 경우 120개 산업기술현장에 여학생 2천명이 참가
- 해외사례 : 독일의 Girls' Day(걸스데이)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9천 2백여개 기업과 11만여명의 여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
-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16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여학생을 위한 산업기술현장 체험행사를 실시

- ‘(가칭) Tech Woman Fellowship’ *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 분야 중 육성되지 않는 고급 여성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16)

* 우수한 여자대학원생들이 배출되지 않는 공학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및 R&D 참여 확대

- 산업인력 수요가 높은 공학계열의 고급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여대학원생 공학연구 팀제 지원’ 확대(’16~)

* (’15) 150개팀 지원 → (’20) 162개팀 지원

- 여성인력의 배출·활용 균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지 여성인력 활용도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추진(’16)

* 미래성장동력 및 산업엔진 분야 등 R&D프로그램 여성연구원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여성연구원 일정비율 이상 참여기관에 가점 부여) 도입 등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연구현장복귀 지원을 통한 잠재적 여성 과학기술인력 참여 확대
* (’15) 114명 → (’20) 172명

▶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조정하여 문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제도 운영을 통해 효과적 기업 문화 개선 유도 추진

* 현행 500인 이상 전체 → 일·가정양립 저조, 고용상 성차별 등 우려 사업장에 관리 역량을 집중

- 여성고용 실적과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제도 시행 등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16)

(2)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현 황

- ▶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세 정년을 법제화

* ’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7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 확대

- 60세 이상 정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낮고 상당수 기업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참고) 대한상의 실태조사 결과('15.3월, 300개사) ▲ 60세 정년: 대비 미흡 53.3%, 충분 24.3%
▲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예정 32.7%, 필요하나 계획미정 22.0%

정년 연장 법제화

- (근거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3)
- (내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간주
- (시행시기) '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이상 사업장 적용, '17년부터 국가·지자체 및 300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4월), 주요 개정사항

- ① 60세 이상으로 정년 의무화
- ②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③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지원
- ④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년 60세가 정착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급시기와 정년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여 소득공백기 상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조성 필요

- 이미 국민연금의 수급시기가 61세로 60세 정년과는 1년의 괴리가 있으며, 2018년에는 2년으로 그 간격이 확대

» 정년(60세 이상) 이후에도 10명 중 6명(62.0%)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나, 고령자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미흡

- * 노인 고용률은 30.9%로 외국('12년 OECD 평균 12.3%)에 비해 높으나, 대부분 농림·어업, 단순노무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종사

» 다수 장년층이 퇴직 후 대비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나 기업의 전직 지원 노력 미흡

- * 장년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퇴직전 교육·취업알선 등 전직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1.8%('14.8월)
- * 기업 인사담당자 1,000명 대상 조사 결과(2014) : 전직지원 서비스 미제공 기업 94.4%, 향후 2년내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향이 없는 기업 83.5%

- 중장년 취업지원은 소규모의 개별 사업 위주로 기획되고 사업별로 관리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는 증가한 반면, 이들의 직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

* '10~'15년 중 53만여명 은퇴, '16~'20년 사이에 98만명 은퇴 예상(KDI, 2011)

〈장년층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계획〉

(단위 : %)

재취업	사회공헌	능력 활용한 프리랜서	귀농·귀촌	창업	그냥 쉬	기타
26.3	19.4	18.3	13.4	4.9	15.4	2.3

자료 : 고용부, 장년층 근로 및 구직 실태조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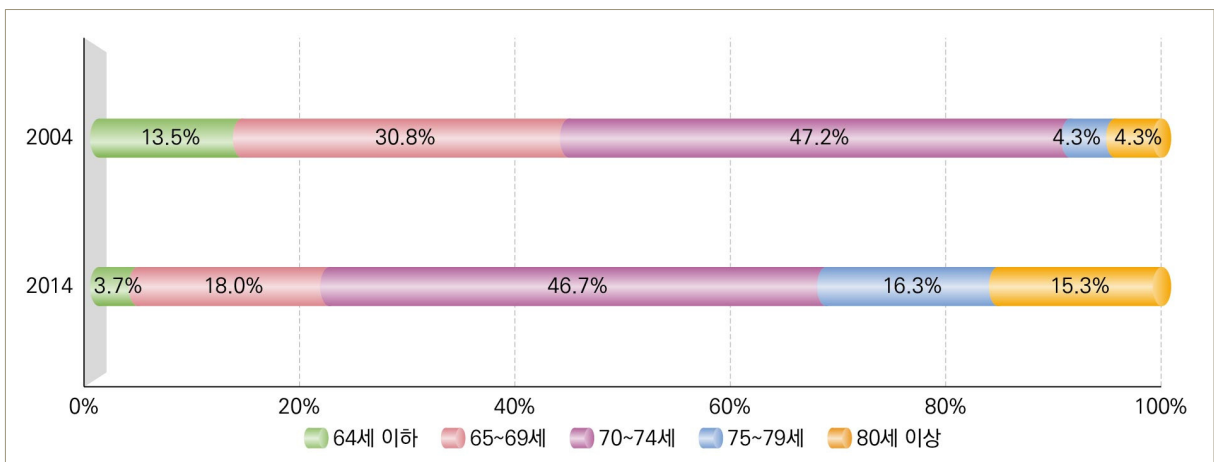
▶ 퇴직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창업은 쉬우나 실패 위험이 높은 생계형(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분야* 비중이 높은 상황

* 생계형 창업 비중 : 우리나라 36.5% vs 노르웨이 4% (글로벌 리포트, 2013)

▶ 고령자의 건강, 지식, 직업경험 등이 이전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도 변화하는 추세

- 노인실태조사시 조사 대상자의 78.3%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7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1.6%

〈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변화〉



주 :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65세이상 10,451명 대상 조사)

»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용, 복지 전반에 걸친 사회시스템과의 적합성을 확보할 필요

- 다만, 고령기준 변경시 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별 지원대상자 연령 〉

구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
만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다수) · 농지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돌봄, 단기가사서비스 · 독거노인 서비스 · 양로시설·요양시설입소 · 경로우대제 · 경로당 이용
만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61세) · 노인일자리(취·창업) · 주택연금(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검진 ·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주택 입소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용

추진계획

»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 정년의무화 정착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
 - 임금손실 일부 보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8년까지 연장 지원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사업장의 인사·임금·직무제도 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사업, 60세+서포터즈 사업) 확대
 - * 업종별 임금피크 모델 : ('15) 6개 → ('20) 8개

임금 피크제

- (내용)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감소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
- (유형)
 - 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
 - 정년연장형 :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
 - 고용연장형 :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
- (지원) 60세 이상 정년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지원 (감액 이후 소득 연 7,250만원 미만)

▶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단계적 일치방안 등 검토
 - 2018년까지는 정년 60세 제도의 정착 및 청년고용률 제고에 역량 집중
 - 2018년 이후 청년고용률, 인력 수급, 임금체계 개편, 연금 수급 상황 등을 고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 : ('15) 300명 → ('20) 2,000명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자기계발(교육훈련, 이모작 준비 등),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추진('16)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의 중대 지장 등)를 인정
-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도입('16)

장년기 근로시간 지원금

- (내용)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을 유도
- (지원)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감액 임금의 50%를 최장 2년간 연 1,080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 노인친화형 일자리 발굴, 시니어 인턴 파견지원 강화, 고령자 친화기업 관리·지원 내실화를 통해 민간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근로조건 관련 전직·구직 희망노인의 수요〉

희망 근로시간	10시간 미만	10~20시간	20~30시간	30~40시간	40시간 이상	계
	17.2%	18.1%	27.3%	10.3%	27.1%	100.0%
희망 근로소득	20만원 이하	20~50만원	50~100만원	100~200만원	200만원 초과	계
	16.9%	32.4%	36.0%	13.0%	1.6%	100.0%

자료 : 전국의 전직·구직 희망노인 1,128명 조사결과(노인실태조사, 2014)

-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자 대상 전직서비스 지속 확대('16~)
 -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통해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16)
 - 4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5.8월 29개소)와 이모작 지원제도의 연계 추진('16)

인생 이모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 (내용)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원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
- (지원)
 - 근로자 : 맞춤 재취업 컨설팅 제공 및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제공, 다양한 재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내 전직지원 플라자 운영 등 제공
- (지원체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재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 재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장년 취업인턴제 확대 등을 통해 취업지원체계 강화

* 장년 취업인턴 정규직 전환률 : ('14) 60% → ('20) 70%

»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기술창업센터 설치·운영 확대, 실습·사업화코칭·멘토링 중심 프로그램 개편 등을 통해 성공창업 지원

* 스쿨 및 센터 : ('15) 30개소 → ('16) 37개소

- 퇴직자 사회적 기업 창업 전문과정 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자에 적합한 창업기회 제공 강화

* 퇴직자 사회적 경제 활동 참여 인원 : ('15) 520명 → ('20) 1,000명

* 고령자 협동조합 수 : ('14) 72개 → ('17) 200개 → ('20) 300개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 (지원내용)시니어의 창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창업스쿨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교육내용)시니어의 경력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적합분야 창업역량강화 교육(100시간 내외)지원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 (지원내용)시니어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창업센터 주관(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시니어 창업을 위한 준비공간, 센터별 창업지원(사업화, 기술창업 관련 교육, 상담, 자문, 회원간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등

2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장년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별 지원기관에 '장년지원팀' 설치
- 창업비용, 멘토링, 네트워크 등 지원(평균 3천만원, 청·장년 공동형 4천만원 한도)

»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고령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직종별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17)으로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클린사업*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예방시설 등 고령근로자에 적합한 시설·품목 지원('16)
 -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 사업(보조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되는 항목에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이 포함되어 있음)

- 고령근로자 친화적 선도기업 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17) 으로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

* (독일) 선도기업 시상(Unternehmen mit Weitblick): 중·고령 근로자 지원 및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협력을 통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고령친화 작업장 개선 관련 해외사례

- 독일의 BMW의 딥골핑 공장(BMW's Dingolfing plant)
 -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조립라인과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총 70여개의 개선 사항을 찾아 개선
 - * (예) 충격을 줄여 무릎에 무리를 적게 주기 위해 시멘트 바닥이 아닌 나무 바닥, 시력이 나쁜 근로자를 위한 확대경,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자 등
 - 해당 프로젝트에 약 55,000달러가 소요되었지만, 근로성과의 측면에서는 결근이 감소되고 노동생산성이 약 7% 증가

▶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및 장년활용형 新사회적기업 모델 (대기업-협력사등 설립, 퇴직인력 고용) 활성화
-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 산학연 수요에 맞춘 R&D 정보분석·제공 및 사회적배려계층 청소년의 과학교육 지원 강화*(16)
 - * 첨단기술 정보분석 분석, 과학관 큐레이터 활동 등 지원

▶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 고령기준 재정립 관련 기초 분석, 사회적 논의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 실시('16)
 - * 노인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노인개념, 연령조정의 필요성, 해외사례 등 분석, 고용, 소득보장, 보건의료,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분야별 파급효과, 선결요건 등 제도개선 기본방향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추진('17~)

일본의 고령자 연령 기준 사례

-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요보호자 및 요지원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 2008년부터 도입된 장수의료제도 적용대상을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로 설정
- 2012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고령자 고용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정비
- 도로교통법에 의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차등 및 고령운전자 표지부착제도를 70세를 기준으로 실시

(3)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현 황

▶ 체류 외국인이 180만명을 넘고 있으나, 유입된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로 전문인력의 비중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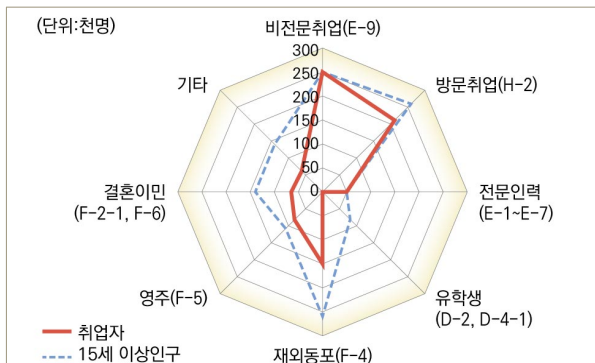
* '14년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은 방문취업(26만 1천명), 비전문취업(24만 7천명), 결혼이민(13만명), 유학생(8만 1천명), 전문인력(4만 8천명) 순

▶ 우수 유학생(석·박사)의 졸업 후 취업지원 등 정주 유도를 위해 개별 부처별로 각종 정책을 통한 지원 추진했으나, 실적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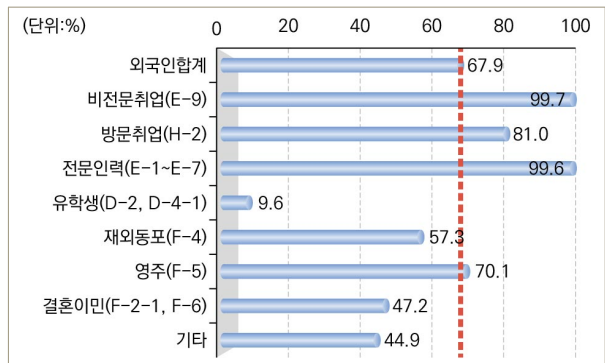
● 잠재력 있는 우수 유학생의 유치, 관리, 정주유도 방안을 강화하여 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

* OECD 일부 국가는 노동력 확보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여 유학생의 일시 또는 영구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 정책(비자 등) 완화 등 추진

〈 체류자격별 15세 이상 외국인 및 취업자 〉



〈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률 〉



자료 통계청,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 ▶▶ 현재 법령은 체류자격 구분기준, 정주허용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류연장 수단으로 영주·귀화 신청을 남용하는 문제 발생
- ▶▶ 비전문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평균 국내거주 기간도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정주화 되고 있는 상황
 - * 일시 귀국 후 재입국 허용으로 9년10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
 - 우리사회 통합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고령화 시 독립생계가 어려운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선별정주 허용 필요
 - * 영주권자·귀화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
- ▶▶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단기순환, 노동시장보완, 정주화 방지의 원칙 등을 확립할 필요
- ▶▶ 이민자의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이민자를 우리사회 건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통합교육 필요
 - 이민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생활정보 부족, 문화 차이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법·제도 및 준법교육, 생활정보 등 제공 시급
 - 이민자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필요
- ▶▶ 우리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1.17점에 불과하며, 다문화 관련 교육과 행사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 참여 경험이 없는 국민들이 대다수
 - *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이 없는 국민 76.1%,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경험 없는 국민 82.4%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 결과, 2012)
- ▶▶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 부각
- ▶▶ 이민자 현황이 각 부처의 정책대상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민자 지원정책 일선 지자체의 혼선 초래

- 이민자 관련 통계를 법무부(출입국체류현황), 행자부(외국인주민현황), 여가부(다문화가족실태), 통계청(다문화인구동태) 등에서 별도 발표
- 이민자 관련 통계는 인구수 중심으로 지역 거주 이민자의 상세정보 및 정책수요 파악 곤란

추진계획

▶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 석·박사급 우수유학생 유치 규모 ('14) 2.1만명 → ('20) 3.2만명

- GKS(Global Korea Scholarship)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유치
 -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 교류사업의 전략적 선발'*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매년 상반기)
 - * 이공계 장학생 선발 우대 등을 통한 이공계 연구인력 부족 총원
 -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를 통해 단기 연수를 지원하여 이들의 향후 국내 대학원 진학 유도(매년 하반기)
- 산학연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확대
 -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분야 등을 선정하여 유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해당 직종에 장기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 * 취업지원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지역·직종별 외국인 유학생 수요조사 및 공동협의체 구축·운영(관계부처 공동, '15.하~)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통해 유학생 졸업과 기업 채용을 연계 (매년 상·하반기)
-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및 통합 기숙사 건립
 - 유학생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17)
 -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 * 교류센터 : ('14) 경북 1개소(240명) 운영 → ('16) 전북 1개소 추가(200명)

▶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 온라인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서비스 확대, 점수제 확대 등을 통한 전문직 종사자 등의 정주 유도('16~)

우수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사례

- (미국) 1990년부터 과학자, 예술가 등 가장 선호되는 인력부터 이민을 허용하는 preference system을 도입·운영
- (캐나다) 1976년부터 학력, 언어, 직업경력,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 등을 점수화하여 점수 순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점수제 도입
- (독일) '04년 "이민법"을 제정, 재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고 IT전문가들의 영주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 비전문인력에 대한 정주자격 변경요건 강화('16)

- 학력·연령·한국어능력·임금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직종 취업자격(E-7)자격 변경 허용
- 일정소득·자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관리 강화

»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력 고용시 사전적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의 실효성 강화('16)

- 일률적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14일)을 내국인 채용가능성,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로 차등화(7~30일)
- 일정규모 이상 업체(100인 이상 제조업체)에는 집중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내국인 채용시 인센티브 강화

*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부여,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상향조정 등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 (근거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14일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미 채용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도록 함

- **외국인력 도입 분야 결정 마련 및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17)**
 - 현행 인력부족률 외에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 결정 방안 마련
 - 현행 한국어시험 외에 사업주 수요가 많은 근무경력, 자격·훈련 여부, 기능수준평가 등 선발기준을 다양화하여 포인트 시스템 도입

▶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전에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의무대상의 점진적 확대('16년부터)
 - * 신규입국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 : ('14) 34,290명 → ('20) 55,224명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사회활동참여, 각종 한국어교육 연계 등) 및 지자체 등의 취업·기술교육을 비롯한 유관 프로그램 정보제공·연계 강화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수 : ('14) 22,361명 → ('20) 41,598명

▶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계인의 날*' 활성화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국가기념일
 - * (해외사례) 호주 Harmony Day(3.21.), 싱가포르 Racial Harmony Day(7.21.) 등
-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확대
 - * 이민정책 이해과정 운영기관 확대: 중공교·지방연
 - *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15) 1,250명, 매년 300명 내외 추가 양성
 - * 전문강사 : ('15) 161명 → ('20) 400명 / 교육인원 : ('15) 5만명 → ('20) 10만명
-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실태조사('18) 실시, 지역 우수 다문화프로그램 및 민관협력 모델 발굴·확산 추진('16~)

▶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 이민자 유입에 따른 복지·통합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이민자 적정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설정
 - * 제3차('18~'2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제로 포함

-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현행 36개 체류자격을 영주·정주·비정주 자격으로 분류**하여 체류자격 간 계층화 및 연계성 강화

〈참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이민정책비교〉

국가	주요 이민정책	
미국	▶ 1971-1990년 중남미 이민증가	저소득층 증가로 사회비용 부담증가 및 전문인력 우대정책 실시('90)
	▶ 2001년 9·11 테러	사회통합 관심계기 및 국토안보부 설치('03)
	▶ 2013년 이민개혁법안 추진	우수인재 유치, 불법체류 단속시스템 전환 등
일본	▶ 1992년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 2006년 다문화공생 플랜 발표	지역의 외국인지원체계 및 사회통합방안 제시
	▶ 2013년 적극적 이민도입 검토	고도인재 포인트제 요건 완화 등 우수인재 유치 강화
프랑스	▶ 1997년 소극적 사회통합정책 도입	이민자 소요발생('05)
	▶ 2006년 외국인입국동화법 제정	사회통합교육 의무화-전문인력 유치 강화
	▶ 2011년 이민법 개정	사회통합 강화 및 불법체류자 강력 대응
독일	▶ 1955-1981년 저숙련 인력 정주화	저소득층 확대로 사회비용 증가
	▶ 1982년 이민정책 전환	저숙련 인력유입 중단 및 사회통합 강화
	▶ 2005년 통합이민법 제정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및 블루카드 제도 도입('12) 등 전문인력 유치 강화
호주	▶ 1973년 백호주의 폐지	유색인종 이민금지
	▶ 2005년 인종간 폭력사태 발생	사회통합정책 강화
	▶ 2000년대 이민개혁 및 보트피플 급증	수요위주의 기술이민제도로 전환 및 이민국경보호부로 개편('15)

»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 국내거주 이민자(외국인 및 귀화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 장기적으로 이민자 경제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재 방안 마련
- 지자체 거주 이민자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 이민자 관련 통계 생성 및 행정정보 보유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이민자 현황 관리 강화
 - * 이민자 통계 공동이용 실무협의회 구성 ('17),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개선방안 마련 ('19) 및 시행 ('20)
 - 지자체 거주 이민자 전체를 포괄하는 행자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내용 확대를 통한 지자체 이민자 지원정책 수립 지원 강화
 - * 지자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1일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한국국적취득자, 자녀를 포괄
 - 지자체별로 정책대상 및 수요 파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주민 수 이외에 거주 형태, 가족 관계, 정착 주기 등을 통계화하여 제공 추진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추진 방향

1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 유망산업 육성 및 국가지원체계 강화
- 유니버설 디자인 등 수요자 중심의 실버경제 생태계 조성
- 고령친화R&D 종합지원체계 구축

2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 국방, 교육, 지역사회(농촌) 등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책 마련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험 관리 강화
- 국가재정 개혁 노력 강화

(1)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현 황

» 모바일 기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ICT 발전은 **의료와 융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가능성 증대**

*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13년 440.6백만 달러에서 '18년 4,548백만달러로, 환자는 '13년 35만명에서 '18년에는 700만명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고령층의 관광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선호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여건 조성 미흡**

* 60대 이상 국내여행 경험률 : ('09) 66.1% → ('11) 76.9% → ('13) 81.4%로 급증

*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휠체어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소는 54.6%, 휠체어 정문 진입이 가능한 관광지는 52.1%에 불과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질병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령자 친화 식품소재와 가공기술의 개발 필요**

*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 고령친화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며, 일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예산 및 마케팅 여력 부족**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의 평균자본금 8억원, 종사자수 10인 미만인 업체가 49.5% (KHIDI, '12)

*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 경우 코트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유관기관 등에서 해외 진출 지원에서 소외

▶ 실버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독일·일본 등은 제조업, IT, 교통, 주거, 복지, 보건 의료,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를 지원, 실버경제 경쟁력을 확보

● 우리나라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 편의증진 차원에서 건축물·시설·대중교통 중심으로 적용, 산업적 활용은 미흡

▶ 지난 10년 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조정기능 미흡** 등으로 개별적 유사정책 추진, 정책의 비효율성과 영세성 초래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상황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출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R&D 지원은 연간 10억원대에 불과**

● 독일의 경우 '12~'15년까지 첨단기술전략 2020 중 건강/식량분야에 연간 3~4억 유로의 R&D를 지원

● EU의 경우에도 '08~'13년까지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ICT 기술 융합제품 연구개발에 약 6억 유로의 자금 투자

추진계획

»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

- 원격의료서비스 제도화('16~)
 -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추진
 -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원격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유망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발굴·지원('16)
 - 국내 의료서비스-IT 기술과 연계하여 수출 대상 국가별 유망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수출지원전략 수립
-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16~)
 - 질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관리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국내외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선점 추진
 - 개인건강정보 전송 및 보호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시험·평가, 인증 획득, 시장 정보 제공 등의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개인 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ICT 힐링 서비스 플랫폼 개발('17년 까지)
 -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의 개발
-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17년 까지)
 - 당뇨·고혈압 환자와 일반인의 건강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고 벤처·중소기업에 SW 개발환경 제공 가능한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벤처·중소기업에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SW/HW를 제작·개발(Dev-Lab), 시험·검증(Test-Lab) 가능한 환경 조성
 - 벤처·중소기업 대상, 국제표준 기반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 SW 개발 및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 디바이스/센서 등 공급기업과 첨복단지, 종합병원 등 수요기관 연계형 헬스케어 실증 서비스 제공

●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실증('17년 까지)**

- 의료용 연동 인터페이스, 스마트 After-Care 관리시스템, 라이프 로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 서비스 실증 시나리오 개발 및 임상 시험을 통한 효과성, 안전성 검증, After-Care 서비스 모델 발굴
- CT, MRI, PET 등 의료영상에서 중요·위험 부위를 추출·종합하여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3차원 영상 및 동영상 제작 기술 개발
- * 중증질환자 퇴원 후 스마트폰 영상정보 보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영상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 **고령친화 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

- 경제력과 건강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층 대상 **복지 관광 프로그램**(문화누리카드 등) 확대('16~)
 - * 복지부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 교육 및 문화향유 욕구가 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광, 여가 프로그램 등이 복합된 **한국형 엘더호스텔* 프로그램** 개발·확산('17~)
 - * 유스호스텔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고령층에게 대학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습-관광 혼합 프로그램

● **고령친화 관광 환경 조성**

- 주요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DB구축**('16)
- 민간 관광시설의 자율적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 관광지 육성**('16~)
 - * 문체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시범 사업(5개소) 지속 확대
- 관광시설 접근가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7)

고령친화 관광산업 활성화 해외 사례

- (일본) 활동적 체험을 원하는 고령층에게 대학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습과 관광이 혼합된 프로그램인 엘더호스텔(Elderhostel) 운영 중
- (프랑스)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적합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Tourism & Handicap 인증제 운영
 - 3단계 등급제와 등급외로 구분하고, 관광지 등의 입구나 책자에 인증로고 표시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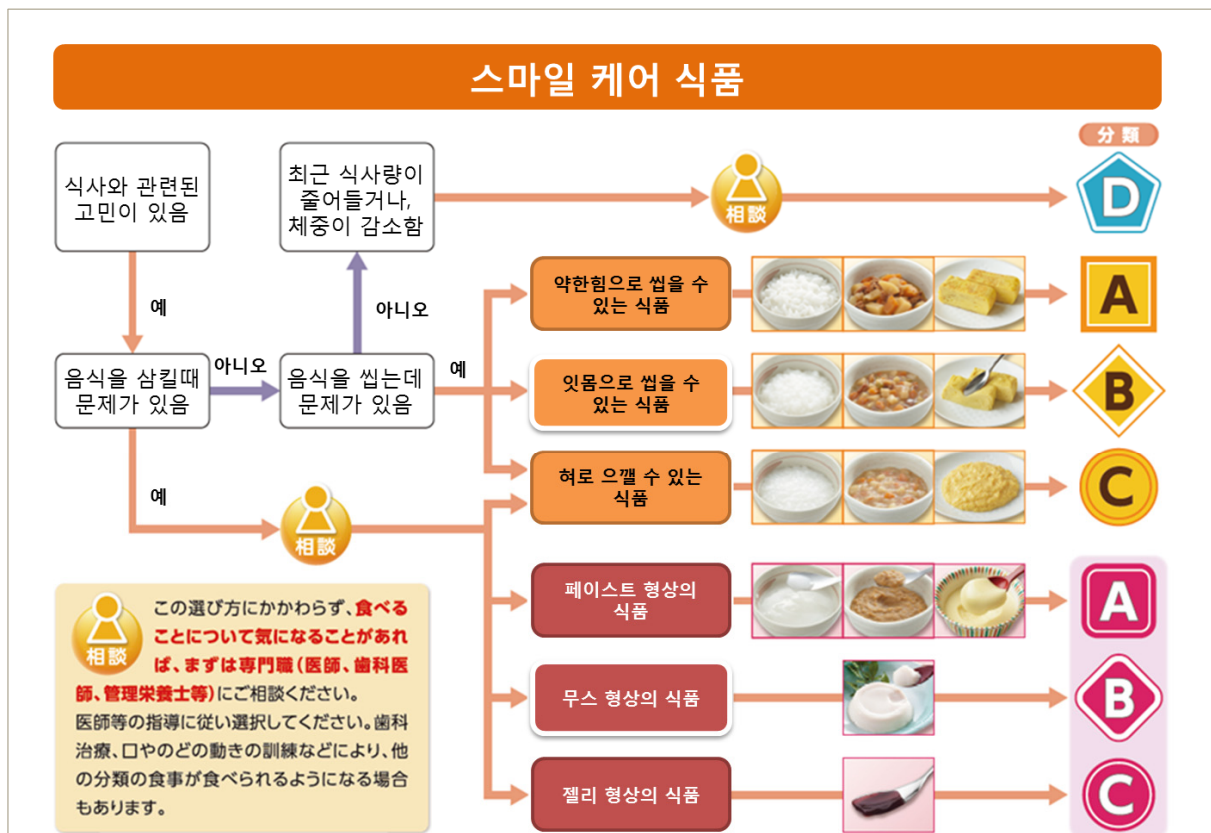
고령친화 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제품 개발('16~)

- 고령친화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및 물성제어를 통한 가공식품 산업화 추진
- 고령친화 식품의 영양, 임상요구도의 적용 및 유통시스템 기술 개발
- 만성질환자, 씹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한 고령친화형 식품 개발
- 기술 수요조사(연 2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진행 및 개발된 제품에 대해 컨설팅*·박람회** 연계 등 실시

*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해당 제품의 판로확보 등을 위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검토

** 식품 관련 박람회 참가를 통해 상품설명회 등 추진

〈일본 개호식품의 단계 구분〉



* 개호용 식품업체에 의해 일본 개호 식품협회가 설립(2002)되었으며, 메이커별로 제각각이던 연하정도를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로 구분하여 1-4 단계로 통일(2003). 일본 농림 수산성은 기존 개호식품 4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6단계(Smile Care Food)로 구분(2014)

»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 기술·인력·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K-실버챔피언 프로젝트’를 도입,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17)
- 수출지원협의체* 구성 및 글로벌 시장정보**제공(’16~)
 - *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산업부-코트라-중기청 등 참여
 - ** 주요국 수출정보지 발간 및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http://www.esenior.or.kr>) 내실화
- 고령친화산업 유명 박람회에 한국관 설치 및 참가 지원(’17)

〈 해외 유명 박람회 예시 〉

국가	박람회명	주요 내용
영국	Naidex	건강, 복지, 실버, 의료기기, 약품, 위생용품 등 전시
독일	66 DIE Seniorenmesse	노인대상 관광, 스포츠, 의류, 건강, 주거분야
미국	Life@50+	미국은퇴자 협회 Expo로 은퇴자를 위한 각종 제품 전시 상담
프랑스	Salon des Seniors	프랑스 최대 고령친화산업 전시회, 여행, 건강, 재정, IT 관련 상품
일본	Senior Life Expo	장기요양관련 상품, 고령자용 생활상품·취미상품,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해외진출 장벽 해소를 위한 인허가 지원 지속 추진
 - *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해외규격인증 신청비, 기술문서 심사비, 시험 검사비,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지원
- 해외 바이어와 유통 상담회 개최 지원(’17)

»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 * 장애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 민·관이 참여하는 디자인 융합포럼 구성·운영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16)

디자인 융합포럼 주요 기능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 관련 통계·사례 등 현황, 정책과제 등을 연구
-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국가적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정책과제화

- 디자인 융합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R&D·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 건축·시설물, 대중교통수단부터 일상생활용품, IT, 제조업 등 전 산업 대상
-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현행 디자인 지원 인프라***를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기관으로 활용
 -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육성 해외 사례

- (일본) 20세기 초반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속 확산·보급
 - 토요타 자동차는 유니버설디자인 쇼케이스를 설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급
 -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와의 교류, 관련 연구의 공유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 (노르웨이) 정부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델타센터(정부기관)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
 - 2025년까지 제품과 환경의 계획·디자인에 대한 전략적인 어프로치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
- (영국) 평등,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로의 공헌을 위한 장소를 보장하는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Inclusive 디자인'을 도입
 - 영국은 노인의 생활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이동, 일, 여가 등의 전반적인 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

● 사용자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R&D 지원 강화('16)

- 사용자 니즈 추출, Biz-기획, 상품개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기술·IT 등이 융합된 **사용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
- 직관적 사용성, 편의성이 반영된 **감성가치 측정기술***, 3D 프린팅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등 기반기술 개발
 - * 중소·중견기업이 사용자 경험품질을 측정·평가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체계 조사, 진단 시스템 개발

● 국민, 산업계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확산('16)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발굴·개발하고, 전시회 등 인식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 사용자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변화상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선행디자인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지식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최근 동향, 선진사례와 연구결과 등의 맞춤형 콘텐츠를 중소·중견기업에 제공
- 디자인전람회 등의 공모전, 전시회 운영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정보공유 채널 마련

▶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 민관합동 고령친화산업육성T/F를 구성·운영('16)하여, 고령친화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전문적·체계적 지원
 -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규제개혁 및 관계 법령 정비, 정부내외 협력 증진, 정책성과 모니터링 및 활성화 지원 등 역할 수행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17)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개정('17)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 (Single-government) 확립,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분류체계 정립 등 추진
 - * 고령친화산업 관계 부처별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부처를 명시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구축

▶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16~)
 - * 고령친화경제 인식수준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홍보 추진
 - * 고령친화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20년까지 90% 수준까지 제고
-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가능성 제시 및 기업 투자 촉진('16~)
 - 고령친화산업 국제 박람회 개최('18)로 고령친화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
 -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고령친화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 복지용구 이외의 스마트 건강관리, 건강식품, 여행/관광, 정보교류, 주거서비스 등에 대한 신 비즈니스 모델 제시
- 고령친화산업 유망 사업 아이템 선정 및 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가칭) ‘실버포인트 카드’* 도입('17)

* 실버포인트 제휴카드를 통해 고령자용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시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받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 카드

고령친화산업의 범위(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 고령친화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 내실화 및 확대('16~)
- 정보제공·권리구제를 위한 고령소비자 상담센터 개설('17)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 고령친화용품 표준화 역량 향상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고령자·장애인 접근성 기술, 노인요양시설·서비스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화 건수 : ('14) 27건 → ('20) 37건 / 국내표준화 건수 : ('14) 19건 → ('20) 25건

● 고령친화제품 인증 ‘실버마크’ 제도 도입·확대('17)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지정제도 고시 제정

-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분석, 품목별* 기준·규격 마련 등을 통해 제도 도입 기반 구축

* 고령자 적합 식품, 고령자 적합형 일상용품(가전 등), 건강유지(신체·정신적 기능 저하 예방 및 유지 지원기기), 고령자용 주거설비(건축자재 등), 여가·문화기기(게임기기) 등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 등 평가매뉴얼 개발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 * 고령친화제품의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평가시스템
 - 편의성, 안전성, 조작성 등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지표 개발('17)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관련 인체데이터,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지표, 평가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8)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18)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별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인증 실시('20)
 - * 인증제도 수행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대상 제품(서비스) 우선 순위 결정, 평가기준 설정,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지원방안 마련, 시범운영 등

해외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사례

- 미국 :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의무화 추진
 - 미국 FDA의 Human Factor Guidance를 적용(IEC 62366:2015), 사용자 적합성(사용성) 테스트 시나리오 및 평가방식 강화
 - 미국 재활법 508조(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조항 신설, 21C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으로 휴대폰, IPTV의 접근성 의무화('14년)
- 일본 : 복지용구 임상평가(QAP)
 - 고령자의 상태나 사용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적인 측면에서, 복지용구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된 복지용구 정보 제공

● 산업맞춤형 고령자 인체데이터(신체, 근력, 인지 등) 수집·제공('18)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산업 맞춤형 고령자 인체데이터의 종류, 측정방법 등 매뉴얼화
- * (예) 신발산업 : 발과 관련한 신체사이즈, 무게중심 이동 등

»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범부처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6)

- 노년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중장기 방향 설정
-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대응 R&D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사이언스 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 고령친화 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중점 투자 방향 설정
- 고령친화 R&D 정부중점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 고령친화 R&D 부처간 협업 및 조정 강화

- 국가심(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을 통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역할 분담, 다부처공동기획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대응,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다부처공동사업 관련 안건 심의

〈고령친화 부문 국가R&D 조정 거버넌스 예시〉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노화극복을 위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 '17년까지 총괄과제 6건 수행, '17년 이후 건강노화 기술사업 예타 통과시 지속 확대

- 노화 원인 기전 규명 및 유도인자 발굴
- 노화 예측·진단 및 지연·제어 기술 개발
- 노화질환 치료기술 개발
- 노인노쇠코호트 및 중재연구 개발

●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16~)

* 치매예측뇌지도 구축 등에 '16~'18년간 총 195억원 규모 투자

- 뇌영상(MRI+PET) 및 생물학적 표지자(혈액/뇌척수액+유전체) 기반 치매 조기진단 플랫폼 개발

- 근본적 치료제가 전무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지원
 - * 치매치료제 개발 신규지원('16) 추진

● **산업화 가능중점기술 도출 및 연구개발 추진('16~)**

- *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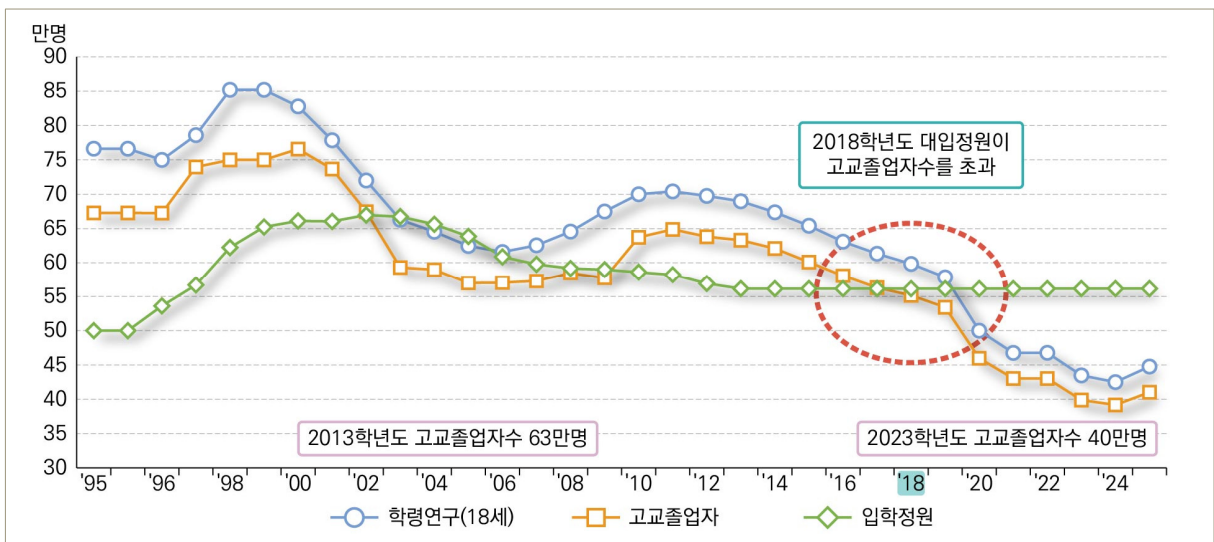
▶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첨단 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구조로 개선 시급**

- '23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국가치안 및 산업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는 전환·대체복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23~'33년 : 연 평균 2.3만명 현역자원 부족 발생('29년 3만명 부족)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전문대 등 미충원 확산 등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 '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 발생, '20년 이후 초과 정원 급증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이〉



- 대학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 미래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등 질적 개혁도 중요

- 학령인구의 변화와 교육 여건의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수급 전망 및 수급 조절 방안 필요

» 고령화, 郡의 인구유출 등에 따라 농촌지역(군 지역)의 인구규모 급감

- 농촌인구 감소·고령화에 적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노인인구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원 조정제도 개선 필요
 - *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 : ('10) 21% → ('15) 27.5%

» 베이비부머 은퇴 등에 따라 늘어나는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

- * 귀농·귀촌가구: ('05) 1,240호 → ('12) 27,008 → ('13) 32,424 → ('14) 44,586
- 농촌의 고령화, 마을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 주민 및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필요
 - *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88%가 면·도서벽지에 분포,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전체의 31.1%
- 농가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정체로 인한 농촌경제 활력 저하 문제에 대응,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모델 확대 필요
 - * 중소농(269천가구, '13년) : 농가소득 27,992천원, 가계지출 27,412천원

추진계획

» 장교·부서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 상비병력 감축, 간부비율 40% 유지 등 병력구조 정예화

»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제도 개선

- 병역자원 부족 대비 전환·대체복무 지원인원 단계적 감축

» 대학구조개혁 추진

-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정원 감축 지속 추진
 - * 대학입학정원 감축 : ('14) 56만명 → ('20) 47만명
 - 정책연구, 전문가 검토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대학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평가

방안 마련

-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 추진(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 *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별 맞춤형 발전방향**(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도출 및 구조개혁 노력 촉진('16~)
 - * 평생교육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관련방안 연계 모색
- **한계대학 기능 전환·퇴출 등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6)
 - *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대학구조개혁 관련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학령인구 감소를 겪게 되면서, 소규모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급격한 학생 미충원, 재정악화 현상 발생
 - ※ 일본 사립대학 **미충원 비율** : 114교, 28.3%('02년) → 222교, 40.4%('06년)
 - ※ 일본 사립대학 재정
 - 적자 대학 : 52교, 13.8%('92년) → 166교, 30.3%('05년)
 - 파산 우려 대학 : 21교, 5.6%('92년) → 62교, 11.3%('05년)
 - 이로 인해 캠퍼스 도심 이전, 등록금 삭감, 수영장·기숙사 등 시설 설치, 잦은 학사과정 개편 등 생존을 위한 학생유치 경쟁 발생
- 일본정부에서는 대학평가 시 지방대학 노력이 반영 가능한 정성평가 확대, 국립대 법인 전환, 사립대 퇴출구조 마련, 학생 미충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 추진
 - ※ 충원율 50~60% 미만 대학의 **보조금 삭감율** : 15%('07년) → 50%('11년)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로 교원 수요-공급의 불균형 상황 개선
 - *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통한 정원 감축 실시('17~'19년)
- 교원수급 전망에 따른 교원정원 배정 및 학교별 배치 정교화('16)
 - * 매년 5~10년 단위로 교원수급 전망치 조사, 시도교육청별 교원 공급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 인구고령화에 따른 행정 수요를 고려, 읍·면·동 주민센터의 행정여건 (조직, 인력, 업무) 개선을 위해 '책임 읍면동제' 도입('16)

책임읍면동 유형

- (대읍·동) 대읍·동은 기존 읍·동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일부 기능**까지 수행, 인근 읍면동은 종래기능을 유지



- A동 : A동 기능 + A동·B동·C읍에 대해 시군 본청의 일부기능 수행
- B동·C읍 : 종래의 기능 유지

* 주민등록, 인감증명, 선거 및 투표, 사회복지 신청, 민방위대 운영 등 204개 사무

** 복지, 안전예방, 인허가, 도시공원 관리, 주정차 지도 등 100여개 사무 추가

- (행정면) 행정면은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 기능을 수행, 인근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 제공



- A행정면 : A면 기능 + B면·C면 대부분 기능
- B면·C면 : 최소의 민원처리, 복지·문화서비스

- 사회복지수요 반영한 보통교부세* 교부('16~)로 고령화에 따른 지방의 재정 여건 개선 지원
*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에 기준재정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액에 대해 교부

농촌지역 활성화

-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인구 증대 및 활력 제고('16~)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희망자 대상 종합정보, 상담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귀농·귀촌을 유도
 - * 귀농·귀촌교육 매년 3천명 실시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추진('16)을 통해 우수한 젊은 인력의 농산업 분야 창업 및 농촌 정주를 촉진
 - *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창업안정자금 지원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귀농·귀촌 지원 활성화
- 주거지원, 생활여건개선, 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 ‘활기찬 농촌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 확산·보급(’16)
 - * ’16~’18년간 6개 시범지역 선정, 지속 확대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 등 6차 산업 활성화, 농촌관광 등급제 확대, 도시민 수요에 맞춤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 승마장, 휴양림·치유의 숲, 산악관광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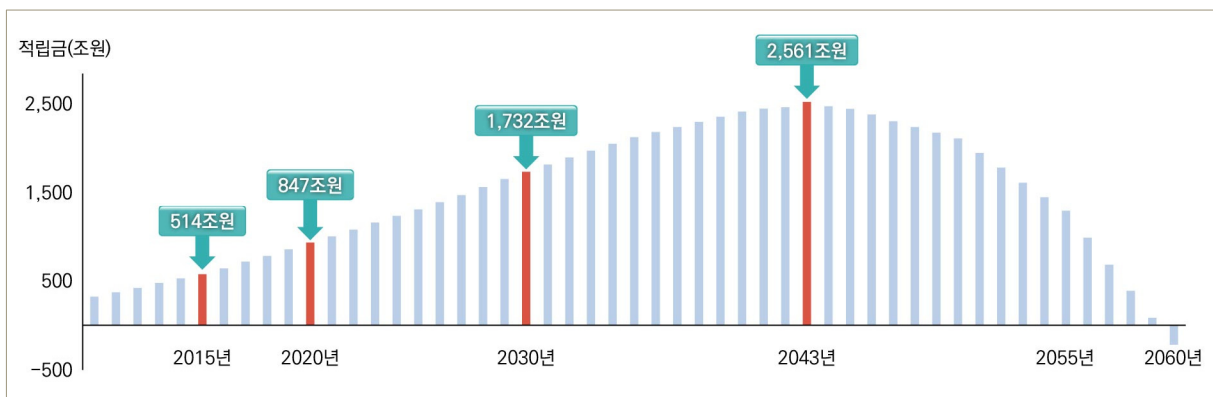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현 황

▶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적립금은 ’15년 500조원을 돌파하여 ’20년 847조원, ’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44년부터 기금 적자가 발생하여, ’60년에 소진 전망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추이〉



▶ 소득수준의 향상, 보장성 확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급격히 증가

- * 보험급여비 ’00년 9조원 → ’14년 42.5조원으로 15년간 4.7배 증가
-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인 의료비 지출 현황 (건강보험급여 기준) 〉

구 분	2007년	2010년	2014년
적용인구(천명)	47,820	48,907	50,316
노인인구(천명)	4,387	4,979	6,005
비율 (%)	9.2	10.2	11.9
총진료비(억원)	323,892	436,283	544,272
노인진료비(억원)	91,190	141,350	198,604
비율 (%)	28.2	32.4	35.5
세대당 평균월진료비(원)	139,734	175,603	201,174
1인당 평균월진료비(원)	56,608	74,564	90,431
노인1인당 월진료비(원)	173,217	236,588	279,653

▶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악화되었으나, 위기극복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

* 국가채무('07→'15 전망, GDP대비%) : (OECD평균) 74.5 → 115.2, (韓) 28.7 → 38.5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장기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

▶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정 지출의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추진계획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 재정목표 수립을 통한 연금제도 개혁의 기반 확립

- 복지부 내 '(가칭) 장기재정목표 설정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6)하여 보험료·급여수준, 기금·급여지출 규모 및 국민수용성을 기반으로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 실시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 등 제도 개혁방안 마련(중장기)

〈 외국의 장기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국민연금연구원, 2014) 〉

국가	재정방식	재정목표
영국	부과방식 (부분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수준 현행 유지 전제 • 보험료율, 적립배율, GDP 대비 비율로 재정평가 • '70년기준 보험료율 27%(현재 21%, '10) • 적립배율 1~2배, GDP대비 8%전망
독일	부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수준 하한 43% • 보험료율 2030년 상한 22% • 법정 최저 적립배율 0.2개월 하회하지 않도록
미국	부과방식 (부분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년 균형수지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2.1%p 상승 시키거나 급여 13.3% 삭감 또는 국고보조 \$5.3조 투입 필요 권고
일본	부과방식 (부분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기준 보험료율 18.3% 유지 • 급여수준 하한 50%/ -적립배율 1
캐나다	부분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와 장기 일정적립배율 유지(5~6배) • 추계 후 3년 이후 10년과 60년 후 적립배율 일정 • 보험료율 9.9% 유지 • 급여수준 25% 유지
스웨덴	명목확정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비(자산/연금부채) 장기('80년) 1 이상 유지 • IP(소득비례연금, NDC형) 보험료율 16% 유지 • IP(소득비례연금, NDC형) 급여수준 40~50% • 적립배율 1배 이상 유지

- 기금 500조('15)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인력 증원, 해외사무소 신설** 등 조직·기능 보강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노인 의료전달체계 내실화
 - **요양병원 지불제도 개편('16~)** 등을 통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
 -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17)**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건강보험 수입기반 안정화
 -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16년말)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을 점검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16)
 - 보험료와 국고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수입 이외의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 검토('16~)

- 진료비 심사체계 효율화 및 부당청구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

* ('10~'14) 연간 700개소 → ('16~'20) 연간 900개소

» 특수직역 연금 개혁

- 연금부담률(기여율) 조정*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완료하여 특수직역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16)

- 공무원연금, '16.1.1 시행

* ('15) 7% → ('20) 9%까지 단계적 인상

» 재정지출 효율화

- 지속적인 유사중복 재정사업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줄여 재정지출을 효율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15)하여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15~)
 - 보조금의 단계별 정보관리·공개,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

국고보조금 개혁 주요 내용

-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부정수급 신고센터 일원화 등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평가 강화
-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지원 영구금지(One-strike Out) 및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대형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부처별 집행점검 실시, 보조금 미정산에 대한 페널티 도입 등 사후관리 개선

- 캠프 자금을 통한 민·관 복합 청사 및 수익형 개발사업 확대 등 국유지의 개발·활용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16~)

* 국유지 개발사업 투자규모 ('15~'17 전망) : 292억원 ~ 3,440억원

» 세입기반 확충

- 일정 규모(연간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신규도입·일몰도래시 예비 타당성조사·심층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조세 감면제도 지속 정비('16~)
-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

»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 '15.12월에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나타난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 자원대책이 없는 신규의무지출 도입을 금지하는 Pay-go 제도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규율 강화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추진 방향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 등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2 홍보·인식 개선 활성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 근거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현 황

-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구체적 정책추진 과제와 계획에 대하여는 공감대 형성 미흡
- » 각 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전 국민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추진계획

»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 (종교계)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결혼·출산 등 가족친화 교육 활성화
 - 잉태된 생명에 대한 존중,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 등을 위한 종교계 생명존중 문화운동협의회 구성·운영('16)
 - '생명존중헌장' * 제정('16)을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 * 생명존중의식 회복을 위한 기본원칙 제시, 핵심원칙(생명존중, 인간존중, 연대), 파생원칙(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배려, 연합, 정의 등)
 - 신도 및 일반인 대상,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저출산 극복 교육 확대
 - * 현재 3개 종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교육 지원사업을 종교계 전반으로 확대
- (기업) 일·가정양립 실천 및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
 - 정시퇴근, 가족 사랑의 날 등 1社-1일·가정양립 제도 실천 운동 전개
 - 중소기업·비정규직·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 대기업·공공기관의 양육지원 인프라 나눔 확산

양육지원 인프라 나눔 예시

-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대상 직장어린이집 공동 활용 및 설치 지원
- 전경련 차원의 지역 산단 육아지원 인프라* 사회공헌 유도
 - * 공동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유수유실, 임신부 휴게실 등
- 저소득 아동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에 기업 참여 유도
- 지역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예: 세무서, 건보·연금 등 공공기관)에 지역사회개방형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
 - 지역 영세상공인·비정규직·중소기업 취업모 영유아에 입소권 부여로 보육서비스 나눔 선도

- (시민사회) 양성평등 육아문화,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 저출산 극복 교육·홍보·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구성·운영
 - 지역단위별 시민사회단체-지자체간 저출산 인식개선 운동 연계체계 구축

-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학교·군대·기업 대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확산
- 시민단체와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단체·자원봉사 활동 중심의 건전한 만남 기회 활성화
- **(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저출산 인식개선 운동 구심적 역할 및 지역특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시행
 - 지역내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언론계 등과 저출산 극복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내 중소기업과 일·가정양립 실천 협약 체결 등 일·가정양립 분위기 확산
 - * '15년에는 17개 시도 170개 중소기업 실천협약 참여. 기초 지자체까지 실천 협약 체결 확산('16)
- **(중앙정부)** 민간,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활동을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강화
 - 인구의 날을 인구 주간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야별 평가·포상 확대



»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 정책 수혜자로부터 직접 평가 받는「국민참여 정책평가관리제」를 도입, 국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 ‘100인의 아바단’ 확대 개편, 주요 정책분야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으로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등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상시 제안·검토 체계 구축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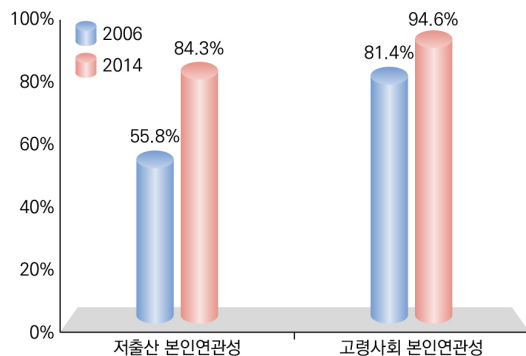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인식전환 및 행동변화 유도 필요

* 결혼기피·연기사유 중 가치관 요인 : 여성 61.5%, 남성 50.5% (전국 결혼·출산실태조사, '12)

● 지난 10년간의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확산되었으나 결혼·출산 친화적인 행태변화로 연결되는 데 한계

* 저출산 현상 본인에게 영향 미칠 것 ('06)55.8%→('14)84.3% / 고령화 현상 본인에게 영향 미칠 것 ('06)81.4%→('14)94.6%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



1. 저출산 현상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06)55.8% → ('14)84.3%
2. 고령화 현상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06)81.4% → ('14)94.6%

주요 인식개선 내용

1차 계획(2006~2010)	2차 계획(2011~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2008) • 가가호호 아이돌셋, 하하호호 희망한국(2009) •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더하세요(2011~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근은 정시에, 퇴근 후엔 집으로, 주말은 가족과 함께 • 아이좋아 돌이좋아(2014)

▶ 과시문화·고비용 혼례문화는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결혼기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부모의 노후생활 곤란 등 초래

* 1쌍당 평균 결혼비용(주택마련 비용 제외) 1억원 넘어 : 남성 평균 5,414만원, 여성 평균 4,784만원 (한국소비자원, 2013)

추진계획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민·관 합동 홍보협의체 구성,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기반 마련(’16)
 - 정책 대상별(초·중·고생, 대학생, 미혼남녀, 기혼자 등) 분석을 통한 홍보매체·방식 등 타겟별 전략 수립
- 인식·문화개선 3대 핵심 메시지 집중 홍보(’16)
 - 남성의 육아참여 (‘육아하는 아빠가 멋있다’) 확대,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일·가정양립’),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가족형태는 달라도 아이사랑’) 등 집중홍보



- 정부-언론 합동 저출산 극복 공익캠페인, TV·라디오 공익광고 연중 기획·추진 등 홍보 강화('16~)
 - 방송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송·신문사 신년기획 및 연중 캠페인 전개
 - * 출산장려 공익광고, 외국 사례 등 특집 다큐, 인기 예능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캠페인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관련 주요 계기별 집중 홍보 추진
 - * 근로자의 날(5.1), 가정의 달(5월), 어린이 날(5.5), 부부의 날(5.21), 세계 노인학대의 날(6.15), 인구의 날(7.11), 치매극복의날(9.21), 노인의 날(10.2), 임산부의 날(10.10), 난임가족의 날(12.5) 등

»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 기회 확대
 - 초·중·고 사회·지리, 통합사회, 도덕, 가정(실과) 교육과정에 건전한 가족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대폭 확대
 - *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단계적 시행('18~'20)
 - 초·중·고 인구교육 연구시범학교 확대('15. 8개교→'20. 18개교), 각종 연수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 반영 노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사 수업경진대회 개최 및 연수 확대
 - 대학의 인구교육강좌 개설 지원 확대('15. 5개교→'20. 15개교)
- 일반인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정훈장교·예비전역장병 및 민방위 대상 교육, 각급 군 교육과정에 인구교육 운영 검토
 - 정부·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 직장교육 실시, 각종 교육·연수 반영 확대('16)
 -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16)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결혼식' 확산)

- 작은결혼식 우수사례 배포, 젊은층에 대한 영화 상영관 홍보 등 작은결혼식 인식 확산
 - '1:1 컨설팅단(유명플래너)'을 운영하여 맞춤형 작은결혼식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16)
-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대 및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작은결혼 정보센터 활용도 제고('16)
- 결혼준비스터비스업(웨딩플래너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반영하여 고비용 혼례기준 명확화('17)
- 결혼예식업자의 불공정 행위 관행 철폐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16)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현 황

- ▶ 저출산·고령화는 전 사회적 파급효과를 갖는 거시적, 구조적, 장기적 문제로 다학제적 종합 연구 등 정책근거 창출기반 마련 중요
- ▶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파급효과가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여 매우 방대하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만으로는 한계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신규 제도 도입, 법령 등의 제·개정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 ▶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에서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지역단위의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기획, 지역사회내 논의,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나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는 중앙정부 정책에 한정

추진계획

- ▶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 수행, 국내외 정보수집 및 추적·관리 등을 통해 인구정책 근거 창출 인프라 강화
 - 인구연구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 국가인구정책통계 생산·관리체계 마련 및 연보 발간('16) 등을 통해 정책근거기반을 확충하고 인구정책수립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인구정책대학원 설립('18)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 확대

북한대학원(북한·통일분야 대학원) 사례

- 1997년 경남대 북한대학원 설립 인가
- 1998년 북한대학원 개원(석사과정 30명)
- 1998년 고위정책과정 개설
- 2000년 전문대학원 설립 인가(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10명)

»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분야 정책 신설·변경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제도 도입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내 영향평가 전담인프라 설치 등을 통해 영향평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례

〈해외 사례〉

- 미국의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
 - 가족 관련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6영역 34문항)
-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

〈국내 사례〉

- 부패영향평가 : 사전에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규제영향분석 :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성별영향평가 :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 균등한 발전기회 보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제관리, 조사·분석, 협의·조정 등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추진('16)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 (운영지원단의 설치)

▶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 광역지자체 단위에 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확산('16), 광역단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주도적 역할 강화
 - * 현재는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중장기 계획은 없으며 중앙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사례

- 설치일/근거 : '15.3.5.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 설치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주요사항 심의
- 위원구성 :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직 위원 : 도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전북발전연구원,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전문가 4인
- 주요기능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조정 및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 관련 검토 /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등

- 노인, 아동, 가족, 모자보건 등 파편화되어 있는 개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총괄·조정 가능하도록 지자체 정책추진체계 정비 유도('16~)
 - * 지자체내 조직의 범위내에서 분산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기능을 통합

충청남도 조직 개편 사례

- (명칭) 노인장애인과 → 저출산고령화정책과('15.6.22)
 - * 주요업무 : 출산장려, 노인복지, 노인시설, 보육지원, 복지정책
- (개편사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정책을 출산정책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

- 시도별 우수사례 평가에 그치는 지자체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합계출산율 등 성과지표에 의한 광역·기초지자체 정량·정성평가 체계로 개편('17)
 - * 합동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매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산대책 2개와 고령사회 대책 2개씩을 제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정성평가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평가방안

- 평가 대상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각급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한 정책에 한정해서, 정책의 종류, 내용, 근거, 주민욕구 반영 정도 등
 - * 중앙부처 위임사업, 매칭사업 등은 제외
- 평가 내용 : 정책 수립부터 결과까지 포괄
 - 정책수립 : 광역자치단체 시행계획
 - 자료 : 매년 초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시행계획 중 정책내용
 - 정책집행 : 예산
 - 근거 : 예산 투입이 많을수록 저출산고령사회에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시행계획에 포함된 예산), 지자체 전체 예산(지자체 추가 제출)
 - 정책기반 : 인프라
 - 근거 : 일회성의 전시적, 단기적인 정책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 체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지자체 추가 제출)
 - 정책효과 : 합계출산율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출산율 제고임을 전제
 - 자료 : 지자체별 합계출산율(통계청에서 매년 3월 중에 발표하는 잠정치)

-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정책 수립·모니터링 지원체계를 구축('17~) 하여 지역단위 인구정책 기획과 성과관리를 지원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다리
브릿지 플랜 2020



The 3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ART 03

부 록

- I. 재정 계획
- II. 과제별 소관부처
- III.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명단

I. 재정 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 예산 투자 규모는 5년간 11.9조원 증가

- '15년 32.6조원 → '20년 44.5조원, 연평균 6.5% 증가
- '16년 예산은 34.5조원으로 주요 예산 내역은 보육 10.8조원, 기초연금 10.3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2.0조원, 주거 1.8조원 등임
 - '15년 대비 '16년 예산 증액분은 주거 0.8조원, 반값등록금 0.1조원, 청년고용 0.2조원, 기초연금 0.3조원 등임

기본계획 과제 변동에 따른 예산규모

- 3차 기본계획 과제 기준 '15년도 예산 32.6조원 = 2차 기본계획 '15년 예산 29.6조원 - 3차 기본계획 제외 과제* 예산 1.6조원 + 신규 포함 과제 예산 4.6조원
- * 2차 기본계획 과제이나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관련성이 낮은 과제(예: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1,154억원,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1,741억원 등)

〈 3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

(단위: 억원)

	'15	'16~'20년 소요예산액					계
		'16	'17	'18	'19	'20	
계	325,716	345,345	373,662	384,804	425,722	445,479	1,975,012
저출산 대책	192,932	204,633	217,224	218,438	220,011	223,837	1,084,143
고령사회 대책	132,784	140,712	156,438	166,365	205,710	221,642	890,867

2 | 자원 조달 방안

- »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
 - 기존 지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자원 마련
 -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 추진

-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성 및 자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추진

II. 과제별 소관부처

1 저출산 대책

과제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1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고용부	1-1-가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고용부	1-1-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도 확대	고용부	1-1-다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고용부/국토부/중기청/ 기재부/교육부	1-1-라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고용부/중기청	1-1-마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교육부/고용부/중기청	1-1-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고용부	1-1-사
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	1-2-가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교육부	1-2-나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2-다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국토부	1-2-라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복지부	2-1-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복지부	2-1-나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2-1-다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복지부	2-1-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복지부	2-1-마
여성건강 증진 강화	복지부	2-1-바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기재부	2-1-사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2-2-가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법무부	2-2-나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포용적 가족관 형성	법무부/여가부/복지부	2-2-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여가부/교육부	2-2-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여가부	2-2-마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복지부	2-2-바

3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아동이 행복한 사회	복지부/여가부/문체부	2-3-가
아동이 안전한 사회	복지부/안전처	2-3-나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1 맞춤형 보육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복지부	3-1-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복지부/고용부/교육부	3-1-나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국방부	3-1-다

2 돌봄지원체계 강화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3-2-가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복지부/여가부	3-2-나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가부	3-2-다

3 교육개혁 추진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교육부/고용부	3-3-가
공교육의 역량강화	교육부	3-3-나
사교육 부담 경감	교육부	3-3-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부	3-3-라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고용부	4-1-가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고용부	4-1-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여가부/고용부	4-1-다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고용부/인사처	4-1-라

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고용부	4-2-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부	4-2-나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고용부	4-2-다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3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고용부	4-3-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4-3-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4-3-다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고용부	4-3-라

2 고령사회 대책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공적연금 강화		
1인 1국민연금 확립	복지부	1-1-가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인사처/교육부	1-1-나
기초연금 내실화	복지부	1-1-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복지부	1-1-라
2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금융위	1-2-가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농식품부	1-2-나
3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고용부/금융위	1-3-가
4 노후 준비 여건 확충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위	1-4-가
노후준비지원 확대	복지부	1-4-나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고령자 운동 활성화	복지부	2-1-가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복지부/식약처	2-1-나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2-1-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복지부	2-1-라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복지부	2-1-마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복지부	2-1-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2-1-사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2-1-아

2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문체부	2-2-가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문체부	2-2-나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복지부	2-2-다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2-2-라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복지부	2-2-마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복지부	2-2-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2-2-사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교육부	2-2-아

3 세대 간 이해 증진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복지부	2-3-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교육부	2-3-나

4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2-4-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국토부	2-4-나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부	2-4-다

5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복지부	2-5-가
노인안심생활 지원	복지부	2-5-나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2-5-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경찰청	2-5-라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1 여성 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부	3-1-가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고용부	3-1-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3-1-다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미래부/산업부	3-1-라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고용부	3-1-마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2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고용부	3-2-가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고용부	3-2-나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3-2-다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복지부/고용부	3-2-라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고용부/기재부	3-2-마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고용부	3-2-바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고용부/미래부/중기청	3-2-사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	3-2-아
3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부	3-3-가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법무부	3-3-나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법무부	3-3-다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고용부	3-3-라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법무부	3-3-마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여가부/법무부	3-3-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법무부	3-3-사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법무부/행자부	3-3-아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	미래부/복지부/산업부	4-1-가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4-1-나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부	4-1-다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4-1-라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	4-1-마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	4-1-바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복지부	4-1-사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복지부/산업부	4-1-아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복지부/산업부	4-1-자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미래부/복지부	4-1-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미래부/복지부	4-1-카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2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국방부	4-2-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제도 개선	국방부	4-2-나
대학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4-2-다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교육부	4-2-라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행자부	4-2-마
농촌지역 활성화	농식품부	4-2-바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4-3-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복지부	4-3-나
특수직역 연금 개혁	인사처/교육부	4-3-다
재정지출 효율화	기재부	4-3-라
세입기반 확충	기재부	4-3-마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기재부	4-3-바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복지부	1-가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복지부	1-나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복지부	2-가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복지부	2-나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결혼식' 확산)	여가부	2-다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복지부	3-가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복지부	3-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복지부	3-다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복지부	3-라

Ⅲ.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명단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민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대일 (간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 정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정진엽 (간사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 민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고선주	(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손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정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 영	교육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성 명	소속 및 직위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5개 분과위원회(참여전문가 포함)

» 총괄 분과

● 민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태현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정무성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동욱 (간사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최연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염민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결혼·출산지원분과

● 민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태현 (민간분과위원장)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이삼식 (간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교수
박춘선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성 명	소속 및 직위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혜원	메트로뱅크 서울지점장
송해덕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
이영옥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동욱 (정부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
김현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혜순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외부전문가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전문위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황준욱	소수연구원 대표

» 인구경쟁력분과

● 민간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금재호 (민간분과위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만 (간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실장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심정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정본부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선임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정부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김관복 (정부분과위원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박춘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최성락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 외부전문가

성명	소속 및 직위
강경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처장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삶의 질 보장 분과

● 민간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정무성 (민간분과위원장)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윤경 (간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교수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현종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양성문	보험개발원 이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순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황진수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 정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동욱 (정부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김현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혜순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최복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허경렬	경찰청 교통국장

● 외부전문가

성명	소속 및 직위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원장
성수정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손성동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유애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지속발전분과

● 민간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유병규 (민간분과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유재성 (간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관광기획평가 센터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안창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욱	KTis 전무이사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
장윤승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속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과 교수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부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정은보 (정부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춘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남궁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외부전문가

성 명	소속 및 직위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기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차해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